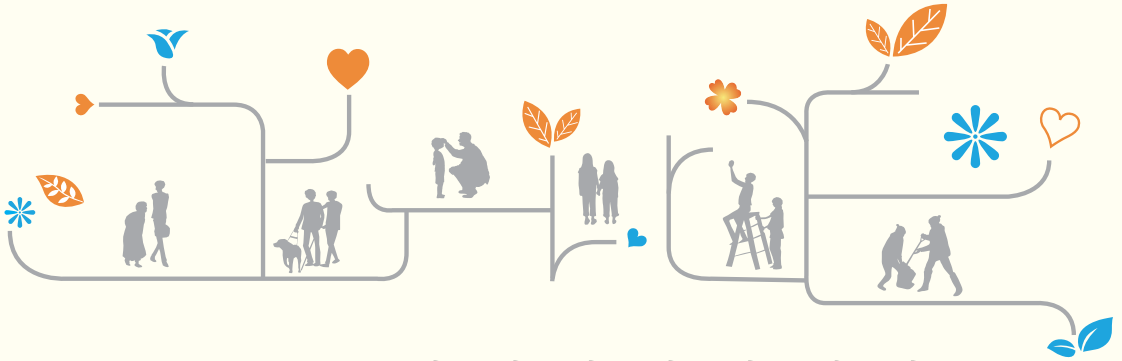


발 간 등 록 번 호

11-1620000-000016-10



ISSN 2092-9714



2014 인권상담사례집



발 간 등 록 번 호
11-1620000-000016-10

발 간 등 록 번 호
11-1620000-000016-10



ISSN 2092-9714



인권상담사례집은 국민과 인권위원회를 연결하는 ‘다리’ 입니다.

매년 국가인권위원회는 한 해의 상담사례를 분야별로 묶어 상담사례집을 발간합니다. 인권상담사례집은 “아들이 군 복무 중 폭행을 당했다”, “정신병원에서 화장실청소, 타 환자 도우미 등 강제노동을 시킨다”는 내용부터 콜 센터 텔레마케터의 부당한 감정노동에 대한 호소에 이르기까지 우리사회 다양한 분야의 상담내용이 망라돼 있습니다. 또한 인권상담사례집은 상담사례 뿐 아니라 이와 관련한 위원회의 결정례와 보도자료를 분야별로 수록하여 누구나 인권위원회의 역할을 알기 쉽게 안내하기에 가장 좋은 길잡이이기도 합니다.

2004년부터 책자로 발간되기 시작한 인권상담사례집이 올해로 열 번째를 발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인권상담사례집은 2013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인권상담센터에 접수된 33,925건의 상담사례를 분석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위 기간동안 상담수치를 양적으로 살펴보면 작년 같은 기간 보다 1,349건(4.1%)이 증가한 수치이며, 상담내용이 진정접수로 이어진 사례도 3,836건(17.3%)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매년 상담과 진정이 늘어나는 것은 인권위원회가 국민에게 확실하게 인권기구로 자리매김 되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반대로 국가인권위원회가 풀어야 할 인권 현안들이 아직도 산적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인권현안에 대한 미흡한 대처가 있을 경우 국민들이 호된 질책도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며, 뼈아프게 반성할 부분도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점들을 유념하여 국민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는 인권전담 기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모쪼록 이 책이 국민들과 우리 위원회를 소개하는 안내서를 넘어 국민들과 위원회를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해주길 기대합니다.

2014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현 병 환**

목차

2014 인권사례집 발간에 부쳐	3
-------------------------	---

통계로 보는 인권상담

1. 개요	9
2. 접수경로별 상담현황	10
3. 유형별 상담현황	11
4. 회신경로별 상담처리 결과	12
5. 인권침해 상담	14
6. 차별행위 상담	20
7. 기타상담	24

인권침해 분야

01 수사기관 27

사례 1 수사과정에서 경찰관 세 명이 욕을 하면서 마구잡이로 때렸습니다	29
사례 2 경찰 10여명이 담을 넘고 집에 들어와 무조건 체포했습니다	31
사례 3 경찰이 세월호 희생자를 애도하는 노란리본을 달았다고 불심검문 했습니다	34
사례 4 긴급구제조치를 바랍니다	36
사례 5 지적장애 미성년 아들을 한밤중 영장도 없이 체포해갔습니다	39
사례 6 경찰이 카메라를 뺏으려고 바닥에 눕히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42
사례 7 경찰이 지인과 거래처에, 피의사실을 유포했습니다	45
사례 8 수사관이 범의전력을 유출하여 가정이 파탄나게 생겼습니다	47
사례 9 개인정보가 다 보이게 출두명령서를 아파트 현관에 붙여놨습니다	51
사례 10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하면서 경찰이 총을 쏘았습니다	54

02 군대 57

사례 11 군복무 중 정신질환 발병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59
사례 12 아들이 군복무 중 폭행을 당했습니다	62
사례 13 아들이 선임들의 인격모독과 질타로 자살했습니다	65
사례 14 운동을 하다 손가락이 다쳤는데, 치료미흡으로 절단했습니다	68
사례 15 여군입니다. 군에서 성희롱발언을 들었습니다	72
사례 16 부당하게 징계를 받았습니다	75
사례 17 개인부채현황 조사를 한다며 금융정보조회동의서 사인을 강요했습니다	77

03 국가기관·법원·지방자치단체 79

사례 18 보호관찰관이 반말에 욕설까지 했습니다	81
----------------------------------	----



사례 19	판결문에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정보가 그대로 노출돼 두렵습니다	83
사례 20	구청에서 정보공개를 거부했습니다	86
사례 21	재혼가족을 고려하지 않는 가족관계등록부를 고쳐주십시오	88
사례 22	외국인인데, 한국에서 출생한 자녀들에게 강제출국 명령이 났습니다	90
사례 23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한다고 무단으로 가택수색을 했습니다	92
사례 24	엄마가 한국인과 결혼했는데 몽골에 13세 딸이 혼자 있습니다	94
사례 25	구청에서 공무원의 초과근로확인을 위해 지문인식기를 설치했습니다	96
사례 26	학생들 출결을 확인하기 위해 지문인식기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98
사례 27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로 보육교사의 근무를 감시합니다	100

04 다수인보호시설 103

사례 28	정신병원에 강제로 수용됐습니다	105
사례 29	폭행으로 갈비뼈에 금이 갔는데 파스 하나만 붙여줬습니다	109
사례 30	정신병원 직원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111
사례 31	부당하게 강박당했습니다	114
사례 32	정신병원에서 전화를 제한합니다	116
사례 33	인권위원회 진정을 방해합니다	118
사례 34	정신병원에서 강제적으로 청소를 시킵니다	121

05 기타 123

사례 35	콜센터직원들을 고객들 폭언으로부터 지켜주십시오	125
사례 36	밀양송전탑 문제에 대해 인권위원회가 적극 나서기 바랍니다	129
사례 37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해주세요	131
사례 38	선거에 아이 사진을 허락 없이 사용해도 되나요?	133
사례 39	요양병원에 대한 강력한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135

차별행위 분야

01 성희롱 139

사례 40	진료과정에서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141
사례 41	직장에서 성희롱신고를 했는데 피해자인 저를 해고했습니다	144
사례 42	채용면접 중에 엉덩이가 예쁘다고 했습니다	147
사례 43	공공기관 비정규직인데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149
사례 44	여자축구선수에 대한 성별진단 요구는 부당합니다	152
사례 45	교수님이 꺼안고 제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비볐습니다	154

02 장애	157
사례 46 공공기관에서 산재로 장애가 발생했는데 퇴직을 종용합니다	159
사례 47 장애인이 임금을 갈취당하고 폭행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161
사례 48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부당했습니다	163
사례 49 장애인은 청사에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165
사례 50 사전투표에선 점자투표용지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167
사례 51 시내버스가시님이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동승을 거부했습니다	169
사례 52 초등학교에서 특수교육보조인력교사를 폐지합니다	172
03 나이	175
사례 53 대학학사편입생인데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차별을 예고하여 자퇴했습니다	177
사례 54 연령을 이유로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180
04 성차별	183
사례 55 국립경찰대학 입시에서 여학생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185
05 학력	189
사례 56 대형 유통업체에서 정직원으로 전환하려면 고졸 학력은 되어야 합니다	191
06 사회적신분	195
사례 57 무기계약직이라고 임금, 수당에서 차별받습니다	197
사례 58 대학교의 검정고시 출신자 전형제한은 부당합니다	200
사례 59 일반하사와 전문하사에 대한 임금 차별은 부당합니다	202
07 종교	205
사례 60 교회에서 운영하는 보육시설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207
08 전과	209
사례 61 형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부당하게 해고했습니다	211
09 임신출산	213
사례 62 임신을 이유로 퇴사를 강요했습니다	215
10 가족형태	219
사례 63 언니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하려는데 사별한 사람은 안된다고 했습니다	221

부 록

국가인권위원회법	225
-----------------	------------

통계로 보는 인권상담

1. 개요
2. 접수경로별 상담현황
3. 유형별 상담현황
4. 회신경로별 상담처리 결과
5. 인권침해 상담
6. 차별행위 상담
7. 기타상담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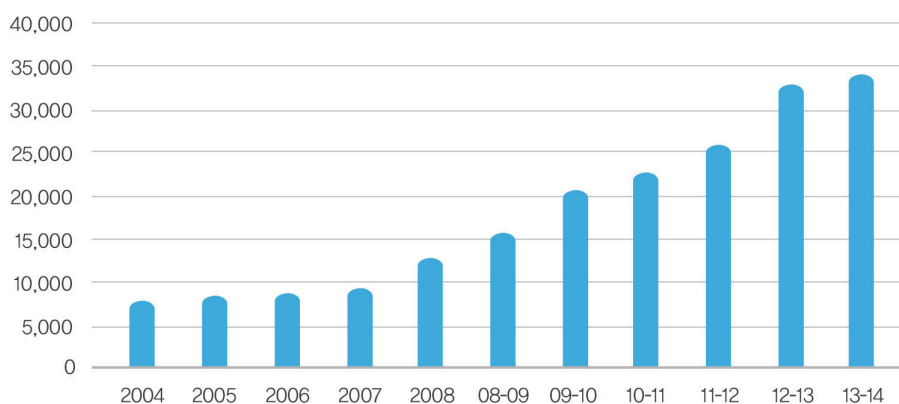
〈13-14 인권상담사례집〉은 2013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인권상담센터에 접수된 33,925건의 상담사례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집계기간이 2년여에 걸쳐 있는 특성을 감안, 사례집의 공식 명칭도 〈13-14 인권상담사례집〉으로 정했다.

분석대상을 양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12-13 인권상담사례집〉(2012.7.1.~2013.6.30.)의 32,576건보다 1,349건(4.1%) 증가했다. 질적 측면에서도 인권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한 상담이 꾸준히 늘고 있다. 실제로 상담내용이 진정접수로 이어진 사례도 3,836건으로 지난해 대비 17.3% 증가했다.

〈표〉 연도별 분석대상 현황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08-09	09-10	10-11	11-12	12-13	13-14
기간	'01.11.25~ '03.12.31	'04.1.1~ '05.6.30	'06.7.1~ '07.6.30	'06.7.1~ '07.6.30	'07.7.1~ '08.6.30	'08.7.1~ '09.6.30	'09.7.1~ '10.6.30	'10.7.1~ '11.6.30	'11.7.1~ '12.6.30	'12.7.1~ '13.6.30	'13.7.1~ '14.6.30
건수	7,605	8,262	8,586	9,073	12,292	15,631	20,562	22,596	25,429	32,576	33,925

출처: 각 연도별 상담사례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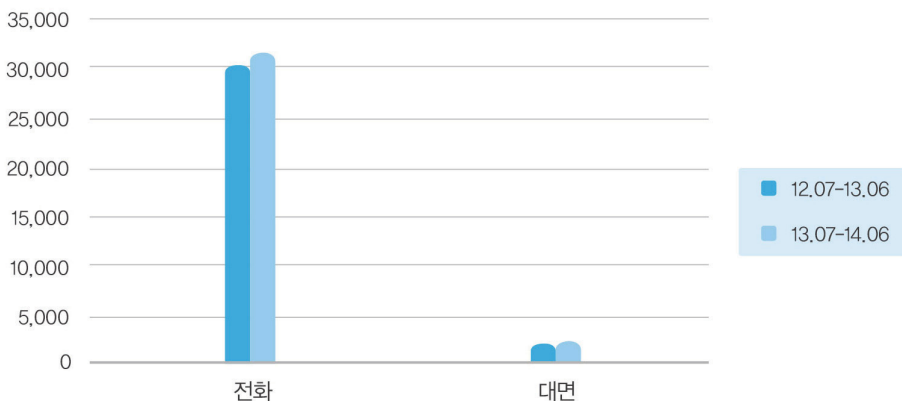
2. 접수경로별 상담현황

국가인권위원회는 출범 직후부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31(휴대폰은 지역번호 입력)을 누르면 인권상담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왔다. 그 결과 1331 전화상담은 인권과 관련한 대표적인 상담 창구로 자리매김하였다. 이에 따라 매년 전화상담이 급증하여 2007년 8,900건/ 2008년 11,561건/ 2009년 15,277건/ 2010년 20,329건/ 2011년 21,796건/ 2012년 25,535건/ 2013년 31,844건/ 2014년 26,458건(10.31. 현재)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대면상담은 2,31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건 감소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재 변호사, 노무사, 심리치료상담사, 성차별 예방 상담사 등 각계 전문가 60여명을 인권상담전문위원으로 위촉해 다양한 분야의 대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 인터넷과 이메일 등을 활용한 상담은 전무했다. 이는 위원회가 앞으로 시스템을 보완하고 홍보를 더욱 강화해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

〈표〉 접수경로별 상담현황

구분	FAX	대면	우편	이메일	인터넷 문자	인터넷 화상	인터넷 전화	전화	기타	합계
13.07.~14.06.	-	2,313	-	-	-	-	-	31,612	-	33,925
12.07.~13.06.	1	2,327	-	-	-	-	-	30,248	-	32,576
증감	△1	△14	-	-	-	-	-	1,364	-	1,349
01.11.~14.06.	122	23,319	645	320	167	7	-	173,628	1	198,2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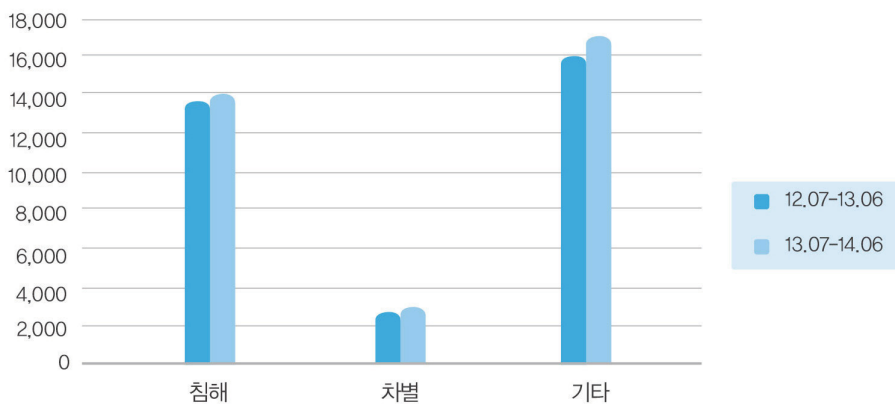
3. 유형별 상담현황

상담내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 상담 중 기타상담이 17,017건(50.2%)으로 절반을 넘었다. 이는 인권상담의 영역이 사인간 침해, 회사 내 문제 등으로 점차 확대되는 측면과 무관하지 않다.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조사대상과 직결되는 인권침해상담과 차별상담은 동기 대비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인권침해상담의 증가율은 1.6%, 차별상담의 증가율은 10.0%였다.

〈표〉 유형별 상담현황

(단위: 건, %)

구분	침해	차별	기타	합계
13.07.~14.06.	13,861	3,047	17,017	33,925
12.07.~13.06.	13,645	2,770	16,161	32,576
증감	216	277	856	1,349
01.11.~14.06.	80,247	19,425	98,537	198,2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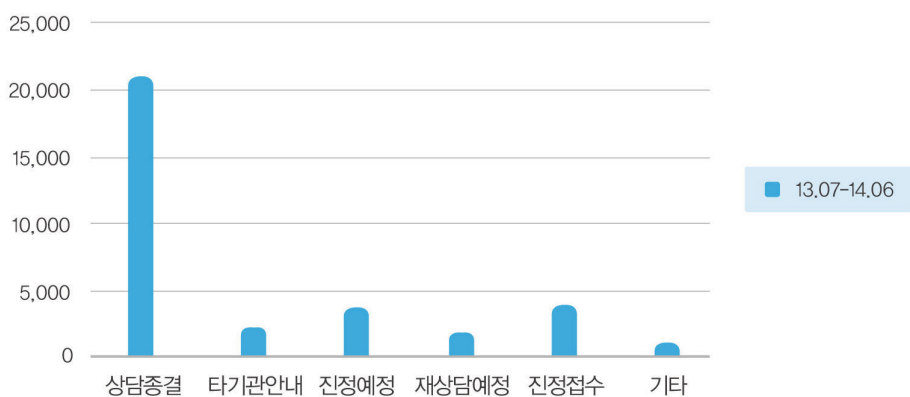
4. 회신경로별 상담처리 결과

인권상담은 사안이 복잡·다양하고 상담시간 또한 오래 걸리는 경우도 많다. 인권위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본인이 원하는 구제를 받지 못해서 마지막으로 고충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인권위는 1차적으로 상담과정에서 문제해결을 적극 모색하지만, 상담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동시에 검토한다. 이번 분석대상에 포함된 상담의 경우 상담단계에서 종결된 사례가 20,909건(61.6%)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진정접수(진정예정 포함) 7,676건(22.6%), 타기관안내 2,355건(6.9%), 재상담 예정 1,864건(5.5%) 순이었다. 세부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상담내용 처리 결과(13.07.~14.06.)

구분		전화	대면	합계
합계		31,612	2,313	33,925
상담종결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4,211	267	4,478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중/종결	278	159	437
	진술내용의 현실성/신빙성 결여	246	79	325
	내담자가 상담만을 원함	7,409	337	7,746
	조사가능기간 초과	88	25	113
	상담으로 문제해결	3,674	277	3,951
	이미 진정한 상담	1,038	34	1,072
	구체적 주장내용 없음	481	46	527
	기타	2,068	192	2,260
	소계	19,493	1,416	20,909
타 기관 안내	보다 적절한 기관안내	2,092	177	2,269
	내담자가 타 기관 문의	67	9	76
	기타	5	5	10
	소계	2,164	191	2,355
진정예정	다른 방법으로 진정예정	2,538	70	2,608
	고려 후 진정예정	627	28	655
	서류 구비하여 진정예정	115	38	153
	조사대상자는 아니지만 내담자 원함	17	5	22
	사건추이 보고 진정예정	323	20	343
	재상담 후 진정예정	21	4	25
	기타	29	5	34
	소계	3,670	170	3,8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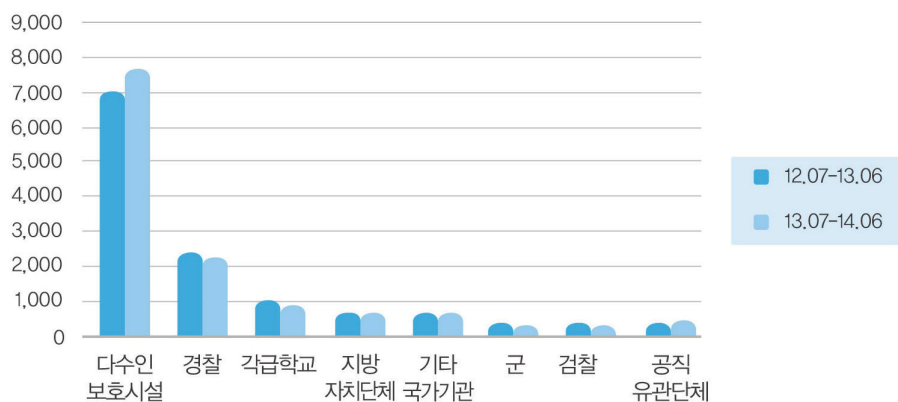
구분		전화	대면	합계
재상담 예정	전화상담 후 방문상담예정	206	—	206
	사실관계 파악 후 상담예정	298	18	316
	사건추이 보고 재상담 예정	651	33	684
	내담자가 상담 원함	437	14	451
	상담시간 부족 및 과다로 재상담 예정	75	2	77
	기타	121	9	130
	소계	1,788	76	1,864
진정접수	조사대상 아니지만 내담자 원함	19	50	69
	조사대상에 해당되는 사건	3,270	244	3,514
	조사대상은 불분명하나 위원회 판단 원함	140	73	213
	제도개선(사건을 위원회에 알리고 싶음)	9	5	14
	기타	14	12	26
	소계	3,452	384	3,836
기타	상담도중 전화 끊김	360	—	360
	조사담당자 안내	90	—	90
	상담도중 내담자가 자리를 뜸	25	3	28
	기타	570	73	643
	소계	1,045	76	1,121



5. 인권침해 상담

〈표〉 인권침해 상담의 기관별 현황

구분	2013.07. ~2014.06	2012.07. ~2013.06	증감	2001.11. ~2014.06.
합계	13,861	13,645	216	80,247
검찰	317	351	△34	3,670
경찰	2,232	2,322	△90	18,998
국정원	16	20	△4	202
특사경	—	—	—	108
지방자치단체	637	647	△10	5,783
사법기관	170	219	△49	1,398
입법기관	5	2	3	58
기타국가기관	604	617	△13	6,589
구급시설	308	268	40	2,406
다수인보호시설	7,631	7,050	581	32,140
상담전용-보호시설	—	—	—	164
기타	309	479	△170	2,002
군	339	374	△35	2,766
각급학교	852	918	△66	2,920
공직유관단체	399	318	81	854
출입국관리사무소등	42	60	△18	189



인권침해 상담을 기관별로 살펴보면 다수인보호시설이 7,631건(55.1%)로 가장 많았다. 다수인 보호 시설 관련 인권상담이 매년 늘고 있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시설 관계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진정함 설치 실태 등을 점검한 데 따른 효과로 분석된다. 실제로 인권상담센터는 매년 정신보건시설 등을 직접 방문해 진정함 설치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방문지역을 중심으로 가시적인 개선조치가 잇따랐다.

2007년까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경찰관련 상담은 2008년 이후 다수인보호시설에 1위를 내준 채 2,232건으로 2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밖에 지방자치단체 637건, 기타국가기관 604건, 검찰 317건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구금시설은 지난해 대비 308건으로 14.9% 증가했다. 전체 인권침해 상담건수는 동기 대비 216건 증가해 13,861건으로 집계됐다.

〈표〉 인권침해 상담의 내용별 현황

구분		2013.07. ~ 2014.06.	2012.07. ~ 2013.06.	2011.11. ~ 2014.06.
검찰	검찰 계	317	351	3,670
	도·감청 등	3	1	11
	압수수색(신체)	5	1	50
	집회, 시위	1	—	8
	체포이유 등 권리불고지/가족미통지	1	1	20
	임의동행	—	1	12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	1	11
	폭행, 가혹행위/과도한 장구사용	6	11	155
	폭언·욕설 등 인격권 침해	65	55	604
	건강·의료권침해/피해자보호조치 미흡	2	2	55
	체포, 구속, 감금	12	7	113
	불리한 진술 강요/심야, 장시간 조사/편파 부당수사	79	117	1,428
	공소권 남용	28	32	289
	피의사실 유포/개인정보 관리 등	27	24	164
	알권리/정보공개	9	12	86
	기타	75	83	653
	생명권 침해	1	1	3
	압수수색(주거)등	3	2	7
	종교의 자유	—	—	1

구분		2013.07. ~ 2014.06.	2012.07. ~ 2013.06.	2001.11. ~ 2014.06.
경찰	경찰 계	2,232	2,322	18,998
	불심검문/임의동행	29	40	516
	도·감청 등	6	14	69
	압수수색/과도한 신체검사	33	29	549
	집회, 시위	15	8	267
	체포이유 등 권리 불고지/가족미통지	48	48	400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3	2	38
	폭행, 가혹행위/과도한 장구사용	572	543	4,242
	폭언·욕설 등 인격권 침해	410	410	3,089
	건강·의료권침해/피해자보호조치 미흡	64	62	591
	체포, 구속, 감금	82	75	702
	불리한 진술 강요/심야·장시간 조사/편파 부당수사	417	496	4,718
	기타	340	373	2,629
	피의사실 유포/개인정보 관리 등	159	159	891
	알권리/정보공개	29	29	198
	생명권 침해	8	12	30
	압수수색(주거) 등	11	11	43
	종교의 자유	—	—	1
	인터넷	1	2	5
	유치장관련 인권침해	5	9	20
지방자치 단체	지방자치단체 계	637	647	5,783
	위법/부당한 처분	176	190	1,435
	부작위/거부 등 소극적 처분	103	87	1,195
	폭행/가혹행위	10	21	312
	인격권 침해	130	123	1,202
	개인정보/사생활 비밀 침해	98	104	741
	알권리 침해	9	15	83
	행정/제도 개선	22	31	170
	기타	89	76	645
기타국가 기관	기타국가기관 계	604	617	6,589
	위법/부당한 처분	186	243	3,179
	폭행/가혹행위	23	33	455
	인격권 침해	117	102	954
	사생활 비밀 침해	71	71	629
	알권리 침해	12	17	118
	기타	195	151	1,254

구분		2013.07. ~ 2014.06.	2012.07. ~ 2013.06.	2001.11. ~ 2014.06.
사법부	사법부 계	170	219	1,398
	위법 부당한 처분	47	74	518
	폭행, 가혹행위/과도한 장구 사용	5	3	35
	폭언, 욕설 등 인격권 침해	41	40	312
	출입국 제한	-	-	11
	피의사실 유폐/개인정보 관리 등	22	23	136
	알권리/정보공개	7	7	36
	행정/제도개선	11	17	73
	기타	37	53	269
	도·감청등	-	1	1
	종교의 자유	-	1	1
	상담용-증인(증거)신청 기각	-	-	5
	인터넷	-	-	1
구금시설	구금시설 계	308	268	2,406
	건강/의료	108	92	799
	외부교통 권리제한	7	13	160
	조사/징벌/계구	25	23	220
	폭행/가혹행위	61	57	446
	처우관계/인격권 침해	36	36	322
	시설/환경	10	12	118
	기타	61	35	341
다수인보호 시설	다수인보호시설 계	7,631	7,050	32,140
	불법/강제수용	2,303	2,351	11,067
	폭행/가혹행위	507	443	2,853
	외부교통권제한	467	443	2,120
	의료조치 미흡	317	297	1,268
	강제노동	61	82	369
	인격권 침해	454	524	1,906
	시설/환경	245	211	1,160
	기타	1,394	863	4,356
	퇴원요청	1,883	1,836	7,041

구분		2013.07. ~ 2014.06.	2012.07. ~ 2013.06.	2001.11. ~ 2014.06.
군	군 계	339	374	2,766
	법정질환관리부실	-	-	1
	면담불허	-	-	1
	외부통신제한	-	-	3
	불심검문/임의동행	-	-	3
	도·감청 등	-	-	3
	압수수색(신체)	-	1	8
	체포이유 등 권리 불고지/가족 미통지	1	1	3
	불리한 진술 강요/심야, 장시간 조사/편파 부당수상	12	10	85
	폭행, 가혹행위/과도한 장구사용	46	43	585
	폭언, 욕설 등 인격권 침해	62	51	318
	건강·의료권 침해/피해자 보호조치 미흡	62	83	504
	체포, 구속, 감금	-	4	15
	부당한 사건분류	-	-	4
	피의사실 유폐/개인정보 관리 등	18	19	56
	알권리침해/정보공개	11	5	27
	생명권 침해	19	30	189
	부당한 제도 및 처분	50	58	456
	기타	48	60	476
	압수수색(주거) 등	2	1	3
	인터넷	-	2	2
	상담용-개인정보누설	-	-	3
	종교의 자유	3	-	4
	영창관련 인권침해	5	6	17
각급학교	학교 계	852	918	2,920
	인격권 침해	390	388	1,477
	체벌	56	75	231
	징계부당	79	119	249
	기타	327	336	963
공직유관 단체	공직유관단체 계	399	318	854
	위법/부당한 처분	102	92	239
	인격권 침해	86	73	180
	폭행/가혹행위	11	8	20
	개인정보/사생활 비밀 침해	75	45	134
	알권리 침해	8	12	21
	부작위/거부 등 소극적 처분	54	35	108
	행정/제도개선	12	13	35
	기타	51	40	117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다수인보호시설의 경우, 불법/강제수용 2,303건(30.2%), 퇴원요청 1,883건(24.7%), 폭행/가혹행위 507건(6.6%), 외부교통권 제한 467건(6.1%), 인격권 침해 454건(6.0%)의 순이었다. 2위를 차지한 경찰의 경우는 폭행 및 가혹행위/부당한 장구사용 572건(25.6%), 폭언 및 욕설 410건(18.4%)의 순이었다. 그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위법/부당한 처분 176건(27.6%), 인격권 침해 130건(20.4%), 부작위/거부 등 소극적 처분 103건(16.2%)의 순이었다.

한편 2012년 3월 21일 위원회법 일부 개정으로 공직유관단체와 사립학교가 새로이 위원회 조사대상으로 포섭됨에 따라 학교 관련 상담이 매년 급증하였다가 동기 대비 7.2% 감소하였다. 학교의 경우 인격권 침해 390건(45.8%), 징계부당 79건(9.3%)의 순이고,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위법/부당한 처분 102건(25.6%), 인격권 침해 86건(21.6%), 개인정보/사생활비밀침해 75건(18.8%)의 순이었다.

6. 차별행위 상담

〈표〉 차별행위 상담의 기관별 현황

구분	2013.07. ~ 2014.06	2012.07. ~ 2013.06	증감	2001.11. ~ 2014.06.
합계	3,047	2,770	277	19,425
검찰	6	5	1	500
경찰	35	50	△15	128
구급시설	3	4	△1	41
군대	17	24	△7	140
기타국가기관	167	157	10	1,546
지방자치단체	152	166	△14	1,304
보호시설	52	45	7	226
교육기관	321	252	69	1,854
공공기관	208	199	9	1,381
사법인	631	434	197	5,220
개인회사	767	749	18	3,310
단체	68	70	△2	457
사인	490	439	51	2,446
요양시설	24	14	10	61
기타	106	162	△56	811

차별행위 상담을 기관별로 살펴보면 개인회사(25.2%), 사법인(20.7%), 사인(16.1%) 등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사례가 절반을 넘는다. 공권력 집행기관의 경우 교육기관(10.5%), 공공기관(6.8%), 기타 국가기관(5.5%), 지방자치단체(5.0%) 등에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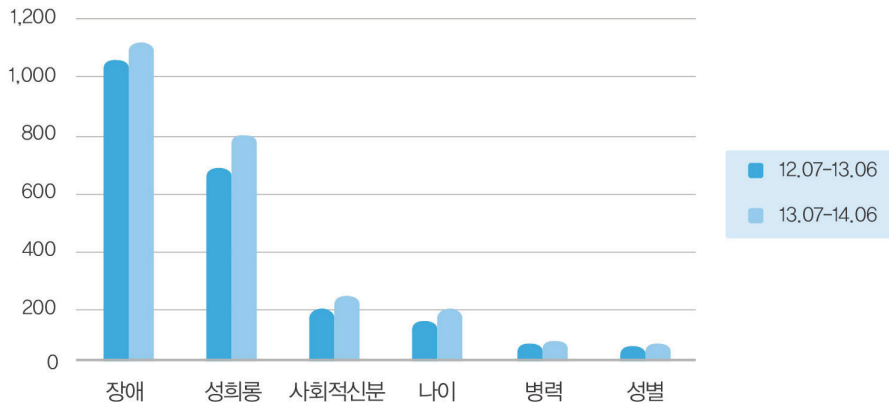
사유별 차별행위를 분석하면 장애차별 관련 상담이 전체의 36.4%를 차지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제일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2008년 4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장애인 인권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했음을 보여준다.

〈표〉 차별행위 상담의 사유별 현황

구분	2013.07. ~2014.06	2012.07. ~2013.06	증감	2001.11. ~2014.06.
합계	3,047	2,770	277	19,425
성별	83	79	4	604
종교	15	15	—	142
장애	1,109	1,055	54	6,252
나이	192	158	34	1,411
사회적신분	241	208	33	1,762
출신지역	13	15	△2	145
출신국가	60	55	5	511
출신민족	4	4	—	30
용모·신체조건	47	39	8	285
혼인여부	10	8	2	112
임신·출산	45	42	3	292
가족상황	19	16	3	143
인종	8	4	4	31
피부색	2	4	△2	13
사상·정치적의견	5	3	2	76
전과	45	41	4	286
성적지향	9	3	6	29
병력	81	80	1	594
학벌/학력	35	33	2	279
기타	233	232	1	1,830
성희롱	791	676	115	4,598

〈표〉 차별행위 상담의 영역별 현황

구분		2013.07. ~2014.06	2012.07. ~2013.06	증감	2001.11. ~2014.06.
합계		3,047	2,770	277	19,425
고용관련	소계	1,148	942	206	7,397
	교육	8	13	△5	72
	해고	143	116	27	1,034
	모집	96	77	19	767
	배치	94	86	8	644
	승진	39	38	1	291
	임금 외 금품지급	35	35	—	249
	임금 지급	139	117	22	693
	자금용자	2	—	2	6
	채용	189	172	17	1,424
	퇴직	36	48	△12	279
	정년	27	33	△6	179
	기타	340	207	133	1,759
재화/용역	소계	698	675	23	4,292
	상업시설의 공급 이용	83	82	1	544
	용역의 공급 이용	217	175	42	1,325
	재화의 공급 이용	289	330	△41	1,705
	주거시설의 공급 이용	49	32	17	226
	교통수단의 공급 이용	57	55	2	469
	토지의 공급 이용	3	1	2	23
시설 등 이용	소계	133	90	43	883
	교육시설의 이용	109	81	28	792
	직업훈련기관 이용	24	9	15	91
기타	소계	1,068	1,063	5	6,853
	기타	1,068	1,063	5	6,853



「국가인권위원회법」상 명시된 3대 영역별로 보면 고용관련 차별이 가장 많았고 재화 및 용역에 따른 차별과 시설 이용 차별이 그 뒤를 따랐다. 고용 영역의 차별에서는 채용과 해고, 임금지급의 비중이 높다.

7. 기타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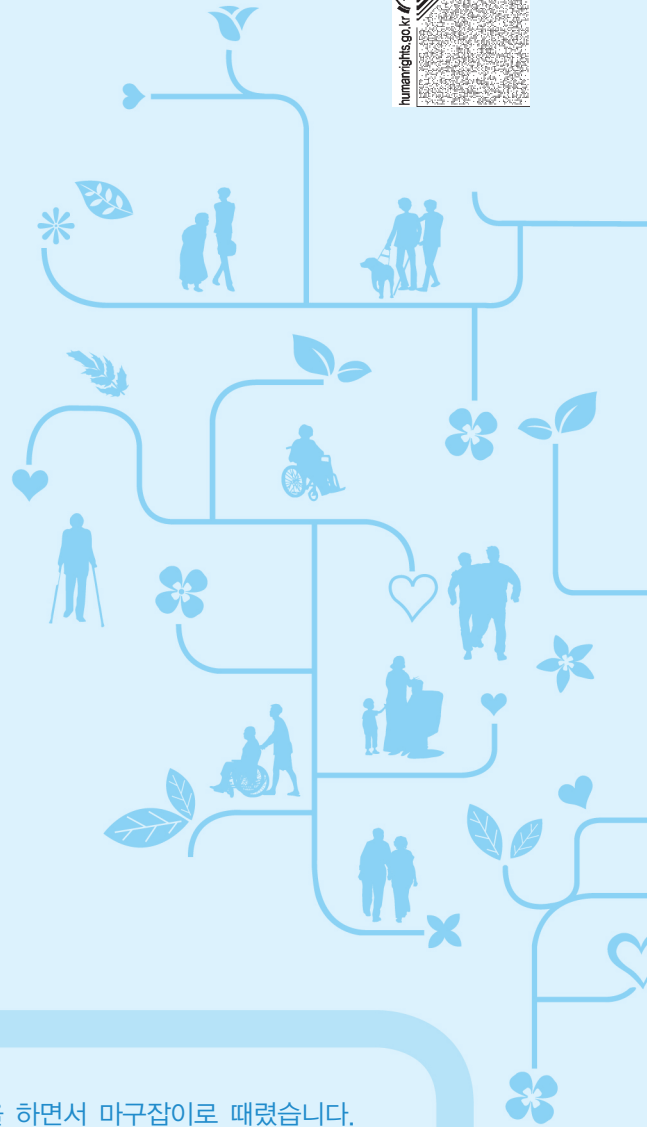
〈표〉 기타상담의 사유별 현황

구분	2013.07. ~2014.06	2012.07. ~2013.06	증감	2001.11. ~2014.06.
합계	17,017	16,161	856	98,537
사인간침해	2,748	2,843	△95	19,952
회사	1,822	1,661	161	10,825
기타단체	288	257	31	2,438
재산권	446	630	△184	3,726
법령제도개선	243	258	△15	1,925
입법/재판	378	449	△71	3,431
기타	5,596	4,829	767	29,480
국가기관	648	969	△321	5,543
인권위업무 문의	3,414	2,725	689	11,507
위원회업무 불만	427	491	△64	3,193
법률문의	880	817	63	4,964
인권위관련 제안	69	115	△46	949
차별영역외	58	117	△59	463
사립학교	—	—	—	141

기타상담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조사대상이 아닌 상담, 위원회 업무에 대한 개인 의견, 법률 문의 등 다양한 사유들이 포함된다. 위원회는 비록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내담자의 고충을 적절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인권상담 유관 기관(대한법률구조공단, 국민권익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언론중재위원회, 관련 NGO등)과의 상담네트워크를 구축해 내담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인권침해 분야

- 01. 수사기관
- 02. 군대
- 03. 국가기관·법원·지방자치단체
- 04. 다수인보호시설
- 05. 기타



01 수사기관

- 사례 1 수사과정에서 경찰관 세 명이 욕을 하면서 마구잡이로 때렸습니다.
- 사례 2 경찰 10여명이 담을 넘고 집에 들어와 무조건 체포했습니다.
- 사례 3 경찰이 세월호 희생자를 애도하는 노란리본을 달았다고 불심검문 했습니다.
- 사례 4 긴급구제조치를 바랍니다.
- 사례 5 지적장애 미성년 아들을 한밤중 영장도 없이 체포해갔습니다.
- 사례 6 경찰이 카메라를 뺏으려고 바닥에 눕히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 사례 7 경찰이 지인과 거래처에, 피의사실을 유포했습니다.
- 사례 8 수사관이 범죄전력을 유출하여 가정이 파탄나게 생겼습니다.
- 사례 9 개인정보가 다 보이게 출두명령서를 아파트 현관에 붙여놨습니다.
- 사례 10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하면서 경찰이 총을 쏘았습니다.

사례 1



수사과정에서 경찰관 세 명이 욕을 하면서 마구잡이로 때렸습니다

상담 요지

작년 4월 초 경찰차와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보험사기로 고소되었습니다. 5월 초 정도에 경찰이 “나와서 도장만 찍으면 된다.”고 전화를 해서 집 근처 슈퍼 앞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관 3명이 갑자기 저를 강제로 봉고차에 태웠고 가는 도중 경찰이 제 머리를 차 바닥으로 끌어당겨 세계 눌렀고 양쪽 옆에 앉은 경찰들이 주먹으로 제 눈 옆과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경찰이 저에게 “×새끼. 물어버린다. 너 하나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등의 심한 욕설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 핸드폰도 빼앗았습니다. 이유도 모르고 잡혀가는 게 억울해 내려달라고 했더니 차를 세운 뒤 운전석에 있던 경찰까지 뒤로 와서 맨 주먹으로 제 얼굴과 배, 옆구리 등을 사정없이 때린 뒤 저에게 담배를 주면서 몇 개 사건은 빼줄테니 시원하게 인정하라고 했습니다. 보험사기건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범인을 잡으려고 했다고는 하나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을 한 것은 심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요지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폭행과 욕설을 했다면 인권위원회의 판단을 받아 보십시오.

경찰 공무원이 업무 중 폭행을 함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면 이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하여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폭언이나 막말 등으로 인격권이 침해받은 것 또한 인권위의 판단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기본권 관련성과 인격권 침해 여부는 사건의 상황, 기존의 관계, 연령, 발달과 욕설의 지속성이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의 인격적 정체성을 허물어뜨릴 정도의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었는지의 검토과정을 거쳐 판단됩니다.

유사 사례

조사 중 이 새끼, 저 새끼하며 범죄자 취급을 했습니다.

어제 안 좋은 일이 있던 상황에서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사 중에 경찰이 화를 내면서 “이 새끼”, “저 새끼”했습니다. 아직 죄를 지었다는 게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범죄자 취급을 한 것입니다.

경찰이 자백을 강요합니다.

동네에서 절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는 참고인으로 두 번 조사를 받았습니다. 두 차례의 조사에서 경찰이 저에게 “네가 범인이잖아! 어서 말해!” 등 수 차례 강압적으로 대했습니다. 한번은 오후 4시부터 새벽 2시까지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절도사건이 있었던 때에 저는 지인들과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 다. 지인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다 진술을 하였고 저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게임에 로그인 한 기록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도 경찰들이 증거도 없이 자백을 하라고 했습니다.

참고 결정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2013. 3. 2.

경찰의 가혹행위 등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3. 1. 18. 무전취식 혐의로 검거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진정인 1이 형사기동대 차량 안에서 주먹으로 수갑을 찬 진정인의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이어 안경을 벗게 한 뒤 계속 때렸다. 피하려고 손으로 얼굴을 가리면 “손 내려”라고 하면서 10여 차례를 때렸는데, 차량을 운전하고 있던 피진정인 2는 이를 보고도 말리지 않았다.

판단요지

폭행 등 가혹행위 주장에 대하여 위의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 1이 호송 중인 진정인을 10여 차례 폭행하고 피진정인 2가 이를 보고도 제지하지 않은 행위는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조(폭행·가혹행위의 금지)의 규정을 위반하고, 「헌법」 제12조가 규정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경찰청이 피의자 인권보호 및 법집행 투명성 확보를 위해 2011년부터 모든 경찰차량에 블랙박스 장착 및 운행 시 작동을 의무화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 1, 2는 진정인을 호송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경찰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작동하지 않았는바, 앞으로 유사한 인권침해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경찰서장에게 피의자 등 호송을 위한 경찰차량 운행 시 경찰청 방침에 따라 블랙박스를 작동하도록 하고, 이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사례 2



경찰 10여명이 담을 넘고 집에 들어와 무조건 체포했습니다.

상담 요지

어제 인근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CCTV에 찍힌 범인과 제가 입은 점퍼 색깔이 비슷하다고 집 앞에 경찰 30명이 둘러싸고 10여명이 담을 넘어 들어왔습니다. 무작정 수갑을 채우고 경찰서로 데리고 가는 과정에서 체포영장을 제시하지 않았고 제대로 된 설명도 없었습니다. 본인이 무슨 말이라도 하려고 하면 ‘벌써부터 거짓말 한다.’며 일단 범인으로 몰아세웠고 미란다 원칙도 두 문장 정도로 무척 성의 없이 고지했습니다. 그렇게 경찰서에 가서 CCTV를 확인했더니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본인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지만 DNA 검사까지 해야 한다고 해서 DNA를 채취한 뒤 어제 오후 1시경 끌려가서 밤 9시경에야 풀려났습니다. 나중에 형사들은 미안하다고 했지만 동네 사람들이 다 보고 아들도 있는 앞에서 어마어마한 수모를 겪었습니다.

답변 요지

경찰에게 긴급체포 당했다면 요건에 해당하는 지 인권위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긴급 체포했다면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인권위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권리 미고지에 대해서도 인권위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인권위 조사를 통해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체포 당시의 급박성, 수사의 불가피성 등도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유사 사례

경찰에게 항의하고 욕했다고 모욕죄로 체포되면서 미란다 원칙도 고지받지 못했습니다.

경찰관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습니다. 어제 밤에 버스 기사랑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112에 여러 차례 신고했지만 경찰이 출동하지 않았고 역에 도착하여 마침 경찰차를 발견하여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이 버스에 탑승했고 제가 당한 부당한 일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제가 왜 이제서야 출동 했느냐, 니들이 경찰이냐고 화를 냈고 ‘씨팔’이라고 욕설도 했습니다. 경찰이 내려서 이야기하자며 제 옆구리를 끼고 내리더니 버스 밖에서 팔목을 꺾어 강제로 경찰차에 태워 파출소로 데려갔습니다. 미란다원칙을 고지받지도 않았습니

다. 파출소에 가서 버스기사과 버스 내 CCTV, 블랙박스를 보면서 이야기하자고 했는데 무시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저를 모욕죄로 고소해서 새벽 2시에 경찰서로 이송되었고 차가 다 끊긴 새벽 3시가 되어서 조사를 마쳤습니다.

술 취한 사람을 파출소에 데려다 줬다가 6시간 동안 집에 가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밤에 친구들과 식사를 하고 헤어져 귀가하던 중 어떤 주취자가 추운 날씨에 길바닥에 누워 있어 관할파출소에 데려다 주었다고 합니다. 아들이 주취자를 파출소에 데려다주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 주취자가 취중에 갑자기 아들에게 맞았다는 말을 했다면서 경찰이 못가게 막길래 상식적으로 자기가 때렸으면 그 사람을 파출소로 데려다 주었겠냐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영장도 없이 아들을 파출소에서 못 나가게 하며 일단 술에 취한 사람이 깰 때까지 파출소 안에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6시간이 지난 새벽 5시까지 그 파출소에 있어야 했고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파출소에 전화를 했는데 경찰들은 사과는 커녕 돌아가며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을 했습니다.

참고 결정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2013. 10. 31.

경찰의 주거지 불법수색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2012. 8. 10. 진정인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가 수색하고, 벽에 부착된 처의 사진을 휴대폰으로 찍어 진정인에게 보여주면서 “니 부인 맞지, 내가 집에 들어가서 봤다.”라고 비웃으며 조롱하였다.

판단요지

「헌법」 제12조는 체포·구속·압수·수색 시 영장주의를 명시하고 있고, 특히, 「헌법」 제16조는 주거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17조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215조도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영장에 의해 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다만,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 제1항은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인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절박한 때에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한도 내에서 타인의 토지·건물 등에 출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설령 다른 범죄나 진정인의 안전과 관련한 증거를 확인하기 위하여 부득이 진정인의 주거지에 들어갈 필요가 있었다면 위 「형사소송법」 제215조가 정한 압수수색 절차에 따라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여야 함에도 피진정인은 이러한 절차를 위반하였고, 주거지 내에 게시된 진정인의 여자친구 사진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사건과

참고 보도자료

보도자료 2014년 7월 10일

경찰조사 중 귀가하려던 피해자를 모욕죄로 현행범 체포시

“도주우려 등 체포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인권침해”

- 인권위, 해당 경찰서장에게 재발방지 직무교육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경찰서 조사 중 귀가하려던 폭행사건 피해자를 모욕죄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건에 대해 도주우려 등 체포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경찰의 재량권을 남용한 인권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 인권위는 이와 관련해 해당 경찰서장에게 소속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현행범 체포에 대한 업무상 필요한 판례 등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진정인(남, 44세)은 “폭행사건 피해자로 112에 신고한 후 지구대를 거쳐 경찰서 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고 귀가하려고 출입문을 밀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렸는데, 경찰관들 에게 욕설을 했다면 도망할 염려가 없음에도 모욕죄 현행범으로 체포당한 것은 부당 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 다만, 피진정인들을 비롯한 경찰관들에게 업무상 필요한 판례 교육 등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경찰관에게 개별적인 책임을 묻기 보다는 유사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경찰이 세월호 희생자를 애도하는 노란리본을 달았다고 불심검문 했습니다.

상답 요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조금 전 TV 뉴스를 보고 전화했습니다. 경찰이 노란 리본을 단 고궁 관람객에게 불심검문을 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관람객에게 경찰 2명이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람객이 “혹시 노란 리본을 달아서 그런 것이냐”고 물었는데 경찰이 “그렇다”라고 답했습니다. 세월호 사건에 대한 애도의 표시인 노란 리본을 보고 범법 행위의 우려가 있는 사람이라고 불심검문을 한 것은 인권침해 및 차별이라고 생각함. 이에 대해서 인권위에서 조사해 주기를 바람.

답변 요지

경찰의 부적절한 불심검문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하면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이 불심검문을 할 경우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검문의 이유와 목적을 충분히 설명한 후, 피검문자의 동의를 구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불심검문을 했다면 인권위에 진정하여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및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을 경우 조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유사 사례

경찰이 불심검문을 하면서 휴대폰 문자까지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이면도로 주차공간에 잠시 세워놓고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경찰이 단속을 나왔다면 신분증을 달라고 하여 줬습니다. 차안을 훑어보더니 차에서 내리라고 하고 차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문자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휴대폰을 달라고 했습니다. 차에서 내리라고 하고 차를 뒤질 때부터 기분이 나빴으나 참았는데 휴대폰까지 달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어 항의를 하고 한참 실랑이를 하여 휴대폰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 동네가 불법 대리운전 영업을 하는 개인승용차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경찰이 휴대폰 문자까지 확인하겠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범칙금 발부 았을테니 대신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경찰 잡더니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이유를 물으니 제가 무단횡단을 하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무단횡단을 한 것이 아니고). 저는 옆 사람들을 따라 무심코 한발을 내딛었다가 빨간불인 것을 알고 멈춰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그 자체가 이미 불법이어서 무단횡단과 마찬가지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범칙금 고지서는 발부 안 할 테니,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무단횡단으로 여러 명이 건너갔고 차도에 주차한 트럭, 불법 점거하여 장사하는 리어가 모두 놔두고 빨간 불인지 모르고 한 발 내딛은 저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것은 우습지 않느냐고 항의했지만 계속 범칙금 발부를 하지 않는 대신 불심검문에 협조해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겠다, 불심검문을 거부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하며 “끝까지 거부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잡아가기라도 할 것이냐?”고 물었더니 경찰이 충분히 그럴 수 있고 계속 거부하면 구속까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길거리에서 실랑이가 끝나지 않을 것 같아 결국 보여줬습니다.

참고 결정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2013. 10. 31.

부당한 불심검문 등에 의한 인권침해

진정요지

○○경찰서 및 ○○지방경찰청 제2기동대 경찰관들인 피진정인들은 2012. 9. 6. 12:30경 ○○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버스를 타고 가는 진정인을 강제로 버스에서 끌어내리고 15분가량 길거리에 고착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검문의 이유도 설명하지 않았다.

판단요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은 불심검문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같은 법 제3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의 의하여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의 경우에는 동행장소를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불심검문을 하는 경찰관은 법률에 정한 위 절차를 준수하여 「헌법」 제12조가 명시한 적법절차의 원칙과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 1, 2, 3, 4, 5, 6은 진정인을 불심검문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이 수차례 요구함에도 진정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거나 검문의 목적을 설명하지 않았다. 비록, 진정인과 일부 피진정인이 이미 서로 알고 있는 사이라 하더라도 불심검문과정에서 소속과 이름을 밝히고 검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할 경찰관의 의무가 해제된다고 볼 근거는 없으므로 피진정인들은 절차 위반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 1, 2, 3, 4, 5, 6은 위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긴급구제조치를 바랍니다

상담 요지

현재 한 건설현장의 하청업체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21명이 해고되었습니다. 그래서 해고자가 있는 팀의 반장과 팀장이 오늘 새벽 2~4시 사이 크레인에 올라가 부당해고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크레인에 올라가 농성중인 두 사람에게 밥을 올리려고 했으나 원청에서 허락 해주지 않아 식사를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출동한 경찰들은 집회행위라고 보고 있고 고공 농성 중인 두 사람에게 밥을 올려야 한다고 조합원들이 경찰에 이야기 했지만 경찰은 원청에서 허락하지 않아 밥을 올릴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원청 측에 협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답변 요지

경찰은 집회 시위자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상당한 개연성과 이를 방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의료, 급식, 의복 등을 제공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집회관련하여 집회 시위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방지하거나 방지하는데 협조하였다면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하여 판단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참고 결정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2013. 7. 25.

집회 자유침해에 대한 긴급구제

진정요지

진정인은 피해자의 대리인인바, 피진정인은 피해자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가 신고한 집회에 대한 제한통보 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효력정지 결정을 하였는데도 2013. 7. 24. 17:00 신고된 집회장소에 질서유지선을 설정하고 경찰력을 배치하여 집회를 방해함으로써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2013. 7. 25.과 7. 26. 신고된 집회도 방해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긴급구제를 신청한다.

판단요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긴급구제조치는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할 수 있다.

피진정인이 신고된 집회 공간의 일부를 점유함으로써 공간의 협소함으로 인하여 신고된 내용의 집회개최를 사실상 어렵게 한다면 이는 위 법원의 결정에도 반하는 결과가 되고 따라서 집회개최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상태를 방지할 경우 시간상 신고된 내용대로 집회를 개최할 수 없게 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진정인의 이 사건 긴급구제신청을 인용하기로 하는 바,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신고한 내용의 집회가 위 법원결정의 취지에 따라 개최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 요청된다 할 것이다.

참고 보도자료

보도자료 2014년 5월 28일

“대한문 앞 집회물품 반입 차단은 인권침해”

인권위, 해당 경찰관 주의조치와 직무교육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경찰이 대한문 앞 신고된 집회에 사용할 집회물품의 반입을 차단한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A지방경찰청장에게 해당 경찰관에 대해 주의조치할 것과 B경찰서장에게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하여 집회시위 관련 업무 담당 경찰관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쌍용자동차 정리하고 희생자인 진정인 C씨(46세)는 2013. 4. 5. “신고된 집회의 물품을 대한문 앞 집회 현장에 반입하려하자 경찰이 막았다”고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인권위 조사결과, 진정인이 2013. 4. 4. 행정대집행으로 수거된 음향장비 등 38종의 물품을 반출받아 차량에 싣고 4. 5. 21:00경 집회현장에 도착하여 반입하려 했으나 경찰관들은 집회신고 물품인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모든 물품의 반입을 제지하였습니다.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신고제도를 두고 있지만 집회·시위의 자유는 우리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경찰이 '신고한 목적·일시·장소·방법 등 그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집회를 둘러싼 전체적·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 인권위는 이번 사건에서 당시 차량에 실린 물품이 옥외집회신고서에 기재한 집회관련 준비물과 비교해 품목 및 수량이 달랐다고 하더라도 집회신고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경찰이 신고내용과 실제 상황을 구체적·개별적으로 비교하여 물품의 반입여부를 판단해야한다고 보았습니다.
- 인권위는 또 당시 반입하려한 물품 중 앰프, 스피커, 깃발, 핸드마이크 등은 적법한 시위용품임이 명백해 보이는 물건이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경찰이 일체의 물품 반입을 불허한 것은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사례 5



지적장애 미성년 아들을 한밤중 영장도 없이 체포해갔습니다

상담 요지

아들은 고교 3년생으로 지적장애 2급입니다. 어제 새벽 1시경 경찰이 들이닥쳐서 잠자고 있는 아들에게 가방, 노트북을 어떻게 했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이 모르겠다고 하자 바로 체포해서 파출소로 데려갔습니다. 특수반 2년생인 아들의 후배가 파출소에 이미 잡혀와 있었습니다. 후배가 집을 나와서 열흘 넘게 밖에 살면서 돈이 떨어져 도둑질을 하다가 주민신고로 잡혔다는 것입니다. 경찰이 공범을 불라고 하니 후배가 아들의 이름을 댄 것입니다. 범행 시간에 아들은 한 장애인대회에 참여중이었습니다. 제가 파출소에 쫓아갔는데 조사 시 12시간 30분간 밤을 새워 조사했습니다.

답변 요지

미성년자나 장애인 수사에서 적법절차위반이 있는지 인권위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범죄수사규칙」 제211조는 “경찰관은 소년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나 조사를 할 때에는 그 소년의 보호자나 이에 대신할 자에게 연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경찰청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2조 및 제10조는 미성년자를 사회적 약자로 정하고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할 때는 이들에 대해 신뢰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보조인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 신뢰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보조인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았다면 인권침해여부에 대한 인권위 판단을 받아보십시오. 한편, 체포영장도 없이 체포한 점, 밤샘조사를 한 점, 장시간 조사한 점에 대해서도 인권위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유사 사례

미성년자를 조사하면서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보호자 입회 없이 조사한 것은 부당합니다.

중학생 아들이 친구의 전화를 받고 경찰서로 가서 경찰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경찰이 부모에게 아무런 연락도 안하고 부모의 입회도 없이 경찰 조사했습니다. 아들은 지문까지 찍고 나왔다고 합니다.

검찰이 임신부를 강압수사 했습니다.

아내가 만삭의 임신부입니다. 검찰이 2008년도에 기각이 된 사건을 재수사를 하면서 임신한 부인을 수차례나 검찰에 불러냈습니다. 한번 불러내면 10시간 이상 강압적이고 고압적인 자세로 수사를 합니다. 검사는 쉬고 싶어 하는 부인에게 “힘들면 여기에서 쉬면서 답변을 해도 좋다”고 했지만 검찰수사관은 부인에게 쉴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3차 출석조사는 아침 10시에 진술을 시작했는데 점심시간도 없이 쫓 수사를 했습니다. 다음날 임신부에게 점심시간도 제공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한 점에 대해 검찰에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수사관이 자신도 점심 먹지 않고 수사를 했다고 답했습니다.

참고 결정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2013. 10. 31.

미성년지적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임의동행

진정요지

서울○○경찰서 ○○파출소 경찰관인 피진정인 1, 2, 3은 지적장애가 있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조사하면서 보호자인 진정인들의 동석을 불허하였고, 심야조사를 하였으며 가혹행위를 하였다.

판단요지

가. 보호자동석

「피진정인은 조사과정에서 진정인들을 파출소 밖으로 나가게 한 뒤에는 보호자 동석에 관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동석한 보호자들이 조사를 방해할 경우 일정 정도의 제한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나, 그 이후 절도품 수색을 위한 현장조사를 포함하여 조사과정 내내 보호자가 다시 동석할 수 있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위 제 규정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가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진술거부권과 방어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심야조사

경찰청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64조는 경찰관의 심야 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피의자 석방을 불필요하게 지연시킬수 있는 경우, 공범자의 검거 및 증거수집에 어려움이 있거나 타인의 신체와 재산에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기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의 서면상 동의를 받은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심야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 1, 2, 3은 01:30경 및 01:40경 피해자들을 임의 동행한 후 07:00경까지 피해자들을 심야 조사하면서 심야 조사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고 동의서도 작성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기타당시 심야 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이러한 심야 조사는 위 직무규칙을 위반하여 「헌법」 제10조에서 연유되는 피해자들의 휴식권과 수면권을 침해하고, 또한,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다. 가혹행위

피진정인 1, 2가 파출소 및 순찰차량 안과 현장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행위는 위 직무규칙을위반하여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피해자들의 인격 권과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 할 것이다.



경찰이 카메라를 뺏으려고 바닥에 눕히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상담 요지

지난 토요일 새벽, 동료가 술값이 과다하다고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자 업주가 경찰을 불렀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현장검증을 한다며 저와 동료가 앉았던 좌석으로 갔습니다. 저도 증거를 남기겠다고 말하며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그러자 경찰이 큰소리로 “사진 찍지 마!” 라고 제게 반말을 했습니다. 경찰이 저의 카메라를 뺏으려 하고 저는 뺏기지 않으려고 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경찰이 저를 바닥에 눕히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경찰이 출동한 이유는 뒷전에 두고 저의 카메라 뺏는 것에 혈안이 되어 남자 경찰이 2명이 치마를 입고 있는 저를 바닥에 눕히고 수갑까지 채우는 웃지 못 할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기가 막힐 지경입니다. 저는 그 일로 뒷목과 양손에 시퍼렇게 멍이 들었습니다.

답변 요지

과도한 장구사용에 대해 인권위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카메라를 뺏기 위해 바닥에 눕히고 수갑을 채웠다면 과잉 진압이나 과도한 장구사용에 대해 인권위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유사 사례

이런 경우까지 경찰이 수갑을 채웠어야 하는 지 의문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벌금미납으로 파출소에 연행되었습니다. 남편과 아이가 파출소로 왔고 제 통장과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은행에서 벌금을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비밀번호 오류로 입금이 되지 않아서 제가 직접 은행을 방문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은행에 수갑을 채워서 가야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은행에 수갑을 차고 가서 입금처리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수갑을 차고 은행업무를 처리하게 했습니다.

경찰이 많은 사람 앞에서 수갑을 채워 경찰서로 데려갔습니다.

의류매장을 하고 있습니다. 장사에 방해되는 고객이 있어 나가라고 수차례 말했으나 나가

참고 결정례

지 않아 툇 밀었습니다. 그러자 고객이 폭행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 5명이 출동했습니다. 2~3분 정도 대화중 경찰의 목소리가 커져서 다른 손님들이 쳐다봤고, 영업장이니 밖으로 나가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그러면 경찰서로 가자, 수갑을 채워가겠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많은 손님들 앞에서 폭행현행범이라면서 저를 바닥에 누이고 수갑까지 채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2013. 7. 23.

호송시 장구노출로 인한 인권침해

진정요지

○○경찰서 형사와 경찰관인 피진정인들은 2012. 8. 3. 구미경찰서 유치장에 수용중인 피해자(진정인의 남편)를 병원진료를 위해 순천향병원으로 호송하면서 수갑과 포승을 가리지 않고 노출시켜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였다.

판단요지

「헌법」 제10조는 인격권을 보장하고 있고, 국제기준인 유엔의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 제45조는 “피구금자를 이송할 때에는 가급적 공중의 면전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모욕, 호기심 및 공포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청훈령인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62조는 유치인을 호송할 때에는 호송하는 모습이 가급적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경찰관은 피의자를 호송하는 과정에서 도주 방지 등을 위하여 피의자에게 수갑, 포승 등 경찰장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일반인에게 위 장구를 착용한 모습이 노출됨으로 인해 피의자가 수치심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들은 피해자가 외부인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옥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시키고 외부 난간을 이용하여 병원 안으로 들어가는 등 일부 조치를 취하기는 하였으나, 수갑과 포승을 직접 가리는 조치는 취하지 않았는데, 불특정 다수인의 출입이 빈번한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복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피진정인 두 명이 아무런 도구 없이 피해자가 착용한 장구를 효과적으로 가릴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은 호송관으로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일반인에게 수갑과 포승을 착용한 모습이 노출됨으로 인해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도록 하였고, 이는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경찰청장에 수갑사용 제도개선 방안 이행 권고

－ 인권위, 손목 부상 입힌 경찰 주의. 일선 경찰서에 사례 전파 권고도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헌병철)는 경찰관이 수갑을 채운 피의자가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시갑 상태를 확인하지 않아 손목부상을 입힌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A경찰청장에게 해당 경찰관 2명을 주의조치할 것과, 소속 경찰관들에 대하여 수갑 사용과 관련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경찰청장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수갑 사용과 관련하여 2011. 11. 2.과 2012. 5. 24. 두차례 권고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 이행할 것과 이 사건 사례를 일선 경찰서에 전파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사례 7



경찰이 지인과 거래처에, 피의사실을 유폐했습니다

상담 요지

피의자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5월에 시작된 조사가 3개월이 넘도록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조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야간조사를 받지 않으려면 병원 진단서를 받아오라고 합니다. 경찰이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같은 질문을 계속합니다. 핸드폰도 압수당했습니다. 핸드폰에 입력된 지인들이나 거래처에 전화하여 본인과 공무원간의 비리사안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제 딸이 대학생인데 담당수사관이 자기 아들도 대학생이라며 자신은 깨끗한 돈으로 애를 가르치는데 저는 그런 식으로 사업해서 애를 가르치느냐고 하는 등 조사와 상관도 없는 말을 하여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답변 요지

경찰이 피의사실을 유출했다면 인권위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내담자의 지인이나 거래처에 전화하여 피의사실을 유출했다면 인권위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수사내용과 무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언급하여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에도 인권위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수사 자체를 인권침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야간수사를 강제한다면 그에 대해서는 인권위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경찰 수사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경찰청에 수사이의를 신청하거나 수사관 교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사 사례

범죄가 확정전인데 신고자에게 피의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술집 근처에서 저를 바바리맨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신고자와는 지구대에서 파티션 하나를 두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성추행 행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사 중 경찰이 큰 목소리로 저의 집주소와 회사명 등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이 제가 하는 아파트에 분양신청했다가 떨어졌다거나 제가 다니는 회사의 대표를 안다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찰이 큰 목소리로 신고자 앞에서 저의 신상정보들을 확인하는 바람에 신고자가 저에 대한 개인정보를 모두 알아갔습니다. 혐의 내용도

억울한데다가 작은 동네에 저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퍼져 처자식에게 곤란한 상황이 생길까봐 걱정입니다.

공무원은 입건 사실만으로도 직장에 통보된답니다.

얼마전 남편과 부부싸움 끝에 남편을 폭행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처음에는 지구대로 갔다가 사건이 경찰서까지 넘어가게 되어 우리 부부는 경찰서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쓰기 직전에 남편과 화해를 했고 서로 고소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두 사람 다 폭행이라고 인정하지도 않았으며 트집을 잡다보니 좀 일이 커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조서를 써야지만 집에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조사를 썼습니다. 그제야 경찰이 공무원인 남편과 저에게 각각의 직장으로 입건 사실이 통보될 거라고 했습니다. 부부싸움을 한 부부가 경찰 조서를 쓰기 전에 서로 화해를 하고 서로 폭행이 아니라고 했음에도 경찰이 조서를 끝까지 쓰라고 강요한 것도 부당하지만 이런 일을 직장에 알리는 것도 부당합니다. 공무원이라고 해서 형사기소도 아니고 입건만으로 직장에 사실이 알려지는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 결정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2013. 4. 9.

경찰의 부당행위 및 피의사실 유포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주소지를 알면 출석통지서를 보내면 되는데도 2012. 7. 29. 진정인 부재중에 집으로 찾아와 거주사실과 연락처 확인 과정에서 진정인의 모(母)에게 위와 같은 진정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렸다.

판단요지

이 사건의 경우 진정인에 대해 신속한 출석요구가 필요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음에도 진정인의 주소지로 출석요구서를 보내지 않고 피진정인 2가 주소지를 직접 방문한 것은 「범죄수사규칙」 제54조 규정에 위배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와 같이 방문하여 진정인의 어머니에게 진정인의 피의사실을 알린 것은 위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9조를 위반하여 「헌법」 제17조가 규정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물론 피진정인 2가 내용을 모르고 걱정하는 진정인의 모에게 방문 목적 등을 설명해 주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하여 진정인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사실을 알려주었다는 점은 정상관계로 참작할 수는 있으나 이로 인하여 위와 같은 결론이 달라질 수는 없을 것이다.

사례 8



수사관이 범죄전력을 유출하여 가정이 파탄나게 생겼습니다

상담 요지

예전에 성폭력으로 복역했었습니다. 출소 후에 열심히 잘 살고 있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사를 하게 되어 담당 형사에게 이사 간다고 몇 차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전 관할 경찰서에서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저에게 전화하지 않고 아파트 경비실에 문의를 하여 아내 전화번호를 알아 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아내에게 제가 어디 있는지 물었습니다. 아내가 왜 전화를 했냐고 물으니까 경찰이 국가에서 우범자에 대해서 관리를 한다고 말을 했고, 아내가 어떤 우범자를 얘기하느냐고 하였더니 성폭력범을 그렇게 관리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아내가 저의 전과 기록을 발급해오지 않으면 살 수 없다면서 친정으로 가 버린 상태입니다. 경찰이 아내에게 저의 과거 전과사실을 유출하여 가정이 파탄나게 생겼습니다.

답변 요지

전과사실 유출에 대해 인권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예규인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경찰은 우범자의 첩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경찰은 우범자의 인권을 최대한 배려하여 적절한 방법에 의하고 명예나 신용을 부당하게 해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경찰이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면 진정하여 인권위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사 사례

과거 범죄 경력 때문에 경찰의 특별 관리, 감시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자꾸 저를 관리대상이라고 하면서 감시합니다. 저는 5~6년 전에 교도소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무슨 지침이 내려왔는지 관리 대상이라고 하면서 정기적으로 전화를 합니다. 경찰이 전화를 하니 스트레스를 받고 사회생활에 걸림돌이 생깁니다. 집 주소까지 알아서 찾아오기도 합니다. 범죄를 저질렀다면 잡으러 오는 게 당연하지만 열심히 살고 있는데 특별 관리 대상이라고 하면서 직장은 어디 다니냐고 묻는 등 괜히 들쭉시고 있습니다. 전화를 하지 말라고 해도 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경찰 탐문 때문에 동네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경찰이 최근 이틀에 걸쳐 집주인과 제가 자주 가는 가게 집에 가서 저의 사진을 보여주며 어느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이 일로 집주인과 동네 사람들이 저를 범죄자로 여기게 됐고, 집주인이 꺼림칙하다며 집을 나가라고 합니다. 형사가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의 사진까지 보여주는 것은 개인정보를 침해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에 항의 차 경찰서에 전화했더니 경찰이 하는 말이 “월세 방에 살면서 아무 데나 가서 살면 되지, 뭘 그거 갖고 그러느냐?”라고 했습니다. 너무 모욕적이었습니다. 저는 13년 전 억울하게 기소되었으나 누명을 벗지 못해 복역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착실하게 살고 있었는데 이 일로 집까지 쫓겨날 상황이 되었습니다.

과거 수사경력을 현사건 조서에 기록하여 편파수사가 우려됩니다.

얼마전 폭행사건에 휘말려서 경찰서 강력계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이 저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저의 전과사실을 조회했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피의자(폭행과 관련 없는 사건)로 지목되어 조사를 받은 적이 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즉, 전과도 없고 단지 수사를 받았다는 경력만 있을 뿐인데 경찰이 이를 이번 사건 조서에 써서 올렸습니다. 이는 상급 수사기관이나 법원으로부터 저에 대한 인상이 나빠질 수 있고 편파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과거 무죄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수사경력자료가 계속 남아있는 것도 부당합니다.

참고 결정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2013. 9. 30.

경찰관의 전과사실 누설에 의한 인권침해

진정요지

부산서부경찰서 경찰관인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가족에게 진정인이 구속된 사실을 통지하면서 진정인의 전과사실을 삭제하지 않고 통지서를 발송하여 진정인의 가족으로 하여금 진정인의 마약관련 전과사실을 알게 하였고, 이에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하였다.

판단요지

「헌법」 제17조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은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법령에 규정한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 및 경찰청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9조는 경찰관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 중에서도 ‘전과’는 해당인에게 인격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이며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인 바, 위 제 규정에 따라 경찰관은 법령에 규정한 필요한 용도 이외에 전과사실이 본인

이외의 사람에게 알려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헌법」 제12조 제5항, 「형사소송법」 제87조 제1항,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2조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피의자·피고인의 가족 등에게 체포 또는 구속사실을 통지하는 이유는 피의자·피고인의 소재 및 체포·구속의 사유를 가족 등에게 알려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신속한 접견과 교통을 도모하고, 변호인 선임 등 방어권 행사에 조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 비추어볼 때, 구속 통지서의 범죄사실의 요지에는 당해 범죄사실을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가족에게 발송하는 구속통지서에 진정인의 세부적인 전과를 기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 보도자료

보도자료 2010년 10월 6일

“수사경력자료, 무죄 등 판결시 즉시 삭제해야”

— 인권위, 형의실효등에관한법을 관련 규정 개정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법무부장관에게 판결, 결정, 처분의 종류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수사경력자료’ 발급미만의 형이나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피의자의 지문, 인적사항, 죄명 등이 기재된 자료를 5년~10년간 보존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법률 규정(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 제1항 및 제2항)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임모(남, 38세)씨는 “무죄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지역 내에서 유사 사건이 발생하자 용의선상에 올라 타액채취 요구를 받게 돼 억울하다”며, 2008. 7.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해 불이익 받을 개연성 커

그러나, 현행 규정대로라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는 무죄 판결 등 사건 피고인과 불기소처분 등 사건 피의자가 불이익을 받을 개연성이 큼니다. 단지 자료가 보존되어 있음으로 해서 진정사건에서와 같이 범죄 발생 시 용의자로 지목되어 수사대상이 될 수 있고, 재판에서 법정에 제출되어 양형 상 불이익을 줄 개연성이 있는 등 불이익의 정도가 상당합니다. 또한, 경찰청에서 ‘수사경력자료’를 조회하고 타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고용차별 등 구체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판결을 제외하고는 자료 보존 필요성 없어

국가인권위원회는 ‘기소유예’,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 처분을 제외한 판결 등 (무죄판결, 면소판결, 공소기각판결, 공소기각결정, ‘혐의 없음’ 처분 중 ‘범죄 인정 안 됨’의 경우, ‘죄가 안 됨’ 처분, ‘공소권 없음’ 결정)의 경우는 재수사 가능성이 없고 판결문, 결정문이나 불기소결정서에 의해 수사력 낭비를 막을 수 있으므로 ‘수사경력 자료’의 보존 필요성이 현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본 규정에 의한 불이익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 할 수 없고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 여러 종류의 판결·결정과 처분에 따라 보존의 필요성 정도에 차이가 있으므로, 그 중 보존 필요성이 현저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리한 개인정보를 가급적 삭제하는 것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일부 처분(기소유예,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을 제외하고는 판결 등이 확정된 즉시 ‘수사경력자료’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의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사례 9



개인정보가 다 보이게 출두명령서를 아파트 현관에 붙여놔습니다

상담 요지

어머니가 밖에 나가셨다가 오셨는데, 아파트 출입문에 붙어 있었다고 하면서 종이 한 장을 주셨습니다. 경찰서의 출두명령서 같다고 했습니다. 저의 이름이 크게 쓰여져 있었고 무보험차량에 대한 조사를 받아야 하니 해당기관에 출두하라는 명령서였으며 불참시 지명수배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정인은 해당기관에 전화하여 귀 기관에서 붙인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한마디의 사과도 없이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저의 이름 등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게 한 것은 사생활에 대한 침해로 생각되어 인권위원회에 진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맘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답변 요지

개인정보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진정하여 인권위 판단을 받아보십시오
개인의 이름과 차량번호, 출두명령내용 등이 기재된 출두명령서를 타인이 볼 수 있도록 아파트 현관문 앞에 부착해서 개인정보 침해 및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되었다면 인권위에 진정하여 판단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유사 사례

경찰이 사장에게 저의 벌금미납사실을 알리고 대납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벌금 미납건이 있습니다. 경찰이 제가 근무하는 곳에 찾아왔습니다. 마침 제가 없을 때였습니다. 경찰이 다른 직원에게 제가 있는지 물어보고 없다고 하니 사장과의 전화연락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장에게 자신은 경찰이라고 하고는 저의 벌금 미납사실을 말하고 경찰들이 자주 오면 영업에 피해를 주지 않겠냐며 사장에게 제 벌금을 대납하라고 했습니다.

참고 결정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2013. 10. 31.

경찰관의 부당한 기소중지자 조사 등

진정요지

○○○○경찰서 ○○지구대 경찰관인 피진정인은 2013. 5. 3. 13:00경 벌금 미납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진정인을 검거하기 위해 초등학교 4학년인 피해자(진정인의 아들)가 재학 중인 학교에 경찰관 정복을 입고 찾아가 수업 중인 피해자를 불러 “엄마 어디 있는지, 전화번호가 몇 번인지 똑바로 말하지 않으면 혼난다, 데리고 가겠다.”는 등의 말을 하였고, 이에 평소 건강이 좋지 않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현재 병원에 입원치료 중이다.

판단요지

이 사건의 경우 기소중지자 검거를 위한 소재수사를 위해 만 10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수업 중에 직접 찾아가 만날 만큼 긴급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다수의 교사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모친인 진정인의 소재를 추궁하는 행위가 아동인 피해자에게 큰 공포심과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음을 능히 추정할 수 있는 점, 이로 인하여 결국 피해자가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고 수개월째 소아정신과 치료를 받게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위 직무규칙을 위반하여 「헌법」 제10조 및 제12조가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 보도자료

보도자료 2014년 5월 27일

“차량등록사업소의 피의자 주거지 앞 출석안내문 부착은 사생활침해”

- 인권위,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관행 개선 등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A시 관내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출석요구의 방법으로 개인정보가 있는 출석안내문을 피출석요구자의 주거지에 부착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라고 판단하고, 이러한 관행을 개선할 것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A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권고하였습니다.
- 진정인 B씨(남)는 “C시 차량등록사업소 직원이 무보험차량운행 사건 관련 출석요구서를 진정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출입문 옆에 부착하여 진정인의 이름 등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 피진정인은 무보험차량 운행과 관련한 사건 건수가 많아 우편으로 출석요구를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18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써 진정인의 주소지 현관 문 옆에 출석안내문을 부착한 것이고, 이는 전국적으로 대부분 비슷하게 행해지는 관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우편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는 방법 등 진정인의 개인정보 내지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었음에도 사건 당일 진정인의 이름, 주소, 차량번호, 무보험차량운행 피의사실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제3자가 볼 수 있는 진정인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 부착한 것은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아울러 이 같은 안내문 부착이 피진정인의 개별적인 책임이라기보다는 수사실무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불만한 측면이 있으므로, 피진정인 소속기관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업무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A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관내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출석요구의 방법으로 출석안내문을 피출석요구자의 주거지에 부착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관내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출석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 것입니다.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하면서 경찰이 총을 쏘았습니다

상담 요지

부모님이 당한 일입니다. 아버지가 지인의 노래방에 놀러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와서 노래방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무슨 일이냐”며 제재하자, 경찰이 공무집행방해라고 하면서 아버지한테 총을 쏘았다고 합니다. 전기충격기가 아니라 총입니다. 여러 발을 쏘는데 그 중 한 발은 겨드랑이 사이에 맞아 총알까지 보관하고 있습니다. 총에 맞았지만 팔에 맞아 기절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를 수갑을 채워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지구대로 데리고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체포사유를 보니까 아버지가 먹살을 잡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 거기에는 경찰이 총을 쏘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답변 요지

경찰의 총기사용 과잉여부에 대해 인권위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하면서, 총기를 사용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혔다면 현행범 체포요건에 부합되는지와 경찰의 총기사용이 적법한 것이었는지, 혹은 과도한 총기사용이었는지에 대해 조사와 판단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유사 사례

음주운전 도망 후 정지했는데 창문에 권총 5발을 쏘서 다쳤습니다.
새벽 1시경 음주운전 단속을 당해 2킬로미터 정도 도망가다가 경찰에 잡혔습니다. 차를 멈추고 내리려고 하는데 경찰이 오자마자 내리라고 지시도 하지 않고 창문유리에 권총 5발을 쏘았습니다. 창문이 깨져서 얼굴에 유리 파편이 튀어 피가 나왔습니다. 경찰 말로는 고무탄이라고 하지만 공포와 무서움으로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서로 이송 후 경찰이 저를 땅바닥에 앉힌 상태로 저의 얼굴을 발로 2회를 가격했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줄줄 흘러나와 땅바닥에 흥건히 떨어졌습니다. 피가 너무 많이 흐르니까 경찰이 119를 불렀고, 119가 와서 지혈해주고 갔습니다.

참고 보도자료

보도자료 2013년 8월 7일

인권위, 경찰의 테이저건 오발로 인한 실명 피해 법률구조요청

- 변협에 손해소송 지원 요청, 경찰에 교육 강화 권고도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경찰이 현행법 체포과정에서 전자총격기(테이저건) 사용에 따른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오발사고로 진정인이 실명 피해를 입을 것을 확인하고,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이사장에게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 지원을 요청하고, A지방경찰청장에게 소속 경찰관들에 대해 테이저건의 사용법을 충분히 습득하고 체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교육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여, 37세)은 “2013. 4. 24. 경찰이 진정인과 진정인의 남편이 식당 앞에서 다투고 있는 현장에 출동하여 진정인에게 부당하게 수갑을 채우려 했고, 이에 저항하는 진정인에게 테이저건을 근접 발사해 왼쪽 눈이 실명되는 상해를 입었다”며 2013. 4.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테이저건은 2005. 10. 총기를 보완할 수 있는 장비로 경찰에 보급되어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고, 순찰요원의 경우 순찰 시 필수적으로 휴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테이저건이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어 대통령령인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와 경찰청 훈령인 「경찰장비관리규칙」 제79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안면부에 사용하지 말도록 하고 14세미만·노약자·임산부·단순주취자 및 소란자에 대해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경찰관이 오발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결과적으로 진정인의 좌측 눈을 실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것은 헌법은 제12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재 B경찰관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수사가 진행중이므로 별도의 개인책임을 묻지 않되, 진정인이 입은 신체적 상해가 심각하므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법률구조요청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과 같은 피해의 재발 방지를 위해 테이저건 사용에 대한 교육 시 실사교육, 모의훈련 등을 통해 경찰관들이 사용법을 충분히 습득하고 체화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사례 11 군복무 중 정신질환 발병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사례 12 아들이 군복무 중 폭행을 당했습니다

사례 13 아들이 선임들의 인격모독과 질타로 자살했습니다

사례 14 운동을 하다 손가락이 다쳤는데, 치료미흡으로 절단했습니다

사례 15 여군입니다. 군에서 성희롱발언을 들었습니다

사례 16 부당하게 징계를 받았습니다

사례 17 개인부채현황 조사를 한다며 금융정보조회동의서 사인을 강요했습니다

사례 11



군복무 중 정신질환 발병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상담 요지

아들이 군복무중입니다. 신병 때 한번 근무지 이탈했다가 2시간 만에 잡혀 헌병대에 3일간 있다가 복귀한 적이 있습니다. 2월 9일 처음으로 1박2일 면회가 있었습니다. 토요일 아침일찍 데려나왔습니다. 일요일에 사복을 입고 친구만 나서 잠깐 게임하고 오겠다고 하고 나가서는 3시간이 지나도록 연락이 안되었습니다. 부대에서 숙소까지 와서 찾아보려고 했고, 원사는 정신적으로 피폐해져서 언제든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자고 했습니다. 아들은 2월 4일 정신 감정을 받았는데 망상증상이 심하다고 했고 2주 뒤에 결과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했으면 기다렸을텐데 정신적인 문제를 일체 얘기해주지 않아 면회를 했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들이 사복을 챙겨달라고 하여 사복까지 챙겨주었습니다. 아들은 3일 동안 탈영상태에 있었습니다. 원사는 아들이 관심사병이라 주의를 기울였는데 이렇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지금 군헌병대에 갇혀있는데 아들이 상태가 악화될까봐 걱정입니다.

답변 요지

군복무중인 아들의 병증에 대해 군에서 고지하지 않았다면 인권위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군인이 정신적으로 심각한 변화가 온 사실을 인지하고도 군에서 부모에게 고지하지 않은 점에 대해 진정하여 인권위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헌병대 조사를 이유로 아들의 정신질환 치료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군의 의료 조치 미흡에 대해서도 인권위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유사 사례

ADHD증상이 있는 군인을 영창에 넣었습니다

아들은 작년 5월에 입대했습니다. ADHD증상이 있고 지능도 조금 떨어지지만 자원입대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아들의 상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강압적으로 대하여 문제가 계속 발생했습니다. 제가 지휘관에게 전화하여 아들의 질병에 대해 설명하고 의사의 ADHD 관련 소견서도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나 지휘관들은 아들이 일부러 그러는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아들은 얼마전 영창형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복무하는 곳이 전방인데 최근에 눈이 많이 와서 밤늦게까지 눈을 치우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지휘관 뒤에서 손가락으로 욕을 하는 모양을 하다가 적발되어 영창을 갔다고 합니다. 의사의 소견서에는 아들이 스트레스, 압박에 취약하고 우울증과 상황파악능력이 부족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군에서는 아들의 질병으로 인한 태도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문제를 일으키고 피를 부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대의 관심사병 제도 자체가 인권침해입니다.

9월에 입대를 앞 둔 아들의 엄마입니다. 관심 등급, 병사 분류에 A,B,C가 있는데 한 부모 가정의 경우 B급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얼마전 임병장 사건 때문에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중범죄자도 아니고 한 부모 가정 아이들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C급도 아니고 B급인지 궁금합니다. 신문 보도와 방송에서 관심사병에 대해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한 부모 가정은 B급이라고 합니다. 군대에서 병사가 B급 관심사병이면 주변에서 다 알아서 접촉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혼한 부모의 자녀는 군대에서 특수부대원이 될 수 없습니다.

아들은 4월에 입대하여 5주간 훈련을 받고 훈련우수자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군 관련자들이 수색대, 특수부대에서 근무해 보라는 권유를 받고 면접을 보았습니다. 서류를 검토하던 군인이 “편모제외”, “편부제외”라며 한부모 가정 자녀들은 선발에서 제외시켰다고 합니다. 아들이 사유를 물으니 대장의 지시라고 했습니다. 이는 부당하니 조사하여 주시고 차별적인 군대 문화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대내 동성애자의 처우문제 심각합니다.

군인입니다. 얼마전 군의관에게 제가 동성애자라는 점을 털어놓았습니다. 동성애자이므로 비롯된 여러가지 문제들이나 성격 등으로 인해 군부대내에서 생활이 곤란한데 최근에는 상담내용까지 유출되어 선후임병들로부터 도저히 군복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동기로부터 수시로 언어적 폭력이나 욕을 조르는 폭행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군의관도 동성애자인 병사가 겪는 고충을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모욕적인 질문들을 하는 것으로 보아 부대내 동성애자에 대한 처우나 매뉴얼 등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교육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중대장이나 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특별히 차별이나 침해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군복무부적격심사청구를 하고 싶으나 지휘관으로부터 정신과적인 문제를 이유로는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부대전출(이미 두차례 옮김)등의 수단도 궁극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므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 아들도 군복무 중 관심사병이었습니다.

아들이 군에 다녀왔고, 관심사병으로 찍혔었습니다. 아들이 군을 다녀와 준 것만도 감사하지만 군복무 시절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인간이하의 취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들의 경우 주변의 왕따나 괴롭힘이 있었고 관심사병이 되니 견디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간부들은 오히려 잘해줬으나 일반병들은 낙인을 찍어 고통이 컸다고 합니다. 아들은 정신이상은 없고 행동이 느릴 뿐인데 두들겨 맞은 것을 보면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잠도 안재우고 때렸다고 합니다. 아들은 그 스트레스로 자다가 오줌까지 썼다고 합니다. 아들은 제대한 지 7~8년이 지났는데도 그 고통스런 기억이 지워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번의 총기사건의 경우도 일어나면 안되는 일이지만 결국 총기사건의 가해자가 평소에 괴롭힘을 당했다고 하니 가슴이 아픕니다.

참고 보도자료

보도자료 2013년 12월 18일

군복무 부적응병사, 인권상황개선 종합대책 필요

선임병사 인권리더십 교육과정 마련, 군건강관리센터 설치 등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군복무 부적응 병사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국방부 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습니다.

△‘선임병사 인권리더십 교육과정’을 마련할 것, △‘군건강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할 것,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확대배치 및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간부의 군복무 부적응 병사 관리 및 상담 역량을 제고할 것, △현역복무 부적합자 조기감별 방안을 강화할 것, △군복무 부적응 병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것, △군복무 부적응 유발 요인 제거를 위한 병영문화를 개선할 것

○ 이번 권고는 국가인권위원회가 2012년 실시한 ‘군복무 부적응자 인권상황 및 관리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및 군 사고 통계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입니다.



아들이 군복무 중 폭행을 당했습니다

상담 요지

아들이 2008년 공수부대에 입대했다가 제대했습니다. 제대 직후에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1년 넘게 공황장애 약을 먹고 있는 것을 제가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복무중에 선임에게 폭행당하여 고막손상도 있었다합니다. 아들이 입대한 지 1년 만에 선임이 술이 취해 아들의 머리를 심하게 때리고 발로 밟는 등의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일로 고막이 파열되었으나 2주간 말을 못하고 있다가 군의무관에게 말했다 합니다. 군의무관이 주선하여 부대 앞의 이비인후과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50% 기능손상 진단을 받았고 고막 수술에 대해 군에서 수술비용 500만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들은 지금 공황장애로 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복학도 못하고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행한 선임을 고소했습니다. 현재 검찰에서 조사중입니다. 아들과 2주간 숙식과 훈련을 받은 동기가 폭행피해에 대해 증언 했으나 검찰에서는 자꾸 2주간 아들이 받은 훈련때문에 고막파열이 온 것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보훈청에도 국가유공자신청한지 3개월이 지났으나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검찰수사 경과를 보아 인권위 진정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답변 요지

군복무중 선임에게 폭행을 당했다면 인권위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군복무중 선임에게 폭행을 당했다면 인권위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사안은 진정한 원인사실이 발생한지 1년을 초과했고 동일 사안에 대해 검찰수사가 진행중이므로 인권위에서 도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폭행피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미덥지 않고 보훈청의 국가유공자 승인도 불투명한 상태라 인권위의 판단을 원한다면 진정하여 인권위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사 사례

군대 선임에게 폭행 당했습니다.

몇 달 전에 군선임들에게 아들이 폭행을 당했습니다. 신장에 부상을 입어서 몇 달 동안 치료를 받았습니다. 군대 병원이 신뢰가 가지 않아서 한달동안 사립병원에 치료를 받다가 다시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대에서는 군대병원이 아닌 병원의 치료비는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군대에서는 사건을 축소하기 위해서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등을 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혹시나 군대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이 우려가 되어 고소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대 선임의 욕설에 대응했다가 가중처벌 받았습니다.

아들이 군복무중입니다. 동기나 선임들이 아들을 미워합니다. 아들이 업무 처리를 빨리 습득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선임이 심하게 욕을 해서 아들이 맞대응을 했다가 휴가를 박탈 당하여 휴가도 못나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아들이 계단을 내려오는데 선임이 밀어붙이면서 욕을 하여 또 싸움이 났습니다. 아들이 너무 억울해서 숙소에 와서 선임에게 얘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잘못된 게 있으면 사과를 하고 화해를 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선임을 불러냈다고 미운털이 박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가중처벌을 받았으며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영창에 갈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보도자료

보도자료 2012년 11월 13일

인권위, 국방부에 군 인권법 제정 등 병영문화 개선 위한 정책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2. 11. 5. 인권친화적 병영문화를 만들기 위하여는 정책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국방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했습니다.

1. '군인권법' 제정을 추진할 것
2. 구타·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실효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
3. 군 인권교육을 '통제과목'으로 지정하는 등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4. 소원수리 제도 관련 법규 등을 정비 시행할 것
5. 병영생활 운영에 장병의 직접참여 제도를 확대하고, 초급간부들의 인권상황을 개선할 것
6. 부대진단시 외부전문가 참여를 보장할 것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병대 총기사망, 군 내 자살, 성추행, 군복무 부적응자 문제 등 병영 내 인권상황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사회적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진정 접수를 통한 개별적인 권리구제 외에 종합적인 정책·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 2월부터 각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군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기획단’을 구성한 후, 4차례 회의와 공개토론회를 거치면서, 군 인권 실태조사결과와 진정 및 권고사례, 선진 외국군법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동안 우리 군이 병영문화의 근본적 변화를 도모하는 접근이 부족했고, 각급 지휘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타와 가혹행위가 여전히 잔존하고 있고, 언어폭력 등 가혹행위와 성폭력 문제도 발생하고 있으며, 군인권법 제정 등 제도 개선 방안이 계속 유예되고 있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례 13



아들이 선임들의 인격모독과 질타로 자살했습니다

상담 요지

아들이 하사관으로 군에서 근무하던 중 자살했습니다. 지금까지 군 조사를 기다렸고 최근 결과가 나왔는데 자살 이유가 선임들의 질타와 인격적 모독, 업무적 스트레스 등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전공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여자 문제 등도 자살사유 중의 하나라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아들은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에 약한 아이도 아닙니다. 아들은 평소에도 부모인 우리에게 군에 대한 스트레스나 얘기를 많이 하지는 않아서 군에서 이렇게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줄 몰랐습니다. 아들이 가끔씩 업무가 많다는 얘기는 했으며 아들이 쓴 글 중에는 “나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인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제 와 생각해 보니 아들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 아들에게 가혹행위를 하거나 집단 괴롭힘을 했다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답변 요지

아들을 잃은 부모에게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겠지만..

군에서의 가혹행위, 집단괴롭힘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군의 과도한 업무 및 선임들의 인격모독과 질타 등으로 인한 자해사망 피해에 대해 인권위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군의 가혹행위 조사요청과 군에 전공사상 재심사 요청 그리고 아들의 자해사망 조사 내용을 그 부모에게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알권리 침해 여부에 대해서도 인권위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유사 사례

아들이 군대에서 가혹행위를 당하여 자살했습니다.

아들은 상근 예비역이었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9월에 자대배치를 받았는데 10월에 온천의 남자화장실에 자살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헌병수사대에서 수사한 결과 3명 정도가 아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수사는 종결되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정상의 불화와 성격상의 문제로 자살했다는 결과가 나올까봐 걱정입니다.

아들이 군에서 사망했습니다.

아들이 군에서 사망했는데 군의 수사가 형평성이 맞지 않고 의문점이 많습니다. 추가조사를 요청해도 같은 조사관이 조사를 합니다. 부검까지 했으나 타박상 등에 대해 군에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추측과 가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결국 개인사에 의한 일반사망으로 결정 났습니다. 부검에서 정강이나 손 등에 찰과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입대이후 사망까지 저와 통화하면서 제가인지한 아들의 정신적인 압박이나 모욕적인 상황 등을 설명했으나 다 무시되었습니다. 아들이 사촌형과 카톡으로 주고받은 내용 중에 상관의 욕설 등이 2페이지 정도가 있습니다. 현재 국방부에 2차 심의 요청한 상태입니다. 국방부의 조사도 믿을 수가 없으니 인권위에서 조사해주기 바랍니다.

군대에서 목을 맨 아들의 시신을 몇 시간 동안 방치했습니다.

지난 5월 아들이 성당 지하에서 목을 매고 자살 했습니다. 군에서 아이의 시신을 저녁 10시에 찾았고 부모는 새벽 1시 3분 경 도착했는데 그럴 애가 아니라고, 얼굴을 확인하자고 해도 계속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큰 아들을 불러오라고 했는데 큰 아들이 새벽 3, 4시 경에 도착해서 시신을 확인할 때까지 아이의 시신을 그대로 목을 매단 채 방치해놓고 있었습니다. 군의관이 없어서 그랬는지, 사람이 죽었으면 자살이건, 타살이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도 없었고 새벽 5시까지 사망진단서가 안 나왔습니다. 죽은 애도 인권이 있는데 군에서 죽은 아이를 그렇게까지 걸어놨다는 것이 부모로서 마음이 찢어집니다.

군에서는 아들이 자살했다는데 타살인 것 같습니다.

아들은 1990년 초소근무중 총기사망 했습니다. 아들의 사인을 믿을 수 없어 군의문사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민원을 제기하여 육본으로부터 순직결정을 받아냈고, 현충원 안장을 위한 개장 및 화장 후 순직안장 했습니다. 아들은 최초 “부적응에 의한 총기자살”로 처리되었었으며,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재조사결과 “폭행 및 가혹행위에 의한 총기자살”로 확인되어 순직처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묘를 개장할 때 법의학자가 입회를 했었는데, 이때 아들의 상태를 확인해보니 우측손목이 부러진 상태였고, 두개골이 산산조각이 난 상태였습니다. 이를 보고 저는 총기자살이 아닌 “타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아들의 사망원인을 “폭행 및 가혹행위에 의한 총기자살”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한 “타살”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어 진상을 규명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아들은 사망한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꿈에 나타납니다. 아들은 마치 생시처럼 나타나 “나는 내가 안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 결정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2014. 4. 10.

군대 내 폭행 및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 등 인권침해

진정요지

군복무 중 발생한 피해자의 자살은 전입 이후 수차례에 걸쳐 발생한 폭행 및 가혹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원한다.

판단요지

피해자는 사망사건이 발생하기까지 약 1개월의 기간 동안 선임병들로부터 정강이나 목 부위 등에 폭행을 당하고, 암기를 강요받고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폭언 및 인격모욕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데, 부대 지휘관 및 간부들은 피해자가 막 전입은 신병임에도 불구하고 사망사건이 발생할 때까지의 기간인 약 1개월 동안 피해자에게 필요한 면담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군 생활 적응에 대한 어려움 및 내무 부조리에 대한 심적 부담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으며, 군 생활 적응검사에서 '자살의 위험'이 나타나는 등 피해자의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음을 확인하였음에도 즉각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는 해당 부대의병력 관리에 있어 전반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운동을 하다 손가락이 다쳤는데, 치료미흡으로 절단했습니다

상담 요지

군에서 운동을 하다가 다쳐서 오른쪽 검지손가락(두 번째 손가락)이 부분절단 되었습니다. 살은 좀 남아 있지만 손가락이 거의 잘린 상태였습니다. 군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군병원에서 할 수 있다고 다른 병원에 안가도 된다고 했습니다. 봉합만 했습니다. 그런데 손가락이 아래로 썩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수차례 괜찮은 것인지를 문의하였고 군병원 의사가 괜찮다고 했습니다. 퇴원해도 될 것 같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런데 죽은 피부가 계속 확대되어 가자 그제야 의사는 죽은 피부를 긁어내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본인은 죽은 피부를 긁어내는 수술동의서에 싸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수술에서 깨어난 후 본인을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술에서 깨고 나서야 손가락 끝부분이 5mm정도 잘라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술하기 전 손가락 절단 등에 대한 설명을 단 한 차례도 들은 바 없으며 군병원에서 한 피부이식도 실패하여 민간병원에서 재수술 했습니다. 앞으로도 2번 정도의 수술을 더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군병원에서 제대로 된 치료와 설명도 해주지 않고 3개월간 방치하여 상해·장애를 입게 한 것입니다.

답변 요지

군병원의 의료조치 미흡으로 장애를 갖게 되셨군요

군병원에서 제대로 된 치료와 설명도 해주지 않고 3개월간 방치하여 상해·장애를 입게 한 것에 대해 인권위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군병원측에서 수술전 현 상태와 수술시 위험 부담 등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해주지 않은 것이 알권리 침해인지에 대해서도 인권위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유사 사례

군에서 외부진료를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아들이 군에서 훈련 중 다리가 골절이 되어 외부병원에서 심을 박는 수술을 받고 지금 최전방에서 근무 중입니다. 그런데 겨울이 되니 자꾸 다리가 시리고 아프다고 합니다. 휴가 나왔을 때 수술한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 다리의 심을 빼는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대대에 수술을 받아야한다고 했으나 군의관은 규정이 어떻고 순서가 어떻고 하면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부병원의 검사결과지와 의사 소견서를 부대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말에 의하면 먼저 군병원에서 외부병원의 결과지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야 하는데 군의관이 차일피일 미룬다고 합니다. 군인은 법적으로 병가10일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의무대 군의관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들이 심을 빼고 치료를 잘 받아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군대에서 아들의 척추가 내려앉도록 아무런 의료조치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군에 간지 5개월 되었습니다. 군에서 훈련을 받다가 4, 5번 척추가 내려앉아 수술을 받았습니다. 군에 가기 전에는 허리가 멀쩡했던 아이입니다. 아들이 훈련 중 계속 아프다고 말했는데도 군에서는 아들을 바로 병원에 보내어 치료해 주지 않았습니다. 진통제 하나만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아파서 잠도 잘 못자자 아들이 집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을 데리고 나와 척추 진료로 유명한 병원에 가서 척추가 내려앉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의가사제대 시키고 싶으나 군에서는 4급 판정을 받았기에 아직은 의가사제대가 불가능한 요건이라고 했습니다. 군에 항의하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하니 군은 아들의 상태를 조금 더 지켜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4개월이란 시간이 흘렀고 아들은 4개월째 군병원에 누워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군 의료기관을 믿을 수 없어 좋은 병원으로 데리고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 병가를 많이 내주든지 의가사제대를 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군이 외부병원 수술환자에 대해서는 재활훈련을 거부합니다.

아들이 현역 복무중입니다. 군화신고 훈련하는데 발이 너무 아프다고하여 평발수술을 했습니다. 군병원에 갔는데 의료기술이 안된다고 밖에 나가 수술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수술하고 깁스를 하고 군에 복귀했습니다. 대학병원 의사는 깁스를 풀면 내부에 박은 뼈 조각 때문에 6개월간은 재활훈련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군대에서는 외부병원에서 수술했기 때문에 군병원에서 재활훈련을 시켜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술한 병원에서 재활훈련을 하겠다고 하니 그것도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목발 짚고 군에 있으라고 합니다.

보도자료 2013년 12월 23일

뇌종양 사망사병에게 초기에 두통약 처방, 군부대 지휘관 의료조치 미흡 책임 물어 경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헌병철)는 군복무 중 뇌종양이 발병하였음에도 적절한의료 조치를 받지 못하여 결국 사망하였다는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군부대 내의 적절한 의료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 이에 육군 ○ 군단장과 ○○ 사단장에게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지휘관들을 경고와주의 조치하고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군대 내 환자 발생 시 군의관의 신속한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각각 권고 하였습니다.
- 시민단체인 군 인권센터는 “군복무 중 혹한기 훈련 직후 두통이 심하여 외부진료를 요청하였음에도 부대장 등이 이를 거부하고 타 부대에 경계군무파견을 보내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사망했다”며 2013. 6. 18.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 이에 대해 부대장 등은 피해자가 두통 증세를 호소한 직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의무대·군병원 및 민간병원에서의 진료를 받도록 조치하였으며, 피해자 가족의 요청에 따라 사전에 계획된 휴가를 앞당겨 보내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2012. 1. 31. 입대한 피해자가 2013. 6. 17. 사망에 이른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 2013. 1.14.: 피해자의 증상에 대해 최초 보고
 - － 2013. 1.15.: 동계 혹한기 훈련(2013. 1. 7. ~ 1. 11.) 이후 두통 증상이 지속되어 이날 저녁 의무실에 갔으나 부대 군의관이 퇴근하여 당직 군의관에게 유선으로 두통약 처방받아 복용
 - － 2013. 1.16.: 두통 증상 나아지지 않아 정신교육 및 전투 체육시간 열외
 - － 2013. 1.17.: 구토 증상까지 나타나 이날 저녁 의무실에 갔으나 군의관 부재하여 타 부대 군의관에게 유선으로 두통약과 구토완화제 처방
 - － 2013. 1.18.: 두통 및 구토 증세가 완화되지 않자 이날 저녁 간부결산회의(중대 간부들의 일일 회의)에서 피해자를 민간병원에 보내기로 결정
 - － 2013. 1.19: 민간병원 진단결과, 장염이 의심되며 2~3일 상태가 지속되면 뇌수막염을 의심해야 한다는 소견과 약 처방 받고 부대 복귀
 - － 2013. 1.20.: 타 부대 경계군무 파견
 - － 2013. 1.23.: 피해자 국군○○병원으로 후송. 두통약 처방받고 복귀
 - － 2013. 1.25.: 휴가 조치

- 2013. 1.26.: 민간병원 검사 결과, 뇌종양 진단
- 2013. 6.17.: 사망(직접 사인: 뇌부종에 의한 뇌간마비, 직접 사인의 원인: 뇌수막염, 악성뇌종양)
- 위와 같은 과정에서 먼저, 피해자 소속 소대장은 피해자가 2013. 1. 14. 처음 으로 증상을 호소한 날로부터 1. 23. 국군○○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전까지 며칠 간 그 증상이 나아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그러나 소대장은 피해자가 부대 군의관으로부터 야간시간에 유선으로 2회 진료를 받은 것을 제외하고 대면진료를 받도록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 또한 피해자 소속 중대장도 피해자가 증상을 호소하기 시작한 날부터 며칠 간 증상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군의관에게 제대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증상이 시작된 지 8일 후에야 피해자의 상태를 대대장에게 보고하였습니다.
- 특히 위 중대장은 피해자가 2013. 1. 19. 민간병원에서 상태가 지속되면 뇌수막염을 의심해야 한다는 소견을 받았음에도 다음 날 타 부대에 경계근무 파견을 보냈고, 이에 앞서 1. 17에는 며칠 간 몸 상태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에 대하여 청소작업을 지시하는가 하면, 1. 26. 피해자가 뇌종양진단을 받은 이후에야 피해자에 대한 면담 및 관찰일지를 일괄작성 하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유사 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진료체계 개선 권고

- 피해자의 소속부대 대대장은 소대장과 중대장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증상을 보고 받은 다음날인 1. 23. 국군○○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였고, 이후 민간병원 진료를 위해 피해자가 일찍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국가인권위는 그러나, 대대장이 피해자의 의료조치 미흡과 관련하여 소대장과 중대장에 대한 관리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피해자의 지휘관들이 부대 내에서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서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피해자의건강권과 의료접근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소속 지휘관들에게 경고·주의조치와 함께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국가인권위는 또한 피해자가 애초 군대 내에서 진료를 제대로 하지 않아 뇌종양인지 여부를 진단하지 못하였다는 부분은 환자에 대한 진료방법에 대한고도의 의학적인 전문영역에 속하는 것이어서 주의의무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이번 사건이 군부대 내 진료 소홀로 인한 중대사고인 점에 비춰 향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방부 장관에게 군대 내 환자 발생 시 군의관의 신속한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여군입니다. 군에서 성희롱발언을 들었습니다

상담 요지

2011년, 부대에 전입 온 지 한 달이 되지 않아 주임원사에게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주임원가 저의 차를 타고 가면서 “한 달에 남편하고 몇 번 하나?, 남녀가 옷벗고 하는 행위가 얼마나 경이로운 것인지 아는가?. 여자가 싫다고 해도 강제로 하면 좋아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원사는 평소에도 아침에 아내가 싫다고 하는데 했더니 좋아했다는 등의 여성비하적이고 성희롱적인 말을 했습니다. 성희롱으로 문제제기를 하여 부대 감찰조사와 법무조사를 받았습니다. 상관이 저를 불러서는 가해자가 처벌을 받으면 저도 처벌을 받는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를 보직이동 시켜주겠다고 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단기근무자로 장기근무자 보직을 받기 위해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까 봐 계속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가해자에게 형식적인 사과를 받고는 법무감사를 받을 때 성적모욕감을 느꼈다는 처음의 주장을 번복하고 오해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지금까지 부대에서 아무 문제없이 근무하고 있고, 저는 장기복무 공석이 나왔는데도 부대에서 태도불량, 성실성을 문제 삼아 부적격자로 탈락시켰습니다.

답변 요지

상관의 성희롱과 군내내 조치미흡으로 상처를 받으셨군요

군내내의 성희롱에 대한 조치미흡과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에 대해 인권위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지 1년이 지났으며, 부대의 자체 조사시 내담자가 주장을 번복한 점으로 인해 인권위에서 도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인사상 불이익까지 당한 상태로 더 이상 우려할 것도 없다면 성희롱 피해에 대해 좀더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의미로 인권위에 진정하여 판단을 받는 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사 사례

군 선임병이 아들을 성폭행 했습니다.

아들이 선임병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걸 알게 된 게 올해 2월입니다. 훈련을 받고 자대배치를 받았는데 선임이 부대 청소를 하자고 해서 청소를 하는 중 아들의 성기를 만지는 등의 성폭행을 했습니다. 아들이 중대장에게 이야기를 했으나 중대장이 은폐하였고 이에 아들은 대대장에게 직접 이 사건을 얘기했으나 그 사건을 무마시키려고 신병 1일 휴가를 입대한지 100일이 안 지난 시점에서 일찍 쫓았습니다. 아들은 휴가를 나왔는데 침대를 떠나지 않고 잠만 자다 갔습니다. 우리 아들은 최근 다른 부대로 전출시키고 가해자는 영창에 갇혀 다른 데로 갔다가 다시 복귀했다고 합니다. 아들은 새 부대에서도 적응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인권위 진정보다는 제대 후 사회의 모든 법과 민/형사상의 절차로 대응하려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접적인 성희롱도 성희롱이 성립되나요?

군부대 상담관입니다. 남성상사가 어떤 여하사가 일을 못하니 여하사가 없는 다른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여하사의 잠지를 찢어버린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 후 여하사에게 전달이 되어 여하사가 부대에 성희롱으로 접수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성희롱이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 보도자료

보도자료 2014년 10월 14일

육군 제17사단장 여군 성추행 사건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

군내 성희롱·성추행 재발방지 대책 촉구 및 군 사법체계 재검토 시급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육군 제17사단장의 여군 성추행 사건을 비롯해 잇달아 발생하는 군(軍)내 성희롱·성추행 사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인권위는 2012년 '여군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2013년 10월 31일 국방부장관에게 '여군인권증진을 위한 정책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성희롱·성폭력 예방조치를 강화하겠다고 회신하는 등 자체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군대 내 성희롱·성추행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육군 17사단장의 성추행 사건은 타 부대에서 성추행을 당한 피해 여군에 대한 2차 가해로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 하였습니다.

군대 내 성희롱·성추행 사건이 근절되기 보다는 오히려 매년 증가하였고, 그에 대한 처벌도 엄정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이는 군대조직의 폐쇄성, 문제제기에 대한 불이익 우려, 고충처리시스템의 한계, 피해자 보호조치의 미흡, 군 지도부의 인권의식 부족, 군 사법체계의 특수성 및 군대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관대한 감경 판결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군대 내 성희롱·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군 조직 차원의 피해자 치유 프로그램을 마련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향후 군대 내 성희롱·성추행 재발방지대책의 이행,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의 마련, 성희롱·성추행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 여부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며, 군 사법체계 개편방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군대 내 성희롱 예방 및 군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례 16



부당하게 징계를 받았습니다

상담 요지

아들이 작년 10월에 입대했습니다. 12월에 자대 배치를 받은 후, 2개월 지나 군대 내부에서 소지하면 안 되는 소지품인 휴대폰과 카카오톡 사용 내역이 발각되었습니다. 징계위에 회부되었고 얼마 전 입창되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징계 절차가 간부들이 투표를 해서 정한다고 합니다. 양형기준도 없이 간부들의 투표로 정해도 되는지 의문입니다. 양형 기준도 없이 영창에 보낸 것에 대해 아들이 항소를 하니 항소를 하면 부대장이랑 싸우는 거라며 항소를 철회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항소를 못했습니다. 이권 지위를 이용한 협박입니다. 징계는 2주 전에 받았고 월요일 입창되었습니다. 인권위에 진정하면 원상복구가 가능한 지 괜히 잘못 건드려서 더 고통을 받을 수도 있지 않는지 걱정입니다. 아들은 똥 밟은 셈 치고 영창을 가겠다고 합니다.

답변 요지

군의 징계절차 위반에 대해 인권위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군에서 병사에 대한 징계를 내림에 있어서 양형 기준 없이 임의적으로 징계를 내리는 등 적법절차를 위반한 경우 인권위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징계 대상자의 권리인 항소를 철회할 것을 강요한 것에 대해서도 인권위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징계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면 시정 및 재발방지 권고를 내릴 수 있습니다.

유사 사례

군복무부적응 군인에게 너무 과한 처벌을 했습니다.

아들이 적응력이 없어 상관에게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무전기가 잘 안되어 욕을 한 것을 부대장이 보고 버릇없다고 영창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군에서 폭행 관련하여 재판을 받고 징역2년 집행유예3년을 받았습니다. 대대에 항소했는데 그린 캠프로 보내졌습니다. 그린캠프 생활로 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처음에 집행유예를 받고 항소하지 않고 받아들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대에서 또 심사를 하여 휴가 제한 등의 조치를 한다합니다. 저는 아들을 입원시켜서 치료를 받게 할 생각이었는데 휴가 제한되어 그것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야할 정도의 정신상태를 가진 아들을 또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니 기가 막힙니다.

군에서 이유 없는 연대책임을 물어 전체 외출·외박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군대에서 연대책임을 물어 전체적으로 외박외출을 통제당하고 있습니다. 한 군인이 술에 취해 다른 사람의 가방을 들고 가버린 사고를 쳤는데 이로 인해 연대 전체에 외박·외출 금지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이는 법적으로도 불법입니다. 실명 진정은 부담되니 제3자 진정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고 진정접수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참고 보도자료

보도자료 2014년 2월 5일

군 징계 영창제도 및 수용자 규율관행 개선해야

- 형사처벌과 징계입창 구분을 위한 통합된 징계양정기준 마련 등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군 징계 영창제도의 개선과 수용자의 인권보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각 부대별 징계권자의 자의적인 영창처분을 방지하기 위한 국방부 차원의 통합적인 징계양정규정 마련,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 제도 개선, △거실 내 대화를 금지하거나 정좌자세를 강요하는 관행 등 수용자 처우와 환경을 개선할 것 등을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하였습니다.
- 이번 권고는 행정처벌인 군 징계입창에 대해 구금시설에 수용하는 것이 적법절차와 영창주의라는 헌법원칙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2006년 「군인사법」 개정을 통해 영창처분의 요건과 절차를 개선하였음에도 제도적 미비점이 있다는 진정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을 고려해 국방부 등 군 관계자, 관련 시민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사례 17



개인부채현황 조사를 한다며 금융정보조회동의서 사인을 강요했습니다

상담 요지

직업군인입니다. 군에서 갑자기 개인부채현황을 조사한다며 강압적으로 금융 정보 조회동의서에 사인을 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인권침해인지 알고 싶습니다. 인권위에 진정하면 비밀 보장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신분노출이 부담스럽습니다.

답변 요지

군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은 인권위 조사대상에 해당합니다.

군의 금융정보 조회동의서 사인강요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인지 인권위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조사 중에는 최대한 진정인의 신분보장을 위해 노력하나 완벽한 비밀보장은 어려울 수도 있으니 제3자 진정 등의 방안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유사사안에 대한 인권위의 기존의 권고결정문을 참고하여 군 내부적으로 협의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입니다.

유사 사례

군 간부에 의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직업군인입니다. 22시가 되면, 독신간부들은 사생활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숙소에 있는지, 숙소가 아니라면 현재의 위치는 어디인지 점검 당합니다. 왜 성인이 상급자에게 자신의 위치를 보고해야하며 자신이 숙소에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간섭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약속이 있어 22시 정도에 복귀 한 적이 있는데 상급자들이 21시경부터 “왜 나갔느냐”, “뭐 하러 나갔느냐”,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는 등 여러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22시에 숙소에 있지 않는 것이 상급자들에게 혼 날 일인지 의문입니다. 상급자들은 귀가가 늦으면 사고를 치기 때문에 일찍 숙소에 들어와야 한다고 합니다. 항상 번개통신을 통하여 현 위치를 보고합니다. 그것은 육군 규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킵니다. 그러나 22시에 숙소에 위치해서 상급자의 방문에 응하고, 보고 해야 하는 것은 육군 규정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각급 부대에서 나라를 지키고 충성하는 여러 간부들의 사기를 북돋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직업군인은 자기 맘대로 차도 못 삽니다.

직업군인입니다. 제가 상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차를 구입했습니다. 차를 타고 다니다가 상관에게 차량구매사실을 보고하고 차를 타고 다녀도 될지 물으니 안 된다고 하며 차 키를 압수했습니다. 사단장이 직업군인이 된지 만 4년 이상은 차를 구매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4년이 넘어서 차를 산 건데 압수당했습니다.

참고 결정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2013. 7. 5.

군대 부사관에 대한 과도한 부채현황 조사 등

진정요지

제○○○○○교육단 주임원사인 피진정인은 2012. 전임 주임원사에 이어 소속 부대 부사관들에 대하여 과도한 부채현황 조사를 시행하였고, 이에 진정인 등 소속 부대 부사관들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판단요지

피진정인이 부대의 관행에 따라 이 사건 부채현황 조사를 실시한 점과 개인 금융정보 미제출자에 대한 별도의 불이익 조치가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진정인의 개별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이 사건 부채현황 조사가 육군 제○군사령부 주임원사가 예하 부대 주임원사들에게 보낸 이메일 지시로부터 비롯된 것을 고려하여 육군 제○군사령관에게 이 사건 사례를 예하 부대에 전파할 것과 소속 부사관에 대한 부채현황 조사와 관련하여 잘못된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03 국가기관·법원·지방자치단체

- 사례 18 보호관찰관이 반말에 욕설까지 했습니다
- 사례 19 판결문에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정보가 그대로 노출돼 두렵습니다
- 사례 20 구청에서 정보공개를 거부했습니다
- 사례 21 재혼가족을 고려하지 않는 가족관계등록부를 고쳐주세요
- 사례 22 외국인인데, 한국에서 출생한 자녀들에게 강제출국 명령이 났습니다
- 사례 23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한다고 무단으로 가택수색을 했습니다
- 사례 24 엄마가 한국인과 결혼했는데 몽골에 13세 딸이 혼자 있습니다
- 사례 25 구청에서 공무원의 초과근로확인을 위해 지문인식기를 설치했습니다
- 사례 26 학생들 출결을 확인하기 위해 지문인식기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 사례 27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로 보육교사의 근무를 감시합니다

사례 18



보호관찰관이 반말에 욕설까지 했습니다

상담 요지

보호관찰중입니다. 저의 보호관찰관이 저에게 막말을 했습니다. “일도 하지 말고 검정고시만 쳐라.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보호관찰소에 와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개새끼들은 다 잡아 넣어야 돼”라고 욕을 했습니다. 남에게 일도 하지 말라고 한 것이나 비하발언에 욕설까지 한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요지

보호관찰관의 막말에 대해 인권위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 공무원의 반말, 욕설 등으로 인격권이 침해되었다면 인권위에 진정하여 판단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인권위 조사결과 인권침해로 판단될 경우, 인권침해 시정 및 재발방지, 인권 교육 등의 권고가 이루어집니다.

유사 사례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 외국인 아내에게 대한민국이 싫으면 너희 나라로 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국제결혼했습니다. 어제 출근을 하려고 하는데 아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내는 얼마전 비자연장 신청을 하려고 했다가 장모님이 아프셔서 비자 연장을 안하고 그냥 출국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출국하기 위해 공항에 갔던 아내가 전화를 한 것입니다. 공항에서 아내에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비자연장 신청을 해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티켓을 다시 끊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출입국관리사무소직원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 “여기는 대한민국인데, 살기 싫으면 나가 니네 나라로 가버려”라고 했습니다.

세무서 직원의 말로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체납된 세금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자하는데 세금체납으로 법인 등록이 되지 않아 일부라도 납부하기 위해 세무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체납세금 중 일부를 납부하고 5월 중에 돈이 들어오면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세무서의 직원이 “돈 500만원도 없으면서 무슨 사업을 하나?”며 짜증스럽게 말해서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판사의 법정 언행에 의한 인격권 침해 등

진정요지

○○지방법원 형사1부 부장판사인 피진정인이 2012. 10. 17.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진정인에 대해 1심 재판을 진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를 하였다.
가. 피진정인은 재판 중 진정인이 피진정보다 나이가 많음에도 일상적으로 반말을 하고, 특히 “○○○, 재판이 애들 장난인줄 알아? 질문을 하란 말이야, 질문을 하면 되지 왜 설명을 하는 거야”, “○○○지금 뭐 하는거야? 지금 녹음한 거 아냐”, “필요 없어, 됐어” 등 사회상규를 위반하여 막말을 하며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판단요지

피진정인이 재판장으로서 법정지휘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장난치냐’라는 말은 어른이 나이 어린 아이들에게 나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는 점, 피진정인보다 나이가 많은 진정인이 피진정인으로부터 수차례의 반말과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발언으로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면 이는 진정인의 명예감정을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나이가 판사인 피진정인의 법정지휘권이 공복의 위치에 있는 공무원에게 주어진 권한인 이상 이를 국민에 대해 행사함에 있어서는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인간의존엄과 가치를 비롯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행사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번 사건 피진정인의 언행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사례 19



판결문에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정보가 그대로 노출돼 두렵습니다

상담 요지

1년 전에 모르는 사람에게 성폭력과 절도를 당했습니다. 가해자가 저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고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핸드폰을 절취해갔습니다.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을 모두 진행하였고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가해자가 제게는 강간과 절도, 다른 피해자들에게는 절도를 행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에게는 용변을 보는 사이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지갑과 가방 등을 훔쳐갔다는 내용이 판결문에 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 대한 범행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무서워서 강간죄와 절도죄 고소를 취하였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을 받아보니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전체와 상세주소가 모두 나와 있었습니다. 가해자도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판결문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 놀랐습니다. 다른 피해자에 대한 범행 사실도 제가 받은 판결문에 다 적혀 있었으니 저의 피해내용과 개인정보도 다른 피해자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답변 요지

법원판결문에 병합사건 당사자 모두의 정보가 기록되어 있다면 인권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법원 판결문에 성폭력 피해자의 상세한 개인정보가 기록되어 가해자에게 제공되고 병합사건의 다른 피해자의 피해내용과 신상정보가 제공되는 것은 개인정보유출의 소지가 있습니다. 진정하여 인권위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유사 사례

재판부의 모든 의료기록 요청으로 생식기 사진까지 노출되었습니다.

뽕소니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제가 가해차량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에 보상을 청구하자 보험사가 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에서 보험사가 기왕증 여부를 확인한다고 병원기록을 요구하였고, 재판부가 건강보험공단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저의 모든 진료기록이 재판부와 보험사에 제공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병원에서 무릎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병원에서 제가 비노기과 치료받은 것까지 다 포함되어 저의 생식기 등의 사진을 보험사에서 다 보게 되었습니다. 재판부가 관련 기록만 요청하지 않고 모든 의료기록을 요청해서 발생한 일입니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구속중인 가해자가 합의요청 편지를 보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입니다.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피해자는 이전에 살던 집에 계속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속 중인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소와 이름을 어떻게 알았는지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용은 합의를 해달라는 것이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협박으로 느껴집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정보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정보의 공개가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병원 건강검진상품의 에이즈검사는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로 이어집니다.

제가 다니는 직장은 사원복지 차원에서 매해 종합병원의 건강검진상품을 직원에게 제공합니다. 그런데 종합병원의 검사항목 중에 에이즈검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합병원의 건강검진 결과가 회사에 통보되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받으면 직원 중에 누가 에이즈환자인지 회사에서 알게 됩니다. 병원에서는 원치 않으면 에이즈검사는 안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에이즈 검사를 하지 않은 직원의 명단이 회사에 통보되므로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에이즈환자에 대한 과도한 정보노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병원의 건강검진 항목에서 에이즈검사를 삭제해야 합니다. 인권위에서 에이즈환자에 대한 포괄적인 차별상황을 조사하고 보건복지부나 병원 협회에 권고해주시 바랍니다.

참고 보도자료

보도자료 2010년 10월 12일

“법원 약식명령서 등에서 개인정보 보호돼야”

- 인권위, 관련 규정 개정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법원행정처장에게 법원이 집행하는 지급명령 및 약식명령 절차에서 소송당사자의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 제9조의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이모(여, 31세)씨와 강모(남, 25세)씨는 각각 “A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서를 송달받았는데,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소송당사자 19명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보험료 등의 내역이 기재되어 있었다”, “B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서를 송달받았는데 피고인과 고소인의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었다. 고소인이 주소지로 찾아올까 걱정된다”며, 2010. 2.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A법원과 B법원은 개별 사건이라 해도 소송 목적이 같은 다수를 공동소송인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이때 개별 당사자를 특정하는 방법으로 민·형사 판결서나 민사상 지급명령, 형사상 약식명령 등에서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병기하고 있는데, 이는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 제9조에 따른 것으로 위법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소송 목적이 같은 다수를 공동소송인으로 표기하는 것은 법원 등의 편의 및 효율성을 위한 측면이 크더라도, 법원이 다수의 소송당사자에게 개개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재판의 진행이나 집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을뿐더러,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노출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는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의 잘못이라기보다는 현행 규정에 의한 것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는 당사자 특정을 위한다 해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생략, 주소의 번지 생략 등의 조치로 개인정보 직접 노출을 막는 방안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 제9조를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 대법원장에게 “형사소송법 상 약식명령을 고지함에 있어 피고인 전체 다수의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구청에서 정보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상담 요지

제가 사는 동네가 재건축이 진행 중입니다. 저는 재건축반대 입장입니다.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생긴지 7년 되었지만 아직 구획지정도 받지 못했습니다. 주민총회를 해서 동의서를 받아야하는데 추진위원회가 가짜 동의서를 만들어 구청에 제출하여 재건축이 통과되었습니다. 지금 반대서명을 받는 중입니다. 재건축반대자들이 재건축결정과정에서 정보공개를 구청에 요청했는데 거부되었습니다.

답변 요지

사지방자치단체에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는 경우 인권위에서 알 권리 침해인지에 대해 조사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결정한 경우 정보공개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에서 정보공개에 대한 결정사실을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 헌법 제21조의 알 권리 침해에 해당합니다. 다만, 재건축 결정 무효 등에 대해서는 재산권과 관련한 사항으로 인권위에서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유사 사례

국민연금 미납을 이유로 사전 안내 없이 통장을 압류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지방세 미납 등으로 통장이 압류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은행 통장이 압류된 적이 몇 번 있는데 압류할 때마다 공단측에서 통보를 해주어야 할 것인데 통보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도 왜 통보를 안해줬냐고 항의하자 등기로 통보했다고 하여 우체국에 알아보니 등기가 온 적이 없었습니다. 공단 직원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압류될 때에는 통보 서류가 등기로 한번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통보 없이 갑자기 모든 통장이 압류되었습니다. 언제까지 돈을 납부하지 않으면 통장이 압류될 것이라는 안내조차 없었던 것은 부당합니다.

참고 결정례

사건관련 결정 2014. 5. 28.

정보공개청구 미통지에 의한 인권침해

진정요지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이 2013. 9. 23. 및 2013. 10. 21.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 2013. 12. 10. 현재까지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아 진정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였다.

판단요지

「헌법」 제21조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이러한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써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는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의 정보공개청구를 두 차례 ○○에 이송하면서 진정인에게 이송사실을 통지하지 않았고, 피진정인 2는 진정인에게 정보공개 결정사실을 두 차례 모두 통지하지 않았다. 이는 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재혼가족을 고려하지 않는 가족관계등록부를 고쳐주세요

상담 요지

저는 재혼한 지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재혼하여 아내도 아이들도 친부모자식과 다름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관계등록부가 말썽입니다. 아내 이름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하면 아이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내도 재혼이라 전 남편의 아이만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저의 아이들의 이름으로 발급을 받아도 생모가 나옵니다. 재혼하여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굳이 아픔을 끌어내서 상처를 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법안이 출생과 가족관계에 대한 모든 것을 나타내는 취지일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의 행정절차와 증명서로는 재혼가정에 또 다른 불행을 초래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답변 요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가족과 실지 가족이 달라 어려움을 겪고 계시군요. 가족관계등록부가 재혼가정이 겪을 수 있는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여 발생한 일로 생각합니다. 인권위는 유사사안에 대해 법무부장관 및 대법원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포함하여 가족관계등록제도 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을 한바 있습니다.

유사 사례

인권위 가족관계등록제도 개선 권고 후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었나요?

인권위 보도자료를 보고 전화했습니다. 인권위가 법무부장관 및 대법원장에게 가족관계등록제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하는데 진행 상황이 어떤지 알고싶습니다. 저는 재혼했습니다. 전남편 아이들이 저에게 올라가 있으며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제가 이혼한 것까지 모두 나옵니다. 이는 취업할 때도 치명적입니다. 방금전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아봤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모든 내용이 다 나옵니다. 저는 버스운전기사입니다. 사회에는 여성 차별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게다가 이혼, 재혼 등의 가족상왕에 의한 차별까지 있으니 힘듭니다.

참고 보도자료

보도자료 2013년 11월 27일

“사생활 자유와 비밀보장 위한 제도개선 필요”

법무부장관 및 대법원장에게 가족관계등록제도 개선 권고,
국회의장에게 가족관계등록법 개정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헌병철)는 현행 가족관계등록제도가 국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 등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여 법무부장관 및 대법원장에게 가족관계등록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 등록법”) 개정할 것 등을 권고하는 한편, 국회의장에게 권고내용의 방향으로 동 법률의 개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권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의 신분증명을 공시하는 경우 관련정보를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시하기 위하여
 - 가. 증명서의 발급에 있어 현행의 일부사항증명 방식을 기본적인 공시방식으로 하여 필요 최소한의 신분정보나 현재의 신분상태만을 담고(‘일반증명’ 방식), 전부사항증명 방식을 예외적인 공시방식으로 하여 과거의 신분변동 등을 포함하도록(‘상세증명’ 방식) 전환하고,
 - 나. 교부 청구권자가 증명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필요한 내용만을 선별하여 교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 다. ‘일반증명’ 방식으로 증명서를 발급하게 되는 경우, ‘일부사항’ 표시를 하지 않도록 하고,
 - 라. ‘상세증명’ 방식으로 증명서를 청구하는 경우 청구권자를 원칙적으로 본인으로 한정할 것,
 2. 불필요한 정보수집 방지와 사용목적 외 사용 금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 가.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 제5항의 불필요한 정보수집과 사용목적 외 사용금지 규정의 위반시 제재 규정을 마련하고,
 - 나. 상세증명 방식의 경우, ‘특정한 목적과 이익이 증명되는 경우가 아니면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는 규정과 이의 위반시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 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의 증명서 요구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에 대하여 실태조사 및 교부 요구에 대한 적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
 3. 입양과 관련하여 친생부모의 익명성 보장과 자녀의 친생부모에 대한 알 권리 보호를 조화시킬 수 있도록, 친생부모 정보의 보존·공시에 있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친생부모기록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
- 국가인권위는 이번 권고가 가족관계등록제도를 개선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며, 향후 가족관계등록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외국인인데, 한국에서 출생한 자녀들에게 강제출국 명령이 났습니다

상담 요지

저와 아내는 외국인입니다. 7살, 5살 아들이 둘 있습니다. 아내는 한국에 들어왔다가 미등록 이주민으로 한번 강제출국된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여권을 다시 만들어서 2000년경 한국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오랜기간 한국에서 살면서 아내와 저는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아내가 사업차 외국에 갔다 오는 길에 위명여권이 적발되어 한국공항에서 바로 강제출국 당했습니다. 저는 미등록이주민이 아니고 아내 명의로 아파트 한 채와 사업체 등이 있습니다. 아이들도 다 한국에서 태어나서 본국어는 알지도 못합니다. 큰 애는 학교에 입학할 때가 내일 학교를 방문하기로 약속도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 비자를 연장하고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했더니 직원이 아이들의 비자연장이 안된다면 출국하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위명여권으로 강제출국을 당했지만 아빠인 저는 미등록이주민도 아니고 합법적으로 발급받은 여권으로 한국에서 살고 있으며 자녀들도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잘 자라고 있는데 아이들을 강제 출국하라니 부당합니다.

답변 요지

아동의 경우 특별한 보호조치가 필요합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아동의 부모가 설사 미등록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아동을 부모와 분리하여 본국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아동권리 협약에 따라 인권위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진정하여 인권위 판단을 받아보십시오.

유사 사례

밀입국한 외국인 친구가 몸이 아파 본국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안된다고 합니다.

중국인 친구 얘기를 하려고합니다. 친구는 밀입국했습니다. 밀입국시킨 사람이 여권을 가져가면서 나중에 돈을 주면 여권을 돌려준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통하여 돈은 주고 여권을 받으려고 했는데 돈받은 사람은 사라지고 여권도 못받았습니다. 몸이 아픈 친구는 이제는 벌금을 물고서라도 출국하고 싶다고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밀입국 시킨 핵심 당사자를 찾아내지 않으면 출국이 안 된다 하고 있습니다. 사기꾼을 찾기 전까지 몸이 아픈 외국인을 출국시켜 주지 않는 것입니다. 친구가 사건의 핵심당사자를 알려줄 때까지는 출국도 못한다고 하니 친구가 매우 힘들어합니다.

폭행피해자인데 미등록외국인이라고 경찰이 출입국에 통보한답니다.

폭력사건 피해자로 미등록외국인이 경찰서에 잡혀갔습니다. 미등록 외국인이라고 폭행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출입국관리소에 통보해서 잡아가게 한답니다.

참고 보도자료

보도자료 2013년 7월 15일

이주아동 퇴거 시 아동인권 보호에 부합하도록 인권위, 적절한 구제조치·재발방지대책 마련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헌병철)는 2013. 6. 24. 법무부장관에게,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피해자인 이주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할 것과, 미등록 이주아동의 경우 부모와 분리되어 단독으로 퇴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입국관리법령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해자 A는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으로, 2011. 10. 2. 경찰에 의해 미등록(불법체류) 외국인으로 판명되어 B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된 후, C외국인보호소에 보호조치 되었다가 4일 만인 같은 달 10. 5. 본국인 몽골로 혼자 퇴거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이 △강제퇴거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는 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심사한다는 설명이나 보증금 액수는 피해자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다는 설명을 하지 않은 점, △고등학교 재학중인 피해자에게 긴요한 교육지속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 관하여 피해자의 담임교사 등 학교 측에 연락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 단독으로 출국 시 몽골에서의 보호 상황에 관한 고려를 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피해자의 출국결정에 이르기까지 아동권리협약 상의 피해자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아동권리협약에 배치되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한다고 무단으로 가택수색을 했습니다

상담 요지

저는 가정주부입니다. 집에 아기 봐주는 외국인 아주머니와 아이만 있었는데 택배가 왔다고 해서 문을 열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택배 기사가 아니라 출입국 관리소에서 외국인 불법 체류자를 찾는다면 집에 들어와 동영상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출입국사무소에 가서 촬영한 동영상을 보여달라고 하니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제가 가사도우미 구하는 광고를 보고 온 것 같습니다. 출입국사무소에 물어보니 자기들은 그런 권한이 있다고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인권위에 전화했습니다.

답변 요지

출입국사무소 직원의 가택수색과 동영상 촬영에 대해 인권위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사무소 직원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집안에 들어와 불법체류자 체포를 이유로 무단으로 가택을 수색하였다면 단속반의 적법절차 위반이 있었는지 인권위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인권위는 미등록이주민을 단속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직원들의 경우에도 형사소송법에 준하는 적법절차를 준수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유사 사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증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합니다. 현장에 청소 일을 하는 외국인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단속을 나왔습니다. 총 23명의 외국인이 여기저기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잡혀갔습니다. 저와 같이 일하는 외국인근로자 8명도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벌금 100만원씩 내고 다음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목동출입국사무소에서 이들의 외국인등록증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 결정례

사건관련 결정 2014. 4. 29.

개인 식당에서 외국인 단속으로 인한 인권침해

진정요지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팀장인 피진정인은 2014. 2. 20. 11:40경 피해자 1이 운영하는 ‘○○건설식당’에 사전 동의 없이 진입하여 식사 중이던 내국인과 외국인에 대하여 신분증을 요구하는 등 영업을 방해하였다.

판단요지

피진정인은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에 대한 단속 시 제3자의 영업장소인 피해자 1의 식당에 단속에 대한 명확한 고지나 사전 동의 없이 들어가 단속행위를 하였고, 이는 위 제 규정을 위반하여 피해자 1에 대하여 「헌법」 제15조 및 제16조가 보장하는 영업의 자유와 주거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엄마가 한국인과 결혼했는데 몽골에 13세 딸이 혼자 있습니다

상담 요지

엄마가 한국인과 결혼해서 몽골에 13세 딸 혼자 있어요. 입국시켜 주세요. 국제결혼한지 6년 되었습니다. 아내는 아직 국적취득은 못한 상태입니다. 결혼 전 부인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딸은 7살 때 한국에 관광비자로 들어온 적 있었고 본국에서 할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딸은 현재 13세입니다. 그러데 할아버지가 사망하여 지금은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한국대사관에 지난해 초청신청을 했으나 보류되었고, 올해도 초청했으나 거부되었습니다. 미성년자가 혼자서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고 있으며 범죄에도 취약합니다. 제가 양육책임을 지겠다고 하는데도 딸의 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아내도 국적취득 신청을 할 것이고 딸을 데려와 공부도 가르칠 생각입니다. 저의 호적에 올리고 양육하고 싶으니 어린 자녀가 함께 살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답변 요지

딸의 입국거부로 화목한 가정이 유지되기 어렵다면 인권위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 미성년자가 홀로 거주하고 있으며 한국에 입국하면 절차를 밟아서 양육을 책임질 내국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사관(법무부)에서 비자발급을 거부하여 가족의 동거가 불가하다면 진정하여 인권위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는 미성년 어린이들은 부모와 함께 살 권리가 있고, 모든 결정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사 사례

외국인등록증 갱신 날짜 조금 넘긴 것은 구금할 일이 아닙니다.

10여년 전 외국인 여성이 한국남성과 결혼했습니다. 그 남편이 오랫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아 아내가 경찰서에 찾아가 남편을 찾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신원조회를 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외국인등록증의 날짜가 며칠 지난 것을 발견하고는 그녀와 자녀를 떼어놓고 외국인보호소에 강제 입소시켜 5일 만에 풀어 주었습니다. 여성은 미등록 이주민도 아니며 외국인등록증 갱신날짜를 조금 넘겼다 해도 벌금만 내면 되는데 아이와 강제로 떼어놓고 구금까지 한 것은 부당합니다.

미등록외국인 아빠가 강제 출국 당하면 5살 아이가 부모 없이 살게 됩니다.

외국인 친구가 불법체류 중인데 술을 먹고 싸워서 강제 퇴거될 상황입니다. 친구에게는 5살 짜리 아이가 있는데, 친구의 부인이 집을 나가 아이와 친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 아빠가 강제 출국되면 아이가 부모 없이 살게 되므로 도움을 바랍니다.



구청에서 공무원의 초과근로확인을 위해 지문인식기를 설치했습니다

상담 요지

구청에서 소속 공무원의 초과근로 확인을 위한 방법으로 지문인식기를 도입하기로 하고, 구청 소속 모든 공무원에 대해 본인 동의도 없이 지문등록을 실시했습니다. 초과근로 확인을 위해 지문인식기를 운영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정보 중에서도 민감한 정보인 지문으로 초과근로를 관리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라고 권고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답변 요지

초과근로 확인을 위한 구청의 지문인식기 운영에 대해 인권위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출퇴근 및 초과근로확인을 위해 내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다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하는 지 인권위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인권위는 출퇴근용 지문인식 강요는, 지문등록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달성하려는 복무관리 편의라는 공익에 비해 제한되는 사익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므로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에 어긋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이를 시행할 법률상의 근거가 미비하여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적절한 대체수단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유사 사례

시립교향악단에서 출퇴근에 정맥인식기를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시립교향악단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체크에 시스템 정맥인식기가 있고, 노조에 가입하고자하니 가입하지 말라는 부당노동행위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교향악단만 지문인식기를 쓰고 있으나 앞으로 확대하겠다고 했고 정맥인식기를 쓸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청 과장과 무수히 많이 얘기를 했지만 시정조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익이나 계약직 등의 직원만 지문인식기로 출퇴근을 확인합니다.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3년 입사 때부터 지문인식기로 출퇴근체크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장이나 팀장 등은 지문인식기를 찍지 않고 일부 직원들만 지문인식기

로 출퇴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 계약직, 별정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만 지문인식기로 출퇴근을 관리합니다. 지문인식을 하지 않으면 출석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대학총장이 교수들의 출퇴근을 지문인식기로 확인합니다.

대학교에서 신입 총장이 교수들의 근태, 복무와 관련하여 강압적 지시와 감시감독을 합니다. 출퇴근 체크는 교수 연구실 컴퓨터 로그인을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퇴근 시 로비에 비치된 출근부에 직접 서명 날인하는 방법을 일주일간 실시한 뒤 차후에는 지문을 등록받아 지문인식기를 비치하여 출퇴근을 체크한다고 합니다. 또한 총장의 운전기사가 교수연구실을 매일 불시에 방문하여 근무확인을 하며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비용절감 명목으로 교수 개인 연구실을 통합하고 통합교수연구실에 대형유리창을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참고 결정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2012. 6. 14.

출퇴근 시 지문등록 강요로 인한 인권침해

진정요지

피진정인이 2011. 10. 28.자로 ○○시청 소속 공익근무요원들에게 출퇴근용 카드 발급 및 재발급 시 비용이 많이 들고 복무(근태)관리가 편리하다는 이유로 출퇴근용 카드발급시스템 대신에 지문등록시스템을 도입하여 지문을 찍도록 강요함으로써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하였다.

판단요지

지문이나 홍채와 같은 바이오 정보는 신체와 행동상의 특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는 기술로서, 기존에 저장해 둔 개인의 바이오 정보와 제시된 바이오 정보를 대조하는 방식이며, 또한 각 개인의 신체에 각인되어 특별한 신체적 변화가 없는 한 평생토록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생명주기에 따라 수집과정에서 명확한 인식과 설명(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청구권) 없는 수집의 위법성, 저장관리 과정에서 해킹에 의한 유출 및 삭제, 이용 및 제공과정에서 다른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와의 결합에 따른 오·남용(특성, 습관, 행동, 감정추론)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원데이터의 복원이나 당사자 역추적 등도 가능하므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본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복무(근태)관리는 담당자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이를 감독할 수가 있으며, 부득이하게 출퇴근용 카드발급시스템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므로 지문등록시스템 도입은 침해의 최소성에 맞지 않다고 판단된다.



학생들 출결을 확인하기 위해 지문인식기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상담 요지

공립학교 교사입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의 등하교를 확인하기 위해 지문인식 시스템을 실시하려 합니다. 기계는 이미 설치가 되었습니다. 교사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임의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각반의 담임교사들에게 학생들의 동의서를 받으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이러한 동의서를 받을 수 없다고 하니까 다른 교사를 시켜서 동의서를 받겠다고 합니다. 한 반에 학생이 25명이어서 담임교사가 출결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상태입니다. 직접 동의서를 받기 어려운 경우는 전화상으로 동의를 받으라고 합니다.

답변 요지

학교의 지문인식기 이용과 동의강제에 대해 인권위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학교 측이 출결 목적의 지문등록기를 설치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 강제적인 동의 절차를 강요하는 것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를 판단 받아 보십시오. 참고로 인권위는 2011년 학생출석확인을 위한 지문인식시스템 도입은 인권침해라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유사 사례

대학교에서 강의실 CCTV로 수업 받는 학생들을 찍고 있어요.

대학생입니다. 얼마전에 강의실에 CCTV가 설치되었습니다. 강의실에 비싼 기계들이 많아서 CCTV를 달았다고 하는데, CCTV가 장비 쪽으로 향하지 않고 수업을 받는 학생들을 향해 있으며, 수업시간 중이나 수업이 끝난 후에 교수들이 CCTV 녹화를 틀어보기도 합니다.

사설 평생교육원에 CCTV가 설치되었고 녹음기능까지 있다고 합니다.

사설 평생교육원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녹음기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시간에 사람들이 거의 말이 없고 분위기가 삭막해졌습니다. 설치 전 교육원 측은 강사들이나 직원들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참고 보도자료

보도자료 2011년 10월 31일

“세종시 스마트스쿨, 학생출석확인 위한 지문인식시스템 도입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세종시가 ‘u-스쿨 구축사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스쿨 지문인식시스템 대해 인권침해 소지가 많다고 판단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게 지문인식기를 도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u-스쿨 구축사업’ u-스쿨 구축사업은 지능형 맞춤형 교수·학습 지원체제를 구현하고 학습 공간을 학교 안에 한정하지 않고 학교 밖의 모든 생활공간을 학습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2009년부터 준비해온 사업. 이번 사업은 u-등·학교 관리시스템, u-class 시스템, u-급식 관리시스템, u-전자도서관 시스템, CCTV 및 무인 경비시스템 등 유비쿼터스 정보기술을 학교 시설물과 교육매체에 접목하여 학교 전체가 네트워크로 연결된 지능화된 학교 설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추진하면서 세종시 첫마을 학교(유2, 초2, 중1, 고1)에 스마트스쿨 구축을 위한 지문인식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지에 대해 2011. 10. 국가인권위원회에 의견 회신을 요청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들의 출결상황 확인을 위한 지문인식시스템의 도입이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아동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 검토했습니다.

지문정보는 고유불변하다는 특성과 별도 휴대가 필요 없다는 편리성에 힘입어 신원확인 수단으로 그 활용분야가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고유불변성 및 민감성은 불의의 유출사고 시 그 피해가 보다 중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국 평균 수업교사 1인당 또는 학급당 학생수가 20~30명 정도에 불과하고, 학생들이 모든 수업을 옮겨 다니는 이동식 수업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지문인식기를 도입 목적인 신속한 출결관리를 통한 보다 많은 수업시간 확보나 대리출석 방지 효과는 미미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고도로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지문정보 수집을 통해 얻는 출결체크라는 공익이 프라이버시권 침해 정도에 비해 크지 않고, 이러한 지문정보 수집은 아동권리협약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 이익의 최우선 원칙과,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의 프라이버시권 보장원칙에도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위와 같이 의견표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로 보육교사의 근무를 감시합니다

상담 요지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원장이 교사들을 CCTV를 통해 감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형”이 아닌 민간시설인데 원장이 수시로 CCTV촬영 영상을 보고 교사가 화장실에 가는 것까지 참견합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CCTV를 설치하는 것까지는 인정하나 CCTV를 목적외 교사들의 근무감시용으로 이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요지

전자장치를 통한 근로감시 등 개인정보침해의 심각성을 인권위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개별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개인정보침해는 인권위 조사대상이 아니어서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지자체나 국가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라면 어린이집을 상대로 진정접수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권 침해 등을 판단 받아 볼 수 있고, 지자체나 국가시설의 관리감독 책임과 관련한 인권침해 문제를 진정하여 판단 받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인권위도 각종 전자장비를 통한 근로감시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정책권고사안으로 삼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별 사업장이라면 안행부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부에 대해 문의하기를 권합니다.

유사 사례

병원대표가 간호사 스테이션에 CCTV를 설치하고 이를 집에서 본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일합니다. 얼마 전 병원측에서 간호사들이 앉는 스테이션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대표가 어플을 깔아놓고 줌기능까지 더해서 집에서 본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다음날 출근해서 “자리를 비웠더라, 뭐 하더라”라는 정도의 말로 압력을 주지만 앞으로 어떤 감시가 있을 지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CCTV 설치목적에 대한 안내문 같은 것도 없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문제를 느끼지만 공식화할 용기를 갖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구청과장이 출근 점검한다고 공공근로장소에 있는 CCTV 앞에 서 있으 래요

구청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천에서 공공근로를 합니다. 아침 9시 30분경 하천 관리 담당관이 하천 지킴이에게 전화하여 '지금부터 출근 확인을 하고자 하니 (공공 근로하는 사람) 한 사람씩 CCTV 앞에 세워라'고 했습니다. 지킴이는 담당관이 호명하는 대로 한 사람씩 CCTV 앞에 세웠으며 담당관은 잘 보이지 않는다고 왼쪽, 오른쪽으로 위치를 이동하라고 하는가 하면 손을 들어보라고 시키기도 했습니다. 얼떨결에 CCTV 앞에 섰지만 심한 수치심을 느꼈으며 동시에 몸이 분노스러웠습니다.

버스회사에서CCTV로 버스운전자를 감시하고 있어요.

버스회사에 근무하는 11년차 버스운전자이며 노동조합원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회사는 CCTV를 이용하여 운전자의 행동을 감시하고 그에 따라 경위서, 징계회부, 감봉과 승무정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참고 보도자료

보도자료 2014년 1월 14일

“정보통신기기에 의한 노동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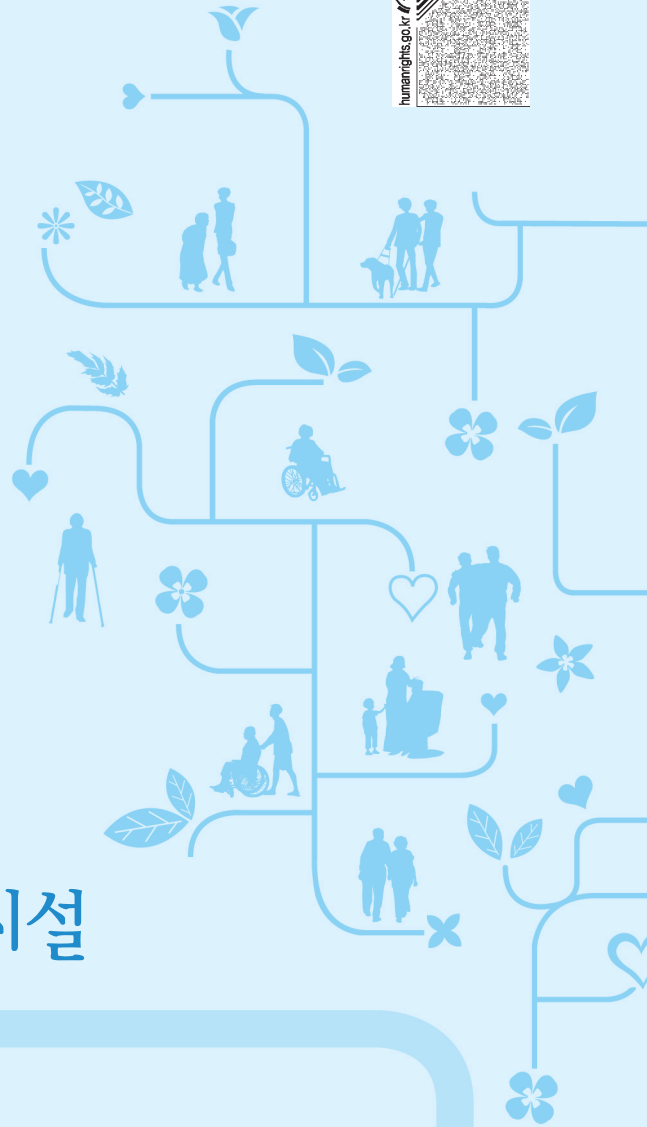
— 노동자 3명 중 2명, 휴일이나 퇴근 후 SNS통해 업무지시 받아—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0월~11월,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한글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정보통신기기에 의한 노동인권 침해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 발표 및 이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2014. 1. 15.(수) 14:00~16:00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8층)에서 개최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업무상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정보통신 기술은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한 업무 지시사항 전달로 나타났으며, 노동자의 3명중 2명꼴인 63%는 휴일이나 퇴근 후에 업무지시를 전달받았거나 전달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스마트기기의 업무 활용에 부정적인 이유로는 “사생활 침해”가 36.3%, “업무량 증가”와 “피로도 증가”가 각각 22.5%로 조사됐습니다. 또 회사의 감시정도를 묻는 질문에서 “감시되고 있다”고 생각한 응답자가 31.0%로, “감시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24.9%에 비해 6% 포인트 높게 나타났으며, “거의 모든 활동에서 감시되고 있다”는 응답자도 7.4%나 됐습니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2007년 “사업장 전자감시에서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령제도 개선 권고”를 한 바 있으며, 이후(노동부 불수용) 정보화 기기에 의한 노동인권 침해에 대한 진정 및 상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예컨대, 2002년 3건에서 2012년 169건으로 증가하였으며, 10년 전(2003년 기준) 18배 이상, 최근 5년 전(2008년 기준)보다 3배정도 증가해 대체적으로 매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보이고 있습니다.



04 다수인보호시설

- 사례 28 정신병원에 강제로 수용됐습니다
- 사례 29 폭행으로 갈비뼈에 금이 갔는데 파스 하나만 붙여줬습니다
- 사례 30 정신병원 직원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 사례 31 부당하게 강박당했습니다
- 사례 32 정신병원에서 전화를 제한합니다
- 사례 33 인권위원회 진정을 방해합니다
- 사례 34 정신병원에서 강제로 청소를 시킵니다

사례 28



정신병원에 강제로 수용됐습니다

상담 요지

집에서 술 한 잔 마시고 있는데 정신병원의 보호사가 응급이송단차를 타고 집에 와서는 저를 묶어서 정신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면담 없이 바로 입원되었으며 의사는 입원 후 일주일 만에 처음 만났습니다. 저는 미혼이며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입원되던 날은 집에 저 혼자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응급이송단차를 부르셨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전화를 받지 않아서 어머니도 사인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요지

의사면담없이 정신병원에 입원되었다면 적법절차위반인지 인권위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정신보건법상 정신병원 입원 시에는 2인 이상의 보호자 동의(보호자가 1인 밖에 없는 경우는 1인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의 입원치료 진단이 필요합니다. 정신병원 입원과정에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위원회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정신병원 앰블런스 탑승은 곧 정신병원 입원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앰블런스 탑승 전 2인 이상의 보호자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의 입원치료 진단이 필요합니다.

유사 사례

자의입원했는데 저의 동의도 없이 보호자에 의한 입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저는 우울증 증세가 있습니다. 정신병원측에서 입원을 권유하고 저도 치료를 받아 보고 싶어서 아내와 함께 병원을 방문하여 자의입원했습니다. 입원 당시에는 분명히 제가 자의 입원 동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원한 다음날 병원측에서 보호자에게 전화하여 다시 병원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호자 동의입원서류를 작성케 했습니다. 저는 70일 정도 병원생활을 하다 퇴원했습니다. 그 사이 병원측은 조작된 강제입원 동의서를 내밀며 여러차례 저의 퇴원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정신병원에 자의입원한 환자의 가족을 불러 보호자 동의입원으로 바꾸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되었는데 환자의 권리구제절차도 고지해주지 않았 습니다.

저는 평소 술도 거의 마시지 않고 정신병원에 입원한 적도 없었습니다. 지인 중에 정신병원에서 보호사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날 지인이 차를 타라고하여 탔다가 정신병원에 입원되었습니다. 입원시에 의사도 만나지 못했고 입원이유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으며 퇴원을 요청했으나 거부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 병원에 입원되어 있는지 그리고 보호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조차 모르며 이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병원측으로부터 들어본 바 없습니다. 또한 병원측에서 퇴원심사청구권 및 인신구제요청 같은 권리구제절차에 대해서도 일체 설명을 해주지 않았습니 다.

참고 결정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2014. 2. 17.

자의입원환자의 동의입원 변경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3. 10. 4. ○○○○병원에 자의 입원하였는데,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입원을 보호의무자에 의한 동의 입원으로 변경하고, 진정인의 퇴원을 불허 하였다.

판단요지

「정신보건법」 제2조 제5항에서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 제2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원 등을 한 환자로부터 퇴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원 등을 시켜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치료를 위하여 진정인을 퇴원시키기 보다는 계속하여 입원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더라도, 이는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설득과 권유의 정도에 그쳐야 하는 것이고, 진정인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정신보건법」 제23조 제2항에 의하여 즉시 퇴원시켜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하고 진정인의 입원을 보호의무자에 의한 동의입원으로 변경하고 진정인의 퇴원을 불허한 행위는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 보도자료

보도자료 2014년 11월 12일

대면 진단 없이 정신병원 강제 이송한 병원직원 검찰수사 의뢰

- 인권위, “형법상 체포 및 감금죄 혐의 인정될 수 있어”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비자의(非自意)입원 시 정신질환자에 대한 전문의 등의 대면 진단 없이 강제력을 동원해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한 사건에 대해 형법상의 체포, 감금죄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강제이송에 관여한 병원 원무과장 등 3인에 대하여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 인권위는 또 동 사건과 관련해 해당병원장에게 소속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진정인 이 모씨는 2013. 7. 26.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아내와 딸의 동의하에 피진정인들에 의해 강제 입원당했다며, 입원당시 피진정인들에 의해 집안에서 강제로 끌려나갔고, 이 과정에서 진정인이 신발을 신고 나가겠다고 하였으나 신발도 신지 못한 채 구급차에 태워져 강제로 입원이 되었다며, 2014. 2.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 정신보건법 제24조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정신질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찰하고 입원이 필요하다 고 진단한 후,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입원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인권위는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추기 전에는 의사를 만나기 위해 병원까지 데려간다는 이유로라도 저항하는 정신질환자의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참조/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 인권위는 또 병식이 없고, 자타해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정신보건법」 제26조의 응급입원 제도를 이용하여, 소방공무원과 경찰의 협조를 받아 강제 이송이 가능하고, 그 외 보호자의 동의만으로는 병원 직원이라 해도 강제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보도자료 2013년 10월 4일

정신과 입원 환자를 불법감금, 이송한 응급환자이송업자 수사의뢰 및 관련정신병원 입원절차 감독 강화 등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헌병철)는 경기도 소재 일부 정신의료기관들의 환자 입·퇴원 과정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 응급환자이송업자의 불법적 이송행위와 정신의료기관과 연계된 환자 유치, 입원 절차의 소홀한 진행 등의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아래와 같이 권고하였습니다.

1. 검찰총장에게 피해 환자를 불법 체포, 감금한 것이 확인된 응급환자이송업자에 대한 수사 의뢰
2.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의료기관의 관행적인 격리조치나 그 남용의 방지, 응급환자이송업자에 의한 위법한 환자이송 관행 등의 근절을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
3. 관할 시·도지사에게 응급환자이송업자의 위법한 이송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
4. 관할 시장에게 일부 정신의료기관의 위법한 환자 유치 및 입원절차 미준수 관행에 대하여 감독을 강화하고 관련 처분을 취할 것
5. 해당 의료기관장에게 비자의 입원 요건 철저히 준수, 환자에 대한 격리·강박은 「정신보건법」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 병원 내에서 환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등

사례 29



폭행으로 갈비뼈에 금이 갔는데 파스 하나만 붙여줬습니다

상담 요지

어머니는 작년 5월 요양원에 입소하셨습니다. 치매3급 장애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같은 요양원에 입원중인 성명불상의 환자(남성)에게 맞아 상해를 입었습니다. 요양원에서는 사건이 일어난 지 3일 동안이나 가족들에게 연락도 안하고 쉬쉬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계속 아프다고 호소하였는데도 외부 정형외과에 데려가지도 않고 3일 동안 가슴에다 파스 하나만 붙여주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하도 아프다고 하시니 3일이나 지나서 요양원에서 가족에게 연락을 했고 그때서야 제가 요양원에 가서 어머니를 모시고 외부 정형외과에 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갈비뼈와 팔가락뼈에 금이 가 있었습니다. 전치 4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요양원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모든 병원비를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록 요양원에서 아무 연락도 없고 병원비 또한 주지 않고 있습니다.

답변 요지

요양원의 의료조치 미흡 등에 대해 인권위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에서 환자간의 폭행 사건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한 관리의무나 보호조치의무를 미흡하게 한 부분에 대해 인권위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전치4주의 상해를 입은 치매환자가 아프다고 하는데도 바로 병원에 모시고 가지 않은 채 3일 동안이나 방치한 점, 폭행사건 발생에 대해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은 점 그리고 요양원측이 자신들의 관리의무 소홀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권위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유사 사례

교통사고 환자를 치료도 하지 않고 정신병원으로 데려가려 했습니다.
정신병원에 입원 중, 내과로 외진을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정신병원 구급차 뒤에 타고 있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피를 쏟으며 내과병원 응급실에 갔고 의사가 “귀가 찢어져서 12바늘 정도 꿰매야 하고 이 환자는 다른 환자들에 비해 피가 반 정도밖에 안되어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찢어진 귀를 꿰매고 치료를 받기도 전에 정신

병원 원장이 보호사에게 전화하여 저를 정신병원으로 데려오라고 시켰고 보호사는 저를 데리고 다시 정신병원으로 돌아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내과병원 의사가 귀를 꿰매지도 않고 퇴원하려는 것을 완강히 막으며 “생명에 지장이 있는 환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시 정신병원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겨우 귀를 꿰매고 수혈을 받았습니다. 만일 내과병원 의사가 막지 않았다면 저는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정신병원으로 끌려갔을 것입니다.

정신병원 직원의 가혹행위 피해에 대해 의료조치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신병원에 입원중에 외출을 나왔다가 2~3일이 지나도록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신병원 원무과 직원 2명이 저를 데려가려고 병원응급차를 타고 집까지 왔습니다. 제가 응급차에 혼자서 스스로 타겠다고 말했는데도 원무과 직원이 갑자기 저의 양팔을 심하게 꺾었습니다. 특히 왼쪽 팔이 심하게 꺾였습니다. 어깨 통증을 호소하여 MRI를 찍어보니 인대가 파열되었고 경관절 주의가 다 상했고 안에 물이 찼다고 진단했습니다. 통증이 계속되면 퇴행성이 될 수 있기에 하루 빨리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신병원에서는 자기네들의 가혹행위로 저를 다치게 해 놓고 그것을 은폐하고 기왕증으로 몰아가고자 진료기록을 허위 작성하고 조작했습니다. 그리고 100% 정신병원직원의 잘못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정신병원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에 서명을 하라고 했습니다.

참고 보도자료

보도자료 2014년 10월 28일

“노인요양시설 폭행피해자에 대한 의료조치미흡은 인권침해”

- 인권위, 해당시설 업무정지 권고 및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요청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OO도 OO군 소재 노인요양시설에서 입소자 간 다툼으로 갈비뼈와 발가락뼈에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해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을 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업무·간호의무 일지 등에 관련 기록을 전혀 하지 않고, 어떠한 신고조치도 취하지 않은 요양시설원장에 대해 노인 학대 및 치료방임 등 보호의무를 태만한 인권침해로 판단하였습니다.
- 인권위는 이와 관련, OO군수에게 해당요양원에 대하여 업무정지 등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 학대 발생 미신고와 관련하여 피진정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것,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인권위는 또 피해자가 입은 육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치료비를 포함하여 적절한 피해배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법률구조를 요청하였습니다.
- 한편, 해당요양원측은 사건에 대한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비 및 위자료 등을 지급하기로 피해자 측과 합의했다고 2014. 10. 27. 인권위에 밝혀왔습니다.

사례 30



정신병원 직원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상담 요지

이틀 전 동생의 신고로 저를 정신병원으로 이송시키려고 온 정신병원의 직원 이 방에 신발을 신고 들어와서 팔을 꺾고 손을 묶고 몸을 바닥에 내리꽂는 등 폭행, 가혹행위를 했고 차에 강제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병원에서 온 사람들이 저를 너무 심하게 다루니까 보다 못한 동생이 만류하여 입원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일로 몸에 상처가 많이 났습니다. 가해자들은 사설 구급대가 아니라 병원직원들입니다. 정신병원 보호사 3명과 운전원까지 4명이 검은색 산타페 차량을 끌고 왔습니다.

답변 요지

정신병원 직원에게 폭행, 가혹행위를 당했다면 인권위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인권위는 정신병원 입원과정의 적법절차 위반 및 인권침해에 대해 조사할 수 있으며 병원 관계자가 환자를 호송, 입원시키는 과정에서 폭행, 강박, 과도한 신체 제압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인권위에 진정하여 판단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사람들이 사설구급대 소속이라면 인권위에서 조사하기 어렵고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유사 사례

요양원 직원이 언니를 폭행했습니다.

정신요양원에 언니가 입원해 있습니다. 한 달 전쯤 젊은 여자 간호사가 정신이 온전치도 못한 언니를 구타했다고 합니다. 배에 멍이 들 정도로 발로 배를 누르고 손과 발로 때렸다고 합니다. 언니가 생명의 위협을 느껴 119에 신고를 했고 경찰서로 사건이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간호사가 그 요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가해자에게 피해자 부모에게 싹씩 빌라고 했습니다. 경찰 조사도 종결되었습니다. 부모님이 고소를 취하하였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의 생각으로 언니를 계속 그 요양원에 맡겨야 하는데 고소하면 언니에게 불이익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양원을 옮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간호사는 그 요양원에서 내보내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교사와 원장이 원생들을 폭행합니다.

한 장애인시설에서 조리원으로 일했습니다. 교사 중 한 명이 식당에서 원생의 빵을 때리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다른 교사들이 알면서도 묵인하는 모습을 보고 분개하여 폭행사건의 구체적인 일시와 상황을 적어서 원장에게 문제제기했습니다. 그래서 폭행하던 교사는 권고사직당했습니다. 그런데 원장 역시 수시로 원생들을 때리는 모습을 보았고 너무 실망스러워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만두자마자 권고사직 당했던 윤모 교사를 다시 입사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도 버젓이 원생들을 때리고 있다고 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 인권위에 신고 하고자 합니다.

노숙인 시설에서 노숙인 중에서 뽑은 실장이 폭행을 일삼아도 두둔해줍니다.

노숙인 시설에 있다가 퇴출되었습니다. 그 노숙인 시설은 노숙인 중 실장을 뽑아놓고 다른 노숙인 관리를 맡깁니다. 실장은 직원의 보호아래 권력을 행사하고 맘에 들지 않으면 다른 노숙인을 폭행하고 행패를 부립니다. 저도 실장에게 맞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많이 당했습니다. 시설측은 폭행사실을 알면서도 제재하지 않고 방치하며 오히려 실장이 두둔합니다.

참고 보도자료

보도자료 2014년 11월 11일

인권위, “지적장애인 폭행 후 장시간 방치한 직원 징계해야”

시설에 재발방지 및 인권교육, 지자체에 특별지도점검 등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광역시 ○○군 소재 ○○○○○ 장애인거주시설장에게 지적 장애인을 폭행하고, 신속한 의료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업무 인수인계를 실시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 해당 직원을 징계할 것과 종합적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을 시설장에게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군수에게 해당 시설에 대한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 인권위는 2014. 6. ○○광역시로부터 2013. 12.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지적 장애인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진정을 접수하였으며, 조사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폭행, 의료조치 소홀, 보고 지연, 불명확한 인수인계, 휴일 1인 근무로 인한 장애인 보호조치 미흡 등을 확인했습니다.
- 인권위 조사결과, 시설의 생활재활교사 이 모(39세)씨는 시설거주인 이 모씨(34세, 지적장애 1급)가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해 휴지통에서 두유 팩을 꺼냈다는 이유로 몸싸움을 벌였고, 거주인 이 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밀기, 어깨 및 목 누르기, 올라타서 누르기 등의 방식으로 얼굴, 등, 목 부위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 이 모 교사는 피해자가 울면서 고통을 호소하는 상황임에도 빈 방에 혼자 들여보낸 뒤 문을 잠근 상태로 방치하였고, 방에서 피해자가 쿵쿵 소리를 내는 등 오른손 제 5중수골이 골절(추후 수술 및 6일간 입원)된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즉시 병원 진료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인권위는 또, 조사과정에서 사건 당일 해당 시설에서 직원 1명이 장애인 9명을 보호한 사실, 사건 발생 직후 근무교사들이 인수인계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 시설장이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 등을 확인했습니다.
- 한편, 인권위는 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군청이 매년 지도 점검을 실시하면서도 회계 분야의 점검에 그쳤으며,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사 및 시정한 사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유사한 인권침해의 방지를 위해 감독기관이 보다 적극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당하게 강박당했습니다

상담 요지

저는 알코올의존증으로 정신병원에 자의입원한 사람입니다. 어느날 새벽 2시경 배가 너무 아파서 간호사에게 진통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호사가 반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화가 나서 반말을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간호사가 보호사에게 저를 독방 침대에 묶어둘 것을 지시하자 보호사 7명이 달려 들어 저를 독방 침대에 4시간 동안이나 묶어 두었습니다. 양쪽 팔, 양쪽 발과 다리가 묶였습니다. 당시 의사는 병원에 있지도 않았으니 의사의 지시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제가 소변을 보고 싶다고 하니 보호사가 그냥 바지에 보라고 했습니다. 4시간 동안이나 사지가 묶여 있다 보니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매우 힘들었습니다.

답변 요지

정신병원에서 의사의 지시 없이 환자를 강박했다면 인권위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환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것은 환자의 증상이 본인 또는 주변사람이 위험에 이를 가능성이 현저히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위험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환자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행하여져야 하며 정신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정신보건법 제46조). 정신병원에서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환자를 강박했는지 진정하여 인권위 조사와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유사 사례

정신병원에서 재갈을 물렸습니다.

알코올의존증으로 어머니에 의해 정신병원에 입원되었습니다. 입원해서 며칠 후 여병동 환자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폭행을 한 여자환자는 그냥 놔두고 저만 안정실에 넣었습니다. 안정실에 들어갈 때 덩치 큰 보호사를 포함하여 장정의 보호사 네 명이 저를 발로 짓누르고 묶었습니다. 심지어 제 입에 “붕대로 싼, 길이가 10cm정도 되고

5cm정도 폭의 각목”으로 만든 재갈을 입에 물렸습니다. 그리고는 주사를 두 대 맞았습니다. 그때가 저녁 6시가 좀 넘은 시각이었는데 다음 날 아침 9시경 제 입에 물린 재갈을 빼고 풀어 주었습니다. 각목으로 만든 재갈로 인해서 입 안 쪽이 찢어졌고 이가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간호사는 그냥 만지지 말라고만 하고 특별한 의료조치는 해주지 않았습니다.

정신병원에서 부당하게 강박 당했습니다.

저는 알코올의존증으로 정신병원에 10일간 자의 입원했다가 퇴원했습니다. 그런데 입원 하던 날부터 저를 강박했습니다. 왜 강박하느냐고 물으니 첫 날이니까 강박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둘째 날, 제가 코피가 나는데 피가 안 멈춘다고 하니 직원이 코를 만지면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코를 만지니까 코를 만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 강박을 한다고 또 강박했습니다. 셋째 날은, 직원이 제 옆의 노인을 불러도 대답이 없어 제가 대신 노인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시끄럽게 했다고 강박했습니다. 셋째날 강박 할 때는 직원이 무릎으로 제 가슴을 찼습니다. 퇴원하고 진료를 받았더니 가슴 골절이라고 했습니다. 총 10일 입원 기간 중 4일 간 강박 당했습니다.

참고 결정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2014. 2. 17.

정신병원환자에 대한 부당한 강박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3. 10. 9. ○○○○병원에 입원한 직후 안정실에 강박되어 손발에 심한 상처가 생겼으나 강박이 지속되었고, 적절한 치료도 받지 못하였다.

판단요지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금주로 인한 금단현상을 보인다는 이유로 약 4일 동안 격리조치 하고, 격리기간 중 30시간 45분동안 진정인을 4point 강박하면서, 강박일지에는 강박 시행시점부터 해제시점까지 전부 혈압과 맥박 수치를 동일하게 기록하는 등 그 기록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로 형식적인 기록을 하였고, 비교적 사실에 부합하다고 보이는 격리일지에는 진정인의 혈압과 맥박 수치의 기록간격이 평균 8~10시간이었던 점으로 볼 때, 매시간 환자의 Vital sign을 점검하고 그 상태를 자세히 기록하도록 하고 있는 ‘격리 및 강박지침’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다.

또한, 오랜 강박으로 인해 진정인의 피부손상이 관찰되었음에도 진정인의 상태를 정신 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보고하거나 강박 해제 여부에 대한 지시를 받지 않고, 약 6시간 동안 강박상태를 지속시킴으로써 진정인에 대한 필요 이상의 강박을 시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46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행위로서,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신병원에서 전화를 제한합니다

상담 요지

저는 부모님에 의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되었습니다. 10월27일 입원되었는데 오늘까지 일주일동안 전화사용이 일체 금지되었습니다. 원래 입원하고 며칠간은 전화사용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일률적 전화제한에 따른 외부교통권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요지

정신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일률적 전화제한은 외부교통권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정신병원 입원환자의 일률적 전화제한에 대해 진정하여 인권위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권위는 정신병원측의 포괄적이고 일률적인 전화제한은 「정신보건법」 제45조를 위반한 것이며 「헌법」 제18조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치료를 목적으로 외부와의 교통을 제한하는 경우, 전문의의 진단 하에 사유 및 기한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필요최소한으로 해야 합니다.

유사 사례

정신병원에서 하루 1통화로 전화사용을 제한합니다.

며칠 전 부당입원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접수했습니다. 담당조사관과 통화를 하고 싶은데 조사관이 통화중이라 전화연결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신병원은 환자의 전화사용을 하루에 한 번으로 제한하고 있어서 오늘은 담당조사관에게 전화를 걸 수 없습니다. 병원직원이 환자의 공중전화카드를 보관하고 있으며 사용 횟수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신병원에서 외부에서 온 편지를 뜯어보고 면회도 감시합니다.

저는 알코올병원에 입원한 것이 부당하다고 인권위에 진정한 적이 있습니다. 퇴원하고 집에 갔더니 제가 병원에 입원 중에 보낸 편지의 봉투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개인 편지봉투를 사서 편지를 보냈는데 집에 온 편지는 정신병원 봉투였습니다. 병원에서 편지를 뜯어보고 봉투를 바꾼 것입니다. 또 가족과 면회할 때 보호사들이 옆에서 듣고 있습니다. 보통 가족이 면회를 오면 퇴원시켜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옆에서 듣고 있으니

그런 사정을 말을 못합니다. 교도소도 아니고 책상 갖다 놓고 옆에 앉아 있는데 비켜달라고 해도 비켜주지 않습니다.

정신병원의 면회 불허, 변호사 위임장 전달을 거부 합니다.

저는 변호사인데 정신병원 입원환자와 관련하여 문의를 하려고 합니다. 아는 사람이 추석 전날 강제입원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 폐쇄병동에 가서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인신보호법상 구제신청을 하기 위해 위임장을 받으려고 했는데 면회가 안 되었습니다. 의료적 판단에 의해 면회를 안 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임장에 환자의 싸인만 받아주면 된다고 했는데 병원직원이 가져가고는 환자에게 전달도 안 해주었다고 합니다. 환자는 지금도 계속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부모님에 의해 여섯 번 강제입원을 당했습니다. 정신보건법상 강제입원 규정은 무효라는 헌법소원을 하려고 하는데 당사자의 위임장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참고 결정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2014. 3. 21.

부당한 공중전화 사용 제한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저녁 7시 이후에만 공중전화의 사용을 허용하고 그 밖의 시간에는 공중전화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판단요지

피진정인은 환자들이 동전을 삼키는 등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공중전화 사용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나, 그러한 위험성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 의하여 환자의 병명과 증상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 단지 추상적 위험성이 있다는 피진정인의 주관적 판단이 모든 환자들의 공중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설령,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추상적 위험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는 공중전화의 사용 시간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병원의 종사자들이 직접동전을 투입해 주는 것으로도 그 위험성을 충분히 제거할 수 있다고 보임에도, 그러하지 않고 인정사실과 같이 모든 환자의 공중전화 사용을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저녁 7시 이후로 제한하는 행위는 그 목적에 비추어 수단이 적절하지 않고, 환자들의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치라고 판단된다.



인권위원회 진정을 방해합니다

상담 요지

정신병원에서 인권위원회 진정을 했다가 강제로 강박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알코올의존증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6개월 만에 퇴원했습니다. 제가 입원했던 정신병원은 다른 정신병원에서는 안 받는 환자들도 입원시켜주는 곳입니다. 그 병원에는 인권위 진정함이 폐쇄병동 밖에 있어서 폐쇄병동 입원 환자들은 인권위 진정함을 전혀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폐쇄병동에 입원한 환자가 다른 환자 퇴원시에 인권위 진정서를 부탁하였다가 발각되어 케어룸(CR)에서 강박당했다고 합니다.

답변 요지

정신병원 환자의 인권위 진정권이 침해되었다면 인권위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정신병원 폐쇄병동 내에 인권위 진정함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인권위 진정권이 침해되었다면 국가인권위원회법 위반으로 인권위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유사 사례

정신병원에서 1331로 전화할 수 없습니다.

며칠 전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서는 공중전화로 인권위(1331)로 전화를 걸면 통화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인권위로 아예 전화가 연결되지 않도록 병원 측에서 조치해 놓은 것입니다.

정신병원 원무과장이 환자의 구제신청을 방해합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한 지 두 달 되었습니다. 법원에 인신구제요청했으나 기각되었고 보건소에도 퇴원심사청구를 신청한 적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원무과장이 하는 말이 그런 걸 자주 보내면 만기가 되어도 퇴원을 안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또 주치의도 그런 거 보내려면 자기한테 먼저 상담을 하라고 했습니다.

정신병원 의사가 퇴원심사청구서를 제가 보는 앞에서 찢어버렸습니다.

저는 정신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어제 오후 2시경, 퇴원심사청구서를 작성해서 의사에게 제출했습니다. 의사가 보더니 제가 보는 앞에서 퇴원심사청구서를 찢어버렸습니다.

정신병원에서 인권위 진정을 취하하라고 강요합니다.

정신병원 입원 중입니다. 병원에서 외부로 전화를 못하게 해서 인권위에 진정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의 상담실장이 자꾸 인권위 진정을 취하하라고 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취하하라고 해서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담실장이 인권위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꿔주며 인권위 진정을 취하한다고 말하라고 합니다. 인권위 진정취하를 종용하는 상담실장을 진정할테니 조사해주세요.

참고 결정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2013. 11. 12.

정신병원 직원의 인권위 진정방해

진정요지

진정인이 입원하고 열흘 정도 지났을 때 인권위 진정함에 진정서를 넣었으나 진정인이 퇴원할 때까지 진정서가 그대로 있었으며, 직원에게 물어보니 진정서는 6개월에 한번 씩 인권위로 보낸다고 하였다.

판단요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 제3항은 시설수용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고자 하는 경우 시설 소속 직원은 시설수용자가 작성한 진정서를 즉시 국가인권위원회에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시설의 장은 적절한 장소에 진정함을 설치하고 용지·필기도구 및 봉함용 봉투를 비치하도록 규정하여 시설수용자의 자유로운 진정서 제출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정인이 작성한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로 즉시 송부하지 아니하고 자체 열람 후 병원 내부민원으로 보고하고 종결 처리한 사실이 있다. 비록 피진정인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관련 처리절차에 대해 관련 법규를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일이고, 관련 법규 인지 후 규정에 맞게 시정노력을 하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진정방해 행위에 고의성이 없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정신보건법」 제2조 제1항 및 제6항은 정신질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 및 가치 보장과 함께 가능한 한 자유로운 환경의 보장으로 다른 사람들과 자유로운 의견교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정신보건시설의장이 그 시설의 운영에 있어 환자의 건강관리 및 회복에 대한 의무와 더불어 환자 개인이 가지는 기본권적 권리도 함께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인 바, 관련 법규를 숙지하지 못한 사실 역시 정신보건시설의 운영에 있어 당연한 의무를

게을리 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로 인해 진정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 보도자료

보도자료 2014년 9월 25일

“퇴원심사청구는 정신병원 입원 환자의 법률상 권리”

－ 퇴원심사청구 절차에 대한 병원의 책임·의무 규정 등 세부지침 필요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헌병철)는 정신병원 입원환자가 퇴원심사청구서를 작성해 보건소로 발송해 줄 것을 병원측에 요청하였으나, 접수 마감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발송하지 않고 병원에 보관한 것은 「헌법」 제18조에서 보장된 통신의 자유와 「정신보건법」 제29조 제1항에 의한 퇴원심사청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인권위는 ‘정신병원 입원환자의 퇴원심사청구는 법률상권리’임을 재확인하고, 퇴원심사청구 절차에 대한 정신의료기관의 책임과 의무 등을 규정한 세부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정신보건법」 제29조 제1항 및 제30조에 의한 퇴원심사청구서는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신 또는 당해 입원환자의 퇴원 또는 처우개선을 청구하는 문서로 입원환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률상 보장된 권리 행사이므로 발송이 자유로워야 하며 의료목적에 위하여도 제한될 수 없습니다.
- 인권위는 정신보건법에 따른 퇴원심사청구서 발송 주체는 정신질환자이며 병원은 발송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없으므로 병원이 입원환자의 우편물 발송에 협조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며, 정신보건법에서 보장하는 권리 행사를 방해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 이에 인권위는 OO병원장에게 입원환자의 퇴원심사청구서 발송이 지연 또는 거부되는 사례가 없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철저히 교육할 것과 부산광역시 OO구청장에게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보건법」 제29조 제2항의 퇴원심사청구절차와 관련하여 정신의료기관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사례 34



정신병원에서 강제적으로 청소를 시킵니다

상담 요지

알코올의존증으로 정신병원에 입원되었습니다. 입원 이후 지금까지 매일같이 병원 환자들이 병원을 청소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각 호실마다 환자들 중 청소당번이 정해져 있고 당번은 방을 청소해야 합니다. 또한 복도를 청소하는 환자도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청소도 어떤 환자가 담배 두 보루 정도를 받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환자는 매일같이 청소를 하고 어떤 병동은 청소당번이 돌아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병동을 청소하는 직원이 아예 없습니다.

답변 요지

정신병원의 강제노동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정신병원에서 강제노동을 당한다면 진정하여 인권위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동 내 청소와 배식이 환자들의 치료와 재활에 도움이 된다는 정신과전문 의의 판단과 지시에 따라 실시되었다면 그것은 전문의의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치료와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은 정신질환자가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유사 사례

정신병원에서 배식, 화장실청소, 다른 환자 돌보기 등 강제노동을 시킵니다.

저는 알코올의존증과 조현증으로 7~8개월 전쯤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에서는 치료목적이 아닌 노동을 환자들에게 시킵니다. 직원들이 할 일을 환자들에게 시킵니다. 싼 값에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 약 2개월간 아침, 점심, 저녁 밥 차를 끌고 다녔습니다. 한 병동에 90명 정도의 환자가 있는데 그 배식을 저 혼자 했습니다. 그렇게 일하고 한 달에 담배 한 보루를 받았습니. 현재 밥차는 다른 환자가 끌고 있습니다. 그 환자는 화장실 청소도 합니다. 어떤 환자는 다른 환자의 똥오줌을 치우고 씻기고 간병까지 합니다. 그리고 병원으로부터 한 달에 5만원을 받습니다. 비록 환자들 이 동의 했다 해도 이는 분명히 강제노동입니다.

정신병원에서 강제노동을 시켰습니다.

저는 정신병원에 5년동안 입원했다가 어제 퇴원했습니다. 퇴원직전 3개월 동안 병원에서 강제노동을 했습니다. 배식을 하고 매일같이 화장실 청소를 했습니다. 병원측에서 퇴원 편의를 봐주겠다고하면서 저에게 이런 일들을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환자들 옷도 다 환자들이 빨고 환자들이 직원들 옷도 빨아준 적이 있습니다. 왜 환자들이 이런 일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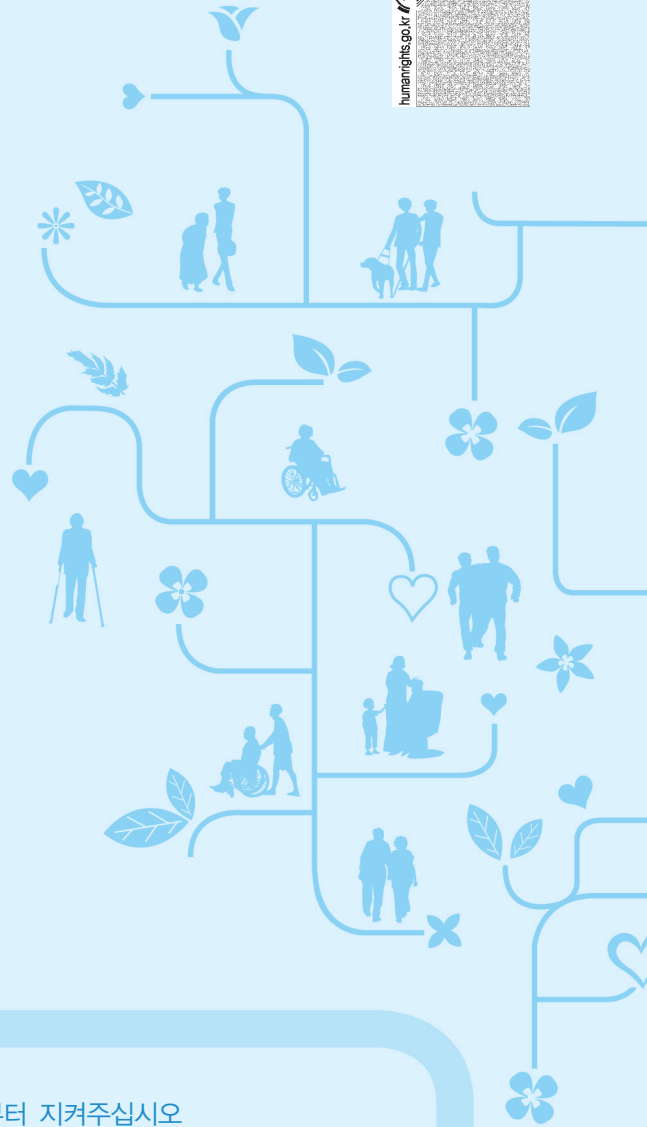
참고 보도자료

보도자료 2014년 8월 12일

노인복지시설에서 강제노동·금전착취는 인권침해

- 인권위, 시설대표 검찰 고발,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해임 등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헌병철)는 000도 00시 소재 노인복지시설 대표가 시설거주 노인들을 강제노동시키고 금전을 착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진정인인 시설대표 박모씨(여, 66세)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 인권위는 또 시설 대표가 사회복지법인 000의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바, 이사장 직위에서 해임할 것을 해당 도지사에게 권고했습니다.
- 인권위는 조사결과, 피진정인은 피해자들의 기초생활수급비 등이 입금되는 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있었으며 피해자들에게 입·출금내역을 알려주지 않고 금전을 인출하여 임의대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또한 피진정인은 피해자 강씨, 박씨, 이씨에 대하여 위 시설 소유의 발을 갈고 농작물을 수확하는 등의 발일을 시키고 그 대가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피해자 강씨에게는 전등 스위치를 조작하는 등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당 등에서 자주 의자를 들고 서 있는 벌을 주었음을 확인했습니다.
- 이는 「헌법」 제10조가 정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행위로, 피진정인이 진정 사건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들의 금전을 일부 반환하였다고는 하나 아직 미반환 금액이 상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전체 횡령 금액이 금 70,000,000원을 넘는 중대한 사안으로 인권위는 피진정인의 행위를 「형법」 제356조가 정한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인권위는 또 피진정인이 대가없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발일을 시키고 정신장애 2급인 피해자에 대하여 자주 의자를 들고 서 있게 하는 벌을 준 행위는 노인과 장애인에게 신체적인 고통을 가한 것으로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가 정한 노인학대 및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항이 정한 장애인학대에 해당하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항이 정한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에 해당하여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피해자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 이에 인권위는 업무상 횡령에 대해서 피진정인을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였으며, 해당 도지사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등을 권고했습니다.



05 기타

- 사례 35 콜센터직원들을 고객들 폭언으로부터 지켜주십시오
- 사례 36 밀양송전탑 문제에 대해 인권위원회가 적극 나서기 바랍니다
- 사례 37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해주세요
- 사례 38 선거에 아이 사진을 허락 없이 사용해도 되나요?
- 사례 39 요양병원에 대한 강력한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례 35



콜센터직원들을 고객들 폭언으로부터 지켜주십시오

상담 요지

저는 카드사 콜센터에서 1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요즘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법적 장치 마련 등 관련 문제들이 이슈화 되면서 조금씩 국민의식 개선의 여지가 보이니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법은 정식으로 입법되어 시행이 되기까지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기에 좀 더 신속하게 실천적인 부분을 이행해달라는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감정노동자들의 고통을 담은 공익광고를 요청합니다. 즉, 폭언 등 모욕적인 언행 또한 엄연히 범죄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공익광고를 정부 차원에서 속히 마련하여 공중파에 실어주길 바랍니다. 둘째, 입법예고를 마친 「감정노동자 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은 특별법에 콜센터 통화 시 욕설과 성희롱을 실질적으로 즉각 방어할 수 있는 현대 기술적인 실천 방안 등을 마련해주시고, 그저 그러지 말라고 타이르는 차원에 그치는 공익광고가 아닌 엄연히 범죄이고, 사업주도 개인도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강행성이 드러난 공익광고를 공중파에 실어주길 호소합니다.

답변 요지

인권위는 감정노동자 인권가이드북을 발간하고 소비자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인권위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정책, 제도, 관행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여성 감정노동자 인권가이드〉를 발간, 소비자 캠페인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인의 의견을 참고하여 콜센터직원들의 인권상황에 대해 관심을 갖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유사 사례

콜센터 특이민원인 등에 대하여 금융회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카드사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최근에 정보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고객들로부터 많은 항의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의하는 민원인들 중에는 폭언의 수위가 심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콜센터 직원들이 악성 고객들에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몇몇 고객은 폭언의 수준이 정말 심각합니다.

감정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합니다.

고객센터에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자괴감이 들고, 지하철이든 길거리든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무섭고 싫어했습니다. 상담사는 고객이 욕을 해도 참아야 하고, 자세히 설명해도 고객이 수긍하지 않으면 결국은 직원의 불친절 민원으로 이어집니다. “목소리와 말투가 마음에 안 든다.”, “네가 머리가 나쁘고 배운 게 없으니 그러고 있지.”라는 등의 비하 발언은 물론이고, 가족에 대한 욕설까지. 정말 죽고 싶고, 하루에도 몇 번 씩 회사를 그만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이미지 때문에 직원을 보호하려 하지 않습니다. 고객이라는 타이틀로 상담사의 인격을 모독하는 무차별적인 행위,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것에 대해 나라에서 고민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감정노동자들이 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적인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판매직 종사자는 고객에게 무조건 “죄송합니다.” 해야 되는 건가요?

통신회사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고객님이 통화내역을 확인할 수 있느냐고 문의하여 지점에서 가능하다고 지점위치와 약도를 안내하였습니다. 며칠 후 지점장이 “본인이 아닌 사람에게 왜 통화내역을 열람가능하다고 안내를 했느냐?”며, 상황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알고보니 그 고객은 저의 매장명과 지점명을 지명하며 여러 기관에 글을 올렸습니다. 담당매니저가 전화를 하면 고객은 욕설부터 한다고 합니다. 고객은 사람이고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은 사람도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판매직 종사자는 악성 고객 때문에 고충이 많습니다.

생활잡화매장에서 일합니다. 어떤 고객이 포장되어 있는 물건을 뜯어보려고 하여 상품포장을 뜯으시면 안되므로 궁금하신 사항은 매장 직원에게 문의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고객이 화를 냈고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라고 했습니다. 너무 억울했지만 꼭 참고 무릎까지 꿇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객이 갑자기 말을 바꾸어 자기는 물건을 뜯으려고 한 적도 없고 사과를 받은 적도 없다며 억지를 부렸습니다. 다행히 상품포장을 뜯으려고 한 것은 CCTV에 찍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객은 본사에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자기는 예민한 사람인데 이 일로 아파서 병원비가 들었다면서 손해배상을 하라는 요구를 합니다.

서비스업종 직원이 민원인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서비스업종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고객을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 바랍니다. “고객이 무조건 왕이니 내 뜻대로 다 해내라, 내가 만족하지 않으면 너 불친절하고 형편없는 직원으로 신고하겠다.”는 고객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서비스업종에 근무하는 직원은 고객의 스트레스 해소 대상이 아니고, 죄인이 아닙니다. 직업이란 굴레로 인간 대접조차 못받으면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물염치한 고객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생겨 최소한의 예의, 도덕은 지키면서 고객의 필요사항을 요구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참고 보도자료

보도자료 2011년 11월 29일

인권위, <사업주 위한 여성 감정노동자 인권가이드>발간, 소비자 캠페인 전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헌병철)는 취약분야 여성인권 개선을 위해 '여성 감정노동자 인권 가이드'를 마련, 사업주에게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소비자단체와 함께 여성 감정노동자 인식 개선 캠페인을 전개합니다.(2011. 11.29. 10:00 여성감정노동자 인권 개선사업 브리핑)

1. 왜 여성 감정노동인가?

'감정노동(emotion work, emotional labor)'은 '업무상 요구되는 특정한 감정상태를 연출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행하는 일체의 감정관리 활동이 직무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노동유형'인데 간호사, 전화 상담원, 대형마트 점원, 판매원 등 대인서비스를 업무로 하는 노동자들이 공통적으로 해당합니다.

2010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약 2,400만명 중 제조업 종사자 약 400만명(17%)를 제외하고 '도매 및 소매업'에 약 340만명(14.48%), '숙박 및 음식점업'에 약 180만명(7.71%) 등 이른바 서비스 분야에 취업자 다수가 편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2010년 전체 취업자 약 1,400만명 중 약 301만명(30.02%)이 서비스분야와 관련된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종의 성비를 보면 '서비스 종사자'의 약 65%, '판매 종사자'의 약 51%가 여성입니다. 그러나 이들 여성 감정노동자의 인권실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올해 여성 감정노동자 현장 간담회 개최, 여성 감정노동자 인권 개선 가이드라인 제작, 소비자 설문조사를 하고 앞으로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하기로 한 것입니다.

2. 사례를 통해 본 여성 감정노동자의 인권 현실

인권위는 2011. 4. 부터 두달간 총 8회에 걸쳐 사업장이나 노동조합 사무실 등을 방문해 음식점 점원, 대형마트 판매원, 계산원, 전화 상담원 등 여성감정노동자 30여명과 심층면담을 했습니다. 그 결과 여성 감정노동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를 파악했습니다.

3. <사업주를 위한 여성 감정노동자 인권가이드> 발간

인권위는 현장간담회와 전문가회의 등을 거쳐 사업장에서 여성 감정노동자 인권을 위한 기준을 담은 <사업주를 위한 여성 감정노동자 인권가이드>를 11월29일 발간했습니다. 가이드북은 근무환경 개선 가이드라인, 업무 개선과 시스템 가이드라인, 새로운 제안 등 크게 3가지 분야로 이뤄져 있습니다.

먼저 근무환경을 위해서는 ▲영업시간 전·중·후 스트레칭 체조 도입, ▲서서 일하는 여성 감정노동자에 대한 의자·바닥매트리스 등 시설 제공, ▲컴퓨터 및 전화기 등 사무환경의 개선, ▲적절한 휴식시간과 휴게시설 확보와 심리적 지지를 위한 프로그램 등 사업주가 여성 감정노동자의 심리적·육체적 소진을 최소화하고 감정노동으로

인한 직무스트레스 해소 방안 등을 담고 있습니다.

4. '나는 여성 감정노동자에게 어떤 소비자?' 설문조사와 소비자 캠페인
인권위는 2011년 10월 수도권 시민 303명을 대상으로 여성 감정노동자와 관련한 소비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소비자단체와 함께 여성 감정노동자 인권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우선 11월29일 오전 11시 위원회 앞에서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와 공동으로 여성 감정노동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약속하는 서명운동과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인권위는 또한 내년부터 '여성 감정노동자 인권 향상 법제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는 아직 법적으로 미비한 여성 감정노동자 인권 보호 방안에 대한 제도 마련이 주된 내용이 될 것입니다.

사례 36



밀양송전탑 문제에 대해 인권위원회가 적극 나서기 바랍니다

기
타

상담 요지

뉴스를 보니 어제 밀양에서 밀양송전탑공사반대대책위원회의 움막이 경찰들에 의해 철거되었다고 합니다. 인권위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사건이 이미 발생하고 나서야 조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왜 인권위가 그들을 직접적, 실질적으로 보호해주지 않는지... 인권위는 왜 현장에 있던 할머니들을 보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도 인권위가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밀양 사건이 중요 현황인 만큼 인권위가 이 문제에 집중 해주길 바랍니다.

답변 요지

인권위가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을 귀담아 들겠습니다.

어제 인권위에서 조사관들이 밀양 현장에 나갔습니다. 현재 인권위도 이 사건에 대해 주시하고 있으며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인권위가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내담자의 의견을 상담서로 남기어 위원회에 전달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보도자료

보도자료 2014년 3월 20일

밀양 송전탑 관련 경찰 통행제한에 대한 의견표명

“인권침해 예방, 주민 생활과 통행 불편 없도록
경비구역 설정과 관리에 유의하는 것이 바람직”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밀양 송전탑 공사현장의 경비와 관련하여 경남 지방경찰청장에게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일상생활이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경비구역설정과 관리에 유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이번 의견표명은 밀양 송전탑 공사와 관련해 인권위에 다수의 진정이 접수되었고, 그에 따른 여러 차례 현장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마련한 것입니다.

밀양 송전탑 공사 반대대책위원회 사무국장 등 진정인들은 경찰이 2013. 10. 4. 부터 송전탑 공사 개시에 반대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84호, 89호, 109호, 126호 공사 현장에 접근하려는 주민과 시민단체 관계자의 통행을 제한하여 인권침해를 당하였다고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2013. 11. 13. 부터는 96호 송전탑에 접근하려는 주민과 시민단체 관계자의 통행도 제한하였다는 진정을 접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송전탑 공사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공사를 재개하기 전에 이미 공사 진입로에 운집하여 공사관계자와 경찰인력의 통행을 막는 등 경찰력이 개입하지 않을 경우 충돌이 발생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어 공사시설과 장비 등의 방호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현장의 통행을 제한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인권위 조사결과, 경찰은 84호 송전탑은 약 2.5km 전방, 89호 송전탑은 약 2.3km와 3.2km 전방, 109호 송전탑은 1.5km와 30m 전방, 126호 송전탑은 약 4km와 100m 전방, 96호 송전탑은 약 800m 전방에서 각각 통행을 제한하였습니다. 이 통행제한에 대해 인권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일반적 행동자유 및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에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경찰이 공사방해 등 범죄예방과 산악지대에서 연로자가 다수인 상황에서 주민을 보호해야 할 목적의 정당성이 있었던 점, 법원이 일부 주민들에 대해 공사현장 인근 토지 출입이나 교통을 막는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이 있는 점, 경찰이 현장 지형이나 공사 반대 시위의 양태를 고려하여 경비구역을 설정할 수 있는 점, 현재의 경비구역보다 더 적절한 구역이 있다고 판단할 자료가 부족한 점, 기본권 제한의 사유나 필요성에 비해 그 제한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입니다.

마을의 생활공간과 떨어진 곳으로 경비구역 설정 등 촉구

그러나, 경찰의 경비로 인해 주민들이 생활하는 마을에서 공사현장에 이르는 곳곳에 경비인력 배치와 검문 실시로 해당 주민들이 적지 않은 불편을 겪고 있고, 일부 공사현장의 경우 마을의 생활공간 인근에 경비구역을 설정하여 주민들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거나 송전탑 공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현하는 사람들과 마찰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등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밀양 송전탑 공사는 현재도 진행 중인 상황이라는 점에서 가급적 마을의 생활공간과 떨어진 곳으로 경비구역을 설정하는 등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공사현장 경비구역 설정 및 관리에 유의할 것을 경남지방경찰청장에게 촉구하기로 한 것입니다.

사례 37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해주세요

기
타

상담 요지

미등록 외국인에 대해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등록 외국인 문제로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미등록 외국인의 경우 불법이기 때문에 모든 혜택을 바라지는 않지만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들이 다치면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회사 대표로서 미등록 외국인들에게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해주고 싶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이야기를 해도 안 된다고 하여 인권위에 전화한 것입니다.

답변 요지

미등록 외국인에게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합니다.

지난 2011년, 위원회는 미등록 이주아동이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개선할 것에 대해 권고한 바 있습니다. 미등록 외국인에게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는 취지에 매우 공감합니다. 다만 이 사안은 법과 제도가 바뀌어야 하는 것으로 인권위에서 조치하기는 어렵습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인권위 정책검토 사안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인권위, 외국인근로자 의료비 지원사업 절차 개선 등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미등록 이주아동이 안정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정책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법무부장관에게 이주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해 ‘공무원 통보의무’ 면제 내용이 공공의료기관에 전파·확산되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2010년 기준 국내 거주 미등록 이주아동은 17,000명으로 추산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10 이주아동 교육권 실태조사>입니다. 이들은 미등록인 외국인 부모사이에서 출생하거나 외국인 부모가 국내 입국 후 초청해 미등록이 된 경우 등의 경로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한편, ‘아동권리협약’은 당사국에 아동의 체류자격의 적법성을 불문하고 도달 가능한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시킬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의료급여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르면 미등록 이주아동은 공공 및 일반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어 의료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2005년부터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원 절차에 미등록 이주아동 부모의 ‘전·현직 근로여부가 확인’되어야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국내에서 근로활동을 하지 않았거나 미등록 이주아동의 부모가 신분 노출을 우려해 이 단계를 밟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결국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원 범위도 ‘입원 진료’ 및 ‘당일 외래 수술’에 한하고 있어, 일반 진료, 예방접종, 건강검진 등의 경우는 지원되지 않으며, △진료기관 수도 77개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권리협약」의 국가의무의 이행을 통한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보장 및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미등록 이주아동이 자신의 체류자격의 합법여부, 신분의 노출 및 단속의 우려 없이 실제적으로 공공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상의 공무원의 통보의무를 공공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 및 그 관련자에 대하여는 면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의 미등록이주아동 교육권 보장 권고에 대해 ‘공무원 통보의무’를 교육공무원 외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 보건소 의사,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등에 대해 적용 유보 혹은 면제하겠다는 회신을 한 바 있습니다

사례 38



선거에 아이 사진을 허락 없이 사용해도 되나요?

기
타

상담 요지

지난 선거 때 제 아이의 사진이 한 선거후보자의 선거사무실과 선거운동차량에 커다랗게 붙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진은 후보자가 학교 앞에서 찍었고, 교사나 부모의 동의 없이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당장 사진을 내리라고 항의하기 위해 후보자의 선거사무실을 찾아갔는데, 선거사무실에 있던 사람들은 “뭐가 문제냐? 우리가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선거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왜 그러냐? 영광스러운 거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아이의 사진을 당장이라도 내리고 싶은 마음인데, 그들의 대응에 너무 화가 났습니다. 아이들을 지키겠다고 약속하고 다니는 후보자가 이런 태도를 보인다는 것에 더욱 화가 납니다.

답변 요지

개인에 의한 초상권침해는 인권위 업무영역이 아니어서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인권위는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조사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선거 후보자는 사인에 해당하며 인권위 조사대상이 아니어서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문의해 보았으나 각 기관에서도 조사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음을 전합니다. 한편, ‘당사자 동의 없는 신문광고로 인한 아동의 인격권 침해’에 대해 인권위가 시정권고 한 바 있습니다. 동 사건의 경우는 피진정기관이 지자체여서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침해로 인권위 조사대상에 해당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별 국가기관을 통한 구제가 되지 않는다면 법률상담기관에 문의하여 민형사상의 구제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당사자 동의 없는 신문광고로 인한 아동의 인권 침해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2010. 12. 21.부터 이틀간 피해아동의 얼굴 사진을 만나체 신체 사진과 합성하여 만든 무상급식 반대 광고를 신문에 게재함으로써, 아동과 그 보호자의 인권을 침해하였다.

판단요지

관련 국내법 및 국제인권법을 고려할 때 아동의 인격형성에 관한 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단순히 가해행위 뿐 만 아니라 인격형성에 방해가 될 행위도 하지 말아야 하고, 나아가 그 인격형성권 보호를 선도적으로 주도해야 할 적극적 의무까지 부여받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광고 이미지는 사회통념상 ‘옷을 벗어서 부끄럽다’는 것을 전형적으로 상징하는 우스꽝스런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래 집단으로부터 놀림을 받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정책홍보의 내용이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정책에 대한 찬반 여부와 연관되므로 초등학생인 피해 아동이 또래집단 내 선입관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 또한 열려 있다는 점에서 아동의 인격형성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책임이 있는 이 사건 피진정인 지방자치단체는 그 책임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이미지가 광고 게재 직후부터 인터넷 상에서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패러디되고 유포되었다는 점만 보더라도 또래 집단 혹은 일반 사회가 이 이미지를 바라보는 맥락은 피진정인이 예시한 외국 사례와 병렬적으로 비교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광고 게재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형성권을 침해한 인권침해 행위로 판단된다.

사례 39



요양병원에 대한 강력한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기
타

상담 요지

오늘 새벽 장성 요양병원 화재로 많은 노인들이 사망하고 피해를 당했습니다. 노인들이 침대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피해가 더 커졌습니다. 요양병원에서 노인을 침대에 묶어놓는 것은 여러 번 문제가 되었는데 이번 기회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법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답변 요지

인권위는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정신보건시설, 노숙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성매매피해자등 지원시설, 갱생보호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 다수인보호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조사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의료법에 의해 설립된 요양병원은 인권위 조사대상 다수인보호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요양병원에 대한 직접 조사가 어렵습니다.

다만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장애인이라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려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 보도자료

보도자료 2014년 6월 3일

장성 요양병원 화재 참사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

- 급속한 고령화사회 노인 요양 안전방안 재구축 시급 -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에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세월호 참사’, ‘서울 지하철 추돌사고’, ‘고양 버스터미널 화재’, 그리고 ‘장성 요양병원 화재’ 사건들과 관련하여 깊은 애도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우리 「헌법」 제34조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규정하면서,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하며 특히, 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여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 제3조에서도 ‘모든 사람은 생명, 자유, 인신의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난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는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으로 국가는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와 이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 조치를 마련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장성 요양병원 사례와 같이, 노인요양병원은 치매, 뇌졸중, 각종 노인성질환으로 인한 장기요양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거동이 어려운 노인들이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신체적 특성 및 질환을 고려한 법적·제도적 기준이 정비되지 않고 있어, 현재 노인요양병원의 인력구조와 안전기준으로는 이와 같은 참사를 방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시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노인요양병원을 포함한 노인요양시설과 관련된 의료법 및 안전 관계 법령과 기준들을 노인의 신체적 특성 및 질환을 고려하여 시급히 재정비하여야 하며, 노인 인권적 관점에서 노인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관련 시설 및 제도가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미비점을 파악하여 법적 및 제도적 장치들을 보완하고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인권위는 현재 진행 중인 노인요양병원 인권상황 실태조사(2014)의 결과를 반영하여 정부에 정책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며, 노인요양기관 및 서비스 과정 전반에 걸쳐서 정책검토를 실시하는 등 노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차별행위 분야

01. 성희롱
02. 장애
03. 나이
04. 성차별
05. 학력
06. 사회적신분
07. 종교
08. 학력
06. 사회적신분
07. 종교
08. 전과
09. 임신출산
10. 가족형태

사례 40 진료과징에서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사례 41 직장에서 성희롱신고를 했는데 피해자인 저를 해고했습니다

사례 42 채용면접 중에 엉덩이가 예쁘다고 했습니다

사례 43 공공기관 비정규직인데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사례 44 여자축구선수에 대한 성별진단 요구는 부당합니다

사례 45 교수님이 껴안고 제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사례 40



진료과정에서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상담 요지

약 5년 전 성형외과에서 시술을 받기위해 마취제를 맞았습니다. 침대에 누운 상태였는데 의사가 키스를 했습니다. 당황해서 마취된 척 했습니다. 당시 진료실에는 저와 의사밖에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보톡스를 맞았는데 그때도 마취 주사 후에 의사가 저의 가슴을 만졌습니다. 당시에는 간호사들도 있었는데 얼굴을 의사에게 맡겨놓은 처지라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생각 할수록 분해서 다시 진료를 받으러 갔을 때 간호사들에게 의사가 저의 가슴을 만진 사실을 언급했더니 간호사들이 봤다고 인정했으며 다른 환자들에게도 그런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용서가 되지 않아 의사의 처벌을 원합니다.

답변 요지

진료 중 의사가 환자에게 행한 성희롱은 인권위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진료 중에 환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했다면 인권위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진료 중에 환자의 가슴을 만진 일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것이 성희롱인지에 대해 판단합니다. 인권 위 조사결과 성희롱으로 판단되면 시정권고 혹은 권리구제 권고를 하게 됩니다. 다만 인권위의 권고는 처벌이 아니며 법적 강제력을 갖지 않습니다.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면 경찰에 고소해야 합니다.

유사 사례

요양병원이 남여환자를 동일병실에 입원시켜 성적수치감을 느껴요.

어머니는 80대로 청각장애 3급과 고관절 장애로 요양병원에 입원했고 인지능력은 90% 정도입니다. 병원에서 가족에게 통지도 하지 않고 어머니의 동의만으로 병실을 남성환자들 있는 곳으로 옮겼습니다. 어제 병원을 방문하니, 남성 환자들이 속옷도 벗고 대변을 보고 있었습니다. 모두 남성 환자였고 어머니 외에 여성 환자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인지능력이 있는 여성노인을 대소변을 받아내는 남성들과 한방에 거하게 하여 성적수치감을 준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바랍니다. 간호사실에 항의하니 급한 환자가 왔는데 자리가 나지 않아 옮길 수 밖에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사과하지도 않았습니다.

치료도 안하면서 상의를 탈의시켜 치욕스러웠어요.

아내가 병원 응급실에 실려 갔고 저는 10분 정도 늦게 도착했습니다. 이미 심전도 검사가 끝났는데 아내는 상반신이 탈의된 상태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남자 치료사가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검사가 끝났으면 옷을 내려야 될 것 아니냐고 했더니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이라고 하자 그제야 옷을 내렸습니다. 잠시 후 다시 들어가 보니 또 부인의 상반신이 탈의되어 있었고 이 모습을 남자치료사가 보고 있었습니다. 부인 말로는 아무런 검사도 하지 않고 남자치료사가 옷을 올리고 쳐다보기만 했다고 합니다. 간호사에게 항의해서 그 남자치료사로부터 무성의한 사과를 받긴 했으나 아내와 저는 치욕적이었습니다.

참고 보도자료

보도자료 2014년 9월 18일

인권위, 진료과정의 성희롱 예방 위한 안내서 첫 발간

— 성희롱에 대한 정의, 판단기준, 예방법 등 담아 —

국가인권위원회는 진료과정 중 의료진과 환자간의 성희롱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진료과정 성희롱 예방안내서」를 처음으로 발간(2014. 9. 17.)해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동 안내서는 ‘성희롱의 법적 정의’, ‘진료과정의 성희롱 판단 기준’, ‘구체적인 사례와 성희롱 발생 시 해결방안’ 및 ‘예방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진료과정 중 의료진과 환자 사이에 발생하는 성희롱 진정 사례가 꾸준히 증가한 데 반해, 양측 간 진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에 대해 마땅히 판단할 기준이나 예방법이 없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인권위가 실시한 ‘진료과정의 성희롱 예방기준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의료기관을 이용한 응답자의 11.8%가 진료시 성적 불쾌감이나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답변 반면, 이에 대해 의료진들은 진료에 필요한 언동이 성희롱으로 오해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답해 환자와 의료진간의 뚜렷한 인식차가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인권위는 이번에 발간된 성희롱 예방 안내서가 의료진이나 환자 모두에게 성희롱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알리고, 환자와 의료진 사이의 인식격차를 줄이는 등 진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 예방 교육자료로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인권위는 이를 위해 의료기관 이용자 및 의료기관에 「진료과정 성희롱 예방안내서」를 제공할 예정이며, 인권위 홈페이지(<http://humanrights.go.kr> : 인권정보·정책 > 공보·발간자료) 일반단행본)에서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보도자료 2014년 8월 13일

인권위, “○○병원 직장내 성희롱권고 불수용” 공표

－ 성희롱한 병원 총무과장, 특별인권교육 및 손해배상 권고 불수용 －

인권위는 2013. 12. 19. 직장에서 부하직원을 성희롱한 경상남도 ○○군 소재 ○○병원 총무과장에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하고, 피해자인 진정인에게 1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 해당 병원장에게 ‘성희롱 예방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유사행위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병원장은 2014. 6. 13. 성희롱 예방교육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성희롱 대응 매뉴얼을 만들겠다는 내용의 권고수용 의사를 밝혔으나, 성희롱의 당사자인 총무과장은 2014. 4. 8. 이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인권위에 통보하였습니다. 피진정인인 총무과장에 의하면 “○○지방고용노동청 ○○고용지청으로부터 성희롱에 대한 조사를 받았으나 성희롱 판단을 받지 않았고, ○○경찰서에서도 조사받았으나 직장내 성희롱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 받았음에도, 인권위가 성희롱으로 인정하고 권고한 것은 사법적 판단을 무시한 조사와 결정”이라며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피진정인의 주장과 달리, ○○고용지청의 조사결과는 진정인이 담당 근로감독관의 출석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아 성희롱에 대한 판단 없이 진정이 종결된 것이며, 진정인이 피진정인을 ○○경찰서에 고소한 것은 ‘폭행’혐의에 대해서 고소한 것으로서 애초에 성희롱 혐의는 경찰의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피진정인은 위 ‘폭행’혐의에 대해 2014. 1. 24.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7. 16. 법원에서도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2항 및 제25조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실을 공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끝.



직장에서 성희롱신고를 했는데 피해자인 저를 해고했습니다

상담 요지

본부장의 성희롱을 사장에게 말했더니 조치는 하지 않고 해고했습니다.

본부장이 새로 부임하여 회식을 했습니다. 본부장이 해수욕을 가자고 하며 자기들은 여직원들 비키니 입은 것이나 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직원들을 애인 보듯 동생 보듯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듣기가 괴로워서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본부장이 저의 팔을 잡아당기며 자기 옆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뿌리치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했는데 본부장이 자신이 이겼다며 양 손을 들어 제 허벅지에 손을 얹었습니다. 다음 날, 사장에게 본부장의 성희롱 사실을 설명하고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사장이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의시간에 본부장이 자신이 회식자리에서 술이 너무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장이 저를 보며 이제 사과했으니 되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이 한 말은 사과가 아니니 회사에서 정식으로 조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장이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고 주말이 지나 어제 출근하니 그만 나오라고 했습니다.

답변 요지

업무연관성을 가진 사람에 의한 성희롱은 인권위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직장상사의 성적언동으로 성적수치심을 느낀 경우에 인권위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피해자에 대하여 회사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해고 등 불리하게 대했다면 성희롱 조사와 동시에 인권위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인권위의 성희롱조사는 피해자관점과 합리적 사람의 관점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성희롱 가해자가 의도나 고의가 없었더라도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편 직장내 성희롱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유사 사례

남자 조리부장의 성희롱이 도를 넘었습니다.

남자 조리부장이 여자 조리원을 상대로 심각한 성희롱 및 성추행을 하고 있습니다. “OO야, 나 화장실 가니까 고추 떨어 가야지.”라고 하거나 청소를 하고 있으면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갖다 대고 성행위를 하는 모양새를 하고, 당근이나 무를 성기모양으로 깎아 조리원들 입에 넣으면서 빨라고 합니다. 옆에서 보기에 너무 수치스러워 대표이사에게 이야기했는데 그 후부터 조리부장이 심하게 괴롭혀 며칠 전 그만두었습니다.

직장 상사가 핸드폰으로 야동을 보여주고 소리를 들려줍니다.

저는 사내 결혼으로 같은 회사에 저와 아내가 같이 근무합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에 상사가 소리가 다 들리도록 핸드폰 야동(성관계하는 장면)을 두 차례 반복해서 틀었습니다. 여성의 신음소리가 크게 났으며 회사에 인도네시아 근로자가 있는데 상사가 그들한테는 내용을 이미 보여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직장 대표로부터 성희롱 문자를 받았습니다.

보름 전에 회사대표에게 급여를 인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모님과 의논을 해서 답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전 갑자기 문자로 “개인적으로 1시간만 내주면 매주 10만원을 지원해주겠다. NO해도 예전처럼 지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나고 하니까 “미안하다, 없었던 일로 하자.”고 했습니다. 성희롱으로 신고를 하겠다고 하니 조용히 넘어가자고, 사람을 좋아하면 안 되냐고 합니다. 평상시 행동도 그렇고 야한 얘기도 자주하고 여자관계도 복잡한 사람입니다.

남자화장실은 남자 청소미화원이 청소해야 합니다.

남자화장실 청소를 여자 미화원이 청소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남자화장실 청소는 남자가, 여자화장실 청소는 여자가 해야 할 것입니다. 남자화장실에 여자미화원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 놀라고 쑥스럽고 창피하기도 합니다. 청소하는 여자미화원도 마찬가지로 쑥스럽고 어색하기도 하고 성적 수치심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루빨리 이 사안이 개선되길 바랍니다.

회사 탈의실에 CCTV가 있어 성적굴욕감을 느껴요.

아파트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입니다. 관리사무소 2층에 휴게실이 있습니다. 휴게실에서 휴식, 식사, 수면, 탈의 등을 합니다. 그런데 휴게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 관리사무소 뿐만 아니라 경비원들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탈의 장면이 그대로 노출됩니다. 미화원 12명이 모두 여성인데 탈의를 할 때마다 성적 굴욕감을 느낍니다. 휴게공간이기 때문에 잘 수도 있어야 되는데 CCTV에 그대로 노출 되다보니 대부분은 휴게공간에서 쉬지 못하고 밖을 배회합니다.

식당 관리이사의 직원 성희롱

진정요지

진정인은 중식당의 매장관리를 담당하는 과장이며, 피진정인은 같은 식당 관리이사이다. 201×. ×. 초부터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고 “사랑한다.”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성적 언동을 하여 201×. ×. ×. 진정인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구제를 원한다.

판단요지

어떠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간의 업무 관련성, 언동의 사실관계, 언동이 행해진 장소 및 상황, 그 언동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반응 등을 종합하여 상대방이 그러한 행위를 원치 않았고 불쾌감을 느꼈는지, 합리적 여성의 관점에서도 성적 함의가 있고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줄 만한 행위였는지 등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기혼상태인 피진정인이 미혼의 여성 부하직원에게 일방적으로 “좋아한다.”고 얘기하거나 밤 늦은 시간에 전화를 하고 “사랑한다.”는 문자를 보내는 등의 언동을 한 것은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부하 직원이 아닌 사적인 관계에서의 여성으로 생각하는 언동이라고 밖에 볼 수 없어, 합리적인 여성의 관점에서 볼 때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사례 42



채용면접 중에 엉덩이가 예쁘다고 했습니다

상담 요지

채용면접 중에 사장이 엉덩이가 예쁘다고 했습니다.

엇그제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사장이 저에게 두 번 결혼할 상이라고 하며 엉덩이가 예쁘게 생겨서 어쩔다 등의 말을 했습니다. 사장이 저의 손을 만지고 끌어당겨 자신의 가슴에 대기도 했습니다. 조그만 회사라 면접대상은 4명인데 1:1 면접이었습니다. 사장이 바로 근무하라고 해서 남아 있다가 아무래도 이상하여 가겠다고 하고 와버렸습니다.

답변 요지

채용과정의 성희롱도 인권위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채용면접과정에 발생한 성희롱 피해에 대해서도 인권위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인권위의 성희롱 조사는 우선 그러한 언행이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합니다. 1:1 면접과정에서 발생한 성희롱의 경우 그러한 언행이 발생했는지의 확인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러한 언행이 있었음이 확인되면 그러한 언행이 성희롱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판단합니다. 인권위 성희롱 판단에는 직접 증거 외에 정황증거도 참고하여 조사합니다.

유사 사례

면접관이 면접 중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해서 면접에 대한 두려움마저 생겼습니다.

채용면접을 보았습니다. 면접관은 남성 4명이고 면접자는 여성 4명과 남성 2명이었습니다. 면접관 중 한 명이 "중국어를 잘하신다 해서 물어보는 건데 곱해해서 듣지는 말고요, 중국어로 콘돔이 뭐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중국어로 "安全套" 라고 말하자 그 면접관은 "그거 은어 아니예요? 젊은이들끼리만 쓰는 말인데. 뭐 중국에서 그런 곳에도 가보고 그랬나보네." 라며 마치 직업여성 취급하듯 말하여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입사면접 시 구직자에 대한 성적 발언은 성희롱”

국가인권위원회는 입사면접 과정에서 면접관의 발언으로 인해 구직자가 성적굴욕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해당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과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채용 면접과정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은 채용여부에 결정적 권한을 가진 회사 대표나 면접관이 절대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성적 언동을 한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성희롱은 대부분 남녀 간의 불평등한 권력 관계나 직장 등 근로관계에서 성적 편견과 차별의식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진정인의 경우와 같이 채용에 결정권을 가진 회사 대표가 잠정적인 피고용인의 지위를 갖는 면접지원자에게 성적 언동을 하는 것은, 회사 대표로서 직장 내에서 여성 직원들이 성희롱 및 성차별적 편견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해야 할 책임을 외면하고 직접 성적인 언동을 한 경우로 더욱 경계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부 기업들이 위기상황 대처 능력을 확인한다거나 개인의 인성과 태도, 가치관 등을 알아본다는 이유로 이른바 ‘압박 면접’을 채택 시행하고 있는데, 면접 시 여성 면접자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업무와 전혀 무관한 사생활 또는 성희롱 질문을 하여 면접자들에게 성적 굴욕감을 주는 사례가 종종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구직자를 포함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강화, 성희롱 사례집 발간·배포, 성희롱 브로셔 및 포스터 제작·배포, 정책 검토 및 실태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구직과정과 면접과정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사례 43



공공기관 비정규직인데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상담 요지

직장상사가 자꾸 몸을 밀착시키는 행동을 합니다.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싱크대와 정수기가 나란히 있는데 공간이 좁아서 물을 마시려면 설거지 하는 사람과 엉덩이가 닿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잠깐 기다렸다가 설거지가 끝나면 정수기 물을 먹는데 한 상사는 제가 설거지 할 때마다 물을 마시겠다고 옵니다. 그러면 엉덩이가 닿게 되니 저는 고무장갑을 낀 채로 도망을 가거나 피해 있습니다. 어제는 자신의 컴퓨터가 안된다며 제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거의 뒤에서 안다시피 하는 형상으로 저에게 몸을 밀착하여 작업했습니다. 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자리에 앉아서 편히 하세요.'라고 말을 하고 다른 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제가 냉장고에서 물 꺼내려고 하는데 그 상사가 냉장고 있는 방으로 따라 들어오더니 자기도 냉장고에서 꺼낼 것이 있다며 거의 덮치다시피 하는 모습으로 제게 몸을 밀착했습니다. 늘 일부러 몸을 밀착시키려는 느낌이 들어 그때그때 피하기는 하지만 매우 불쾌합니다. 그러다보니 회사에 출근하기도 무섭고 어제 일로 충격을 받아 몸이 안 좋아 휴가를 내고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답변 요지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상사의 행동은 진정하여 인권위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사의 성적 언동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진정하여 인권위 판단을 받아 보십시오. 인권위 성희롱 조사는 피해자의 관점과 합리적인 사람의 관점이 적용되며 성희롱 가해자의 의도나 고의가 없었다 해도 성희롱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인권위의 성희롱 사실의 확인은 직접 증거 외에 정황증거도 참고하여 조사합니다.

유사 사례

시의회 소속 전문위원이 엉덩이를 만지고는 딸 같아서 그랬다고 얼버무렸습니다.

시의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입니다. 한 의원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수석전문위원이라는 분이 방문했습니다. 그분이 제가 누군지 물으니 보좌관이 “우리 아르바이트생이다. 얼굴도 좋고 몸매도 좋다. 내 딸이다.”라고 농담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수석전문위원이 제 다리를 보려는 듯 시선을 위에서 아래로 훑었고 칸막이로 인해 제 다리가 잘 보이지 않자 제 쪽으로 왔습니다. 그리고는 “무슨 이렇게 큰 딸이 있냐? 딸인지 아닌지는 내가 보고 만져보면 안다.”라고 하더니 자신의 오른손으로 저의 왼쪽 엉덩이를 위아래로 두 번 쓱쓱 만졌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 “왜 그러세요? 뭐하시는 거예요?”라고 항의하자 “이빠서 만졌어. 아빠뻘인데 뭘~ 허벅지 만진건데 뭐, 귀여워서 그런거야.”라고 했습니다. 제가 정식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했지만 성의없이 “아이... 사과할게. 그래, 그래, 미안해. 미안해. 그런데 아빠뻘인데 어떠냐? 딸 같아서 그런 거다.”라고 얼버무렸습니다. 그리고 의원실의 보좌관이 그 분의 이름이나 직함도 알려주지 않아 신고를 막으려고 했습니다.

경비반장이 동성의 젊은 남자직원들을 성추행합니다.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비 반장이 2~3년에 걸쳐 장난삼아 경비업무를 보는 젊은 남자 직원들을 계속해서 성추행하고 있습니다. 엉덩이도 만지고, 성기도 만진다고 합니다. 성추행사건이라면 형사사건인데 피해자들은 형사사건은 싫고 회사에서 징계를 내려달라고 합니다. 익명성을 보장하면서 가해자에게 면직처분도 내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 보도자료

보도자료 2010년 8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 사회지도층 성희롱 관련 의견 표명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사회지도층의 성희롱 사건과 관련하여 잇따른 시정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2010. 7. 6. 제주 A중학교장이 학생을 성희롱한 사건에 대해 특별인 권교육 수강 및 소속 교육청에 피진정인에게 경고 조치할 것을, △2010. 7. 23. 해병 고위급 장교에 의한 병사 성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해군참모총장에게 가해자를 수사의뢰 하고, 국방부장관 등에 재발방지 및 피해자 신변보호를, △2010. 8. 20. 지방자치단체장이 계약직 여직원에게 누드사진 찍을 것을 종용하고 지방의회 의장이 이에 동조한 사안에 대하여 성희롱임을 인정하고 피진정인들에게 손해배상 및 특별인권교육 수강 등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성희롱은 폭력이며 심각한 인권침해입니다. 성희롱은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줌으로써 피해자의 신체 및 정신건강 뿐 아니라 일상생활이나 직업생활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는 성희롱을 법으로 금지하고 규제하는 것입니다. 특히 국가기관 등 공공부문은 성희롱을 근절하고 예방하는데 앞장서야 할 엄중한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장, 학교장, 군 고위급

장교의 성희롱·성폭행 및 최근 언론에 보도된 국회의원 성희롱 사건 등 소위 사회지도층에 의해 행해지는 성희롱 등은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은 성희롱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사실파악이나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성희롱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국회, 국가기관, 지자체 등 공공부문에서는 성희롱이 재발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성희롱 발생 시 철저한 사실파악과 함께 이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성희롱 조사·구제기관으로서 이에 대해 깊은 우려와 관심을 표하며 진정사건 조사 및 기획조사를 통하여 성희롱을 적극적으로 시정해 나갈 것이며, 성희롱 예방 및 시정을 위해 사회 곳곳의 성희롱 취약분야에 대한 적극적 실태파악과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하고 그동안의 위원회 권고사례를 적극적으로 전파하는 한편, 각 기관과 협조하여 고위 공직자 등에 대한 성평등 인식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성평등 교육이 실시되도록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여자축구선수에 대한 성별진단 요구는 부당합니다

상담 요지

감독 6명이 한 여자선수가 여성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선수는 국가대표로서 국제경기도 소화하는 등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리그를 치러왔는데, 올 시즌에서 좋은 성적을 내자 감독들이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자선수는 여자축구계에서 계속 활동해왔고 국가대표로서 국제경기도 소화한 사실이 있는 만큼 국제적으로도 검증된 선수인데, 논란의 여지조차도 없는, 여성에게 ‘여성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성별진단을 요구했습니다.

답변 요지

성희롱 여부에 대한 인권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여성 축구선수를 진단하여 의학적 방법으로 여성인지 남성인지를 명확하게 판단해 달라는 요청으로 성적수치심과 성적 모멸감을 느꼈다면 진정하여 인권위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권위는 감독들이 해당선수의 성 정체성을 의심하여 성별진단을 요구하는 언행을 한 사실이 있는 지 여부와 만약 그러한 언행을 했다면 ‘성별진단’ 요구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의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게 됩니다.

유사 사례

축구부 감독이 학생선수의 어머니들에게 성희롱 합니다.

중학교 축구부 감독이 아이들을 볼모로 학생 엄마에게 밤12시 넘어 전화하여 “잘해보자, 남편 몰래 만나자, 아이 하나 축구 못하게 하는 것은 일도 아니다.”고 얘기하고, 학부모들에게 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다른 학교로 갔는데 다른 학교에서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감독생활을 못하게 해주길 바랍니다.

참고 보도자료

보도자료 2014년 2월 24일

“여성축구선수에 대한 성별진단 요구는 성희롱”

— 대한축구협회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한 징계조치,
문화체육부장관, 대한체육회장 등에게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2.24.(월) 전원위원회에서, 실업팀 감독들이 여성 축구선수에 대해 성별진단을 요구하고,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2014년도 경기를 보이콧하겠다고 한 것은 여성의 인격을 침해하는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피진정인들과 관련 기관 등에 아래와 같이 권고하기로 의결했습니다.

- ▷ 대한축구협회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한 징계조치 권고,
- ▷ 문화체육부장관, 대한체육회장, 대한축구협회장, 한국여자축구연맹회장에게 재발 방지대책 마련 등 권고

진정인들은 해당 여성 선수가 13년간 축구선수로 등록하여 활동 중이지만 서울시청을 제외한 6개 실업팀 감독들이 피해자의 성별 논란을 제기하고, 2013. 11. 4. 한국여자축구연맹에 ‘출전 여부를 정확히 판정하여 주지 않을 시 2014년 시즌을 모두 출전을 거부한다.’는 의견을 전달하였는데, 논란의 여지조차도 없는 여성에 대해서 여성이 아니라며 성별 진단을 요구하는 것은 인권침해이자 언어적 성희롱이라며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 피진정인들이 ‘성별 진단’을 요구하여 성별 논란을 야기한 것은 피진정인들이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성희롱 행위를 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선수는 본 사건의 충격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훈련장에서 감독들을 마주칠까 두려워 훈련에 참가하기 꺼려진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피진정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성적 굴욕감을 느껴 한창 역량을 발휘하고 훈련에 몰두해야 할 피해자가 크게 위축되는 등 직업 선수로서의 커리어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는 바, 이는 전형적인 성희롱 사건에서 나타나는 피해 특성과 일치하며 이러한 피해를 구제하는 것이 성희롱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입니다.

인권위는 이상과 같은 이유로 본 사건에서의 ‘성별 진단’ 요구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의 ‘성희롱’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끝.



교수님이 껴안고 제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비였습니다

상담 요지

대학 졸업반입니다. 친하게 지내던 교수와의 면담을 끝내고 나오려는데 교수가 저를 안더니 자신의 얼굴을 제 얼굴에 비였습니다. 그 일이 있고나서 해당 교수를 피하고 있는데, 교수가 저를 찾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교수방으로 오라고 합니다.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교수를 징계하여 학교에서 졸업할 때까지 안보고 싶습니다.

답변 요지

교수의 성희롱은 인권위 조사대상에 해당합니다.

교수의 학생 성희롱에 대해서도 인권위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성희롱으로 판단되면 인권위에서 시정권고 혹은 권리구제 권고를 하게 됩니다. 권고의 내용은 인권교육부터 손해배상까지 다양합니다. 다만 인권위 권고는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권위의 성희롱판단이 있는 경우 학교에서 해당 교수에 대한 징계를 내릴 가능성은 있으나 인권위가 교수에 대한 징계권을 갖지는 않습니다.

유사 사례

교사가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여성과 남성의 성기를 예로 들어 설명을 했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고 스카우트 활동을 합니다. 야영을 갔는데 교사가 4, 5, 6학년 학생들이 다 있는 데서 부탄가스 사용법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부탄가스의 튀어나온 부분을 구멍에 넣어야 한다며 여성과 남성의 성기를 언급하며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성희롱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교사가 여학생들을 성희롱합니다.

고등학교 교사가 여학생들에게 “입술이 앵두 같다, 종아리가 예쁘다, 손잡고 가자”는 등의 말을 합니다. 작년에 1학년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을 하여 교육청에 문제제기 했습니다. 그런데 교장이 내년에 정년퇴임이라 문제를 만들지 않고 해당 교사를 여학생반 수업에서 교사를 빼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다시 1학년 여학생들에게 계속

성희롱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교사는 작년에도 교육청에 민원을 넣었지만 그냥 넘어갔다면서 아무리 민원을 접수해도 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다닙니다.

교장의 성희롱 발언이 수위를 넘었습니다.

남녀공학 고등학교에서 한 여학생이 지각을 했는데 교장이 “너 치마 벗고 엉덩이 한번 맞으면 봐주겠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피해 여학생은 성적수치심을 심하게 느꼈고, 교장은 성희롱 사건을 은폐하려고 지인을 동원하여 피해 여학생 부모에게 가서 “사건을 크게 만들지 말자. 1학년 여학생인데 괜한 소문에 휘말리면 아이가 학교 다니기 힘들 수 있다.”라는 식으로 말하며 없던 일로 하자고 권했다고 합니다. 피해 여학생은 그 일로 지금 학생들 사이에 이상한 소문에 시달리는 등 2차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남녀공학이라 2차 피해는 피해학생에게 매우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피해 여학생은 교장에게 사과만 들어도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거라고 합니다.

참고 보도자료

보도자료 2012년 12월 12일

〈대학교 성희롱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 최근 3년간 성희롱·성폭력 사건접수 지속적 증가세 -
- 학내 성폭력 대처 전담인력 배정은 7% 불과 -

실태조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학교 성희롱·성폭력 현황을 토대로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해 2012. 5. ~ 10.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연구책임자 신상숙)에 의뢰해 전국의 대학교(4년제, 2년제 등)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상담기구 설치 대학 26%, 연간예산 1천만원 미만 60%로 매우 열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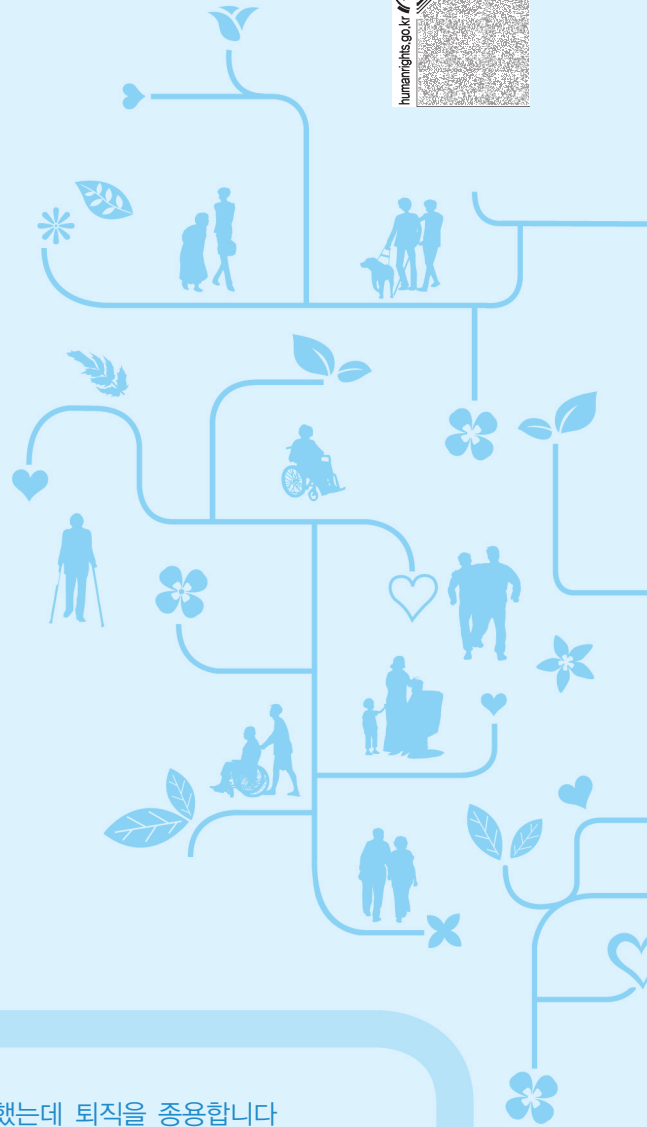
실태조사 결과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학교의 대처 역량과 관련하여 별도의 성희롱·성폭력 상담소를 두고 있는 대학은 전체의 약 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담기구의 연간 예산도 1천만원 미만인 경우가 60% 이상에 달하는 등 관련기구의 운영에 있어 인적·물적 여건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1년 상담건수 집계 결과, 별도의 상담소가 설치된 대학에서는 비교적 상담이 활발한 반면, 한 건도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전체의 50%에 이르렀습니다.

교수-학생간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 처리 가장 어려워

한편, 학생-학생 간 사건이 가장 빈도가 높은 데 비해서 실제 사건 처리가 가장 어려운 유형으로 꼽힌 것은 교수-학생 등 수직적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피신고인(가해자)이 교수 등 고위직인 경우 학내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교원의 신분보장을 위한 법, 제도 등으로 학교 당국이 가해자 징계에 소극적이 되기 쉽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피신고인(가해자)이 피해자에 대해 악의적인 소문을

유포하여 피해자가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만들거나 학교 당국의 사건 조사·처리 지연으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는 사례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실태조사 연구팀은 학내 성희롱·성폭력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학교 당국의 확고한 원칙과 의지, 관련 예산과 전문성을 가진 인력의 확보,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원활한 피해구제 조치를 가능케 하는 자율성에 입각한 피해구제 절차 운영을 강조함과 동시에, 개별 대학의 노력만으로는 사건처리에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하여 비밀 보장 원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 정부기관이 유사사례에 대한 처리경험을 축적하고 관련 법적·실무적 정보 등을 공유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02 장애

- 사례 46 공공기관에서 산재로 장애가 발생했는데 퇴직을 종용합니다
- 사례 47 장애인이 임금을 갈취당하고 폭행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 사례 48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부당했습니다
- 사례 49 장애인은 청사에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 사례 50 사전투표에선 전자투표용지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사례 51 시내버스가시님이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동승을 거부했습니다
- 사례 52 초등학교에서 특수교육보조인력교사를 폐지한답니다

사례 46



공공기관에서 산재로 장애가 발생했는데 퇴직을 종용합니다

상담 요지

공공기관에서 산재로 장애가 발생했는데 퇴직을 종용합니다.

공공기관에서 측량업무를 20년간 했습니다. 그러다 측량업무 중에 교통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서 2년간 산재로 병가휴직하고 얼마 전 복직했습니다. 현재는 사고로 인해 뇌병변 장애 3급이 되었습니다. 말단의 일이라도 시켜달라고 요청했으나 관리자가 안된다며 지방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원거리 발령으로 가족과 헤어지게 되었고 장애상태에서 혼자 지내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권고사직을 강요하고 있고 그만두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답변 요지

장애를 이유로 고용상 차별을 당했다면 진정하여 인권위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산재로 장애를 갖게 된 근로자에게 편의를 제공하지 않고 원거리 발령과 사직을 강요한다면 인권위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유사 사례

아파트 감사가 장애인 미화원과 경비를 해고한답니다.

용역회사 소속의 미화원으로 지체장애 4급입니다. 아파트에서 미화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아파트의 감사가 장애인이 일하는 것을 반대하여, 관리소장이 3월 말까지 일하라고 합니다. 미화원이 총 30명 정도 되는데, 장애인 남자 두 명은 이미 2월 말에 해고되었고 현재 장애인 여자 3명이 있는데 모두 해고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경비들도 해고되었습니다. 용역회사에서는 다른 아파트에 배정해주겠다고 하며, 저도 이 아파트에서 계속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장애인들이 아파트의 감사 때문에 피해를 당하고 있으므로 조사를 원합니다.

장애 판정을 받았다고 직권면직 되었습니다.

저는 소방서에서 근무하던 중 가족여행 후 귀가하다가 차량추돌사고로 요추 1번 골절에 의한 완전 하반신 마비로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았고 휴직했습니다. 장애가 완치되지 않더라도 화재진압 등 현장업무를 제외한 기타 행정 및 내근업무를 수행하는데는 의학적

으로 문제가 없는 상태라는 주치의의 진단서를 토대로 복직을 신청하였으나 소방서에서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2호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직권면직처분을 했습니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취소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 결정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2010년 4월 9일

장애를 이유로 한 해고

진정요지

진정인은 ○○○공사에 근무하던 중 2004. 10. 업무상 과로에 따른 뇌출혈로 인해 사지 일부가 마비되어 산재판정을 받은 장애인으로, 2년간의 공상휴가를 거쳐 복직하여 근무하다가 2009. 4. 30. 장애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피진정인들로부터 직권면직을 당했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므로 복직을 원한다.

판단요지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한 직권면직을 결정하면서 진정인의 장애와 업무수행간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 판단 없이, 단순히 진정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2급5호의 장애급호를 받아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직권면직을 한바, 이는 정당한 사유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사례 47



장애인이 임금을 갈취당하고 폭행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상담 요지

제가 아는 농장에 지체장애2급인 사람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년 동안 노임 한 푼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했지만 ‘혐의 없음’ 결정을 받고 피해자는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농장주는 장애인협회 임원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장애인을 폭행하고 밥도 굶겼으며 농장에서 노동착취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 요지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노동력을 착취한 경우 인권위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임금 등 금전갈취를 하거나 강제노동을 시킨 경우 인권위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인권위에 진정하여 장애인차별인지 판단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유사 사례

지적장애인이 근 20년째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건을 납품받는 공장에 지적장애인이 일하고 있습니다.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제대로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장주가 비정기적으로 5만원 정도씩 주는 것이 다입니다. 피해자는 결혼도 하고 애도 있는데, 배우자도 지적장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항의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피해자는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냉방에서 살고 있으며 밥도 제때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그만두고 나오라고 해도 피해자는 공장주에게 아무 말도 못하는 등 자기방어력이 부족하여 그만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라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급여도 안줍니다.

저는 한쪽 눈이 없어 봉합을 했습니다. 장애 때문인지 선주가 뱃일을 시키고 임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글씨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선주에게 종이를 받았는데 무슨 글자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화가 나서 경찰에 신고하려고 선주에게 이름을 알려 달라고 해도 선주가 절대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도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임금을 주고 저만 임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인권위에서 장애인의 노동력을 착취에 대해 선주를 조사해주면 좋겠습니다.

지적장애인에 대한 금전적 착취 및 폭행 등

주문

1. 검찰총장에게,
피조사자 김○○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와 피해자 김○○의 ○○생명 보험금 34, 997,825원을 횡령한 행위에 대해 고발한다.
2.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피조사자 김○○이 피해자 김○○에게 퇴직금을 미지급한 행위, 임금을 체불한 행위 등에 대해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3.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에게,
피조사자 김○○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 김○○가 입은 정신적·육체적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도록 법률구조를 요청한다.
4. 직권조사 내용 가항 중 폭행 감금에 관한 사항은 조사종결한다.

직권조사 배경

- 가. 2012. 5. 2. 장애인단체에서 지적장애인이 전라북도 소재 양봉원에서 30년 이상 일을 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임금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폭행 및 욕설에 시달리며 창고와 같은 방에서 때론 감금을 당하며 거주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으며 우리 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였다.
- 나. 2012. 6. 21.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 사건은 지적장애인이 장애로 인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등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있다고 볼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하여 문제가 된 ㉠○○○○에 대해서 직권 조사하기로 결정하였다.

판단요지

피조사자 김○○이 피해자 김○○를 고용한 동안 임금의 미지급,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게 한 것 등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금전착취 학대 및 같은 법 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준 행위로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사례 48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부당했습니다

상담 요지

저는 좌측 팔의 마비증세로 지체장애 3급입니다. 그런데 암보험에 가입하려고 했는데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암보험 가입을 거부당했습니다. 거의 다 계약되는 것처럼 진행되다가 맨 마지막에 보험가입자가 장애 3급이라고 하니 막무가내로 여직원이 장애인인 암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여직원의 설명에 의하면 장애 6급까지만 암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답변 요지

단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보험가입이 거부되었다면 인권위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사유 없이 단지 장애를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부당했다면 인권위법상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의 소지가 있습니다. 한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에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사 사례

정신과 진료사실 말하지 않았다고 실비보험을 해지하라고 합니다.

아들이 곧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갑니다. 손해보험사에 아들 이름으로 실비보험을 가입한 지 1년 정도 되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제가 보험 가입할 때 말하지 않은 것이 있다고 보험해지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학교폭력 피해충격으로 정신과 상담을 3번 정도 받았습니다. 아이가 잠을 잘 못잔다고 의사가 신경정신과 약을 처방해주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아들은 약을 먹지 않고 잘 극복했고 아무 문제없이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그러다 올해 초에 아들이 축구를 하다가 다쳐서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았습니다. 실비보험금 청구를 했더니 수술 관련 보험금은 나왔지만 보험회사측에서 중학교 때의 정신과 진료와 신경정신과 약을 처방 받은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면 보험해지를 강요합니다.

장애인의 교통사고 피해는 비장애인보다 보상금을 감액한답니다.

저는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입니다. 몇 년 전 상대방 과실로 교통사고가 났고 그 사고로 수술과 재활을 거쳐 지금 합의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느닷없이 하는 말이 기가 막혔습니다. 만일 비장애인에게 100을 준다면 장애인에게는 감면을 하고 보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장애인 등록증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장애가 있건, 없건 100% 상대방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인데 장애인이라고 감면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물으니 그런 제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참고 결정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2013년 8월 21일

지적장애 및 정신과 약 복용을 이유로 보험가입 거절

진정요지

2013. 5. 28. 진정인은 전화 상담을 통해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려 하였으나 ○○○○○○ 보험주식회사(이하 '피진정보험회사'라 한다)에서는 진정인이 지적장애이며 정신과 처방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였다.

판단요지

피진정보험회사는 진정인의 상태에 대한 개별적·구체적 검토 없이 정신과 처방약을 복용중이고,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한바, 이는 차별행위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진정보험회사의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금융상품의 제공을 거부한 행동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 제2항 및 제17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사례 49



장애인은 청사에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상담 요지

저희들은 지체장애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류를 발급받거나 제출할 목적으로 구청을 방문하는 일이 잦습니다. 현재 구청 주차장을 축소하고 녹지광장 조성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녹지광장을 조성하면서 장애인 주차구역은 지상 주차장 중 청사 본관 출입구와 가장 먼 지하 주차장 출입구 사이로 이전하여 설치하려고 합니다. 만일 장애인 주차구역이 지하 주차장 출입구 사이로 이전하면 이동거리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주차구역과 녹지광장 사이에 있는 도로마저 건너야 하므로 구청에 출입하는 각종 차량 사이를 피해 다녀야 합니다. 이는 공공건물への 접근권 및 행정서비스 이용권 등의 침해입니다.

답변 요지

공공시설의 이용에 장애인에 대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인권위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공공시설의 공급이용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면 인권위에 진정 접수하여 판단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시설물의 대상과 범위)는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대상과 단계적 적용범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시설 중 2009년 4월 11일 이후 신축·증축·개축하는 시설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2009년 이전에 지은 건물은 개보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유사 사례

휠체어 장애인은 공공임대아파트에서 화장실도 못갑니다.

저는 하반신마비 장애인으로 휠체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에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에 휠체어를 타고 들어갈 수가 없어서 공사에 화장실 수리를 요청했더니 계약조건에 수리가 불가하다고 되어 있어 수리를 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화장실에 들어가지 못해 생리적 현상 해결이나 샤워 등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병원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남성장애인은 장애인 화장실 이용이 어렵습니다.

휠체어 장애인입니다. 실업급여 때문에 고용센터를 방문했는데 고용센터 1층 여자화장실에만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되어 있고 남자장애인화장실에는 없었습니다. 관리자에게 남자장애인은 화장실을 이용하지 말하는 것인지 물었으나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장애인 화장실 편의 미제공에 대해 인권위에서 조사해 주십시오.

휠체어 장애인은 은행의 현금지급기 이용이 어렵습니다.

전동휠체어를 타는 1급 장애인입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은행 현금지급기를 이용하려면 휠체어의 발판이 현금지급기 아래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현금지급기는 휠체어 장애인이 사용하는데 매우 불편하게 제작되어 있습니다. 은행 직원에게 여러 번 이야기를 했더니 인권위 전화번호를 가르쳐주었습니다. 이 문제는 은행 몇 군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은행 전체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은행 현금지급기에 전체적인 시정이 필요합니다.

참고 결정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2013년 12월 13일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에 의한 차별

진정요지

피해자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뇌병변·지적장애의 중증장애인으로, ○○군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하나 장애인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지 않아 이용할 수 없는 바 시정을 바란다.

판단요지

피진정도서관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장애인도 장애인이 아닌사람과 동등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도서관을 이용함에 있어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불합리하게 차별받아서는 아니되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 제2항에서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의 차별 없는 참여를보장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당해시설은 「편의증진법」 적용대상 건물로 주출입구 접근로,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진정도서관에 경사로, 승강기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어있지 않아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도서관 이용에 제한을 받는 것은, 물리적 변경을 통한 정당한 편의제공이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등을 야기하지 않는 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 할 것이다.

사례 50



사전투표에선 점자투표용지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상담 요지

시각장애인입니다. 사전투표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전투표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투표용지가 제공되지 않는다고 합니다(관내투표는 제공됨). 제공 안 되는 이유를 묻자, 중앙선관위의 지침이라고 합니다. 이건 시각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요지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인권위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에 시각장애인이 읽을 수 있는 점자투표 용지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침해인지 인권위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제1항에, 개인·법인·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사 사례

주민등록등본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2차원 바코드를 찍어주십시오.

시각장애인입니다.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초본을 발급받으면 2차원 바코드가 찍혀 있지만 주민센터에서 직접 발급받을 경우에는 2차원 바코드가 찍혀있지 않습니다. 2차원 바코드가 찍혀 있어야 보이스아이 기계를 갖다 대어 주민등록등본인지, 호적초본인지 알 수 있고 그 내용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저는 수급자라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경우에는 수수료가 면제가 안 되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때만 무료입니다. 이것은 한 주민센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원에서 시각장애인은 다른 사람 도움을 받아 문자서류를 제출하랍니다.

시각장애인입니다. 주소지에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소지가 아닌 지역에서 학교에 다니느라 주소지로 배달된 배심원 선정 안내문을 못 보았

습니다. 그런데 배심원으로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00만원의 과태료 고지서가 송달되었습니다. 삼촌이 우연히 제 집에 오셨다가 과태료고지서를 보고 연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법원 형사합의과에 전화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과태료 부과를 면제해 달라고 했습니다. 과태료 고지서 우편물에 이의신청서류도 동봉되어 있으니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내라고 했습니다. 저는 시각장애인이라 문자로 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담당자가 시각장애인용 제출방식은 별도로 없으니 대리 작성해서 보내라고 했습니다.

참고 보도자료

보도자료 2014년 5월 19일

“6·4지방선거에서 장애인선거인의 평등권 보장해야”

－ 인권위, 중앙선거위에 장애유형에 맞는 기표 및 기표확인 방안 마련토록 시정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헌병철)는 오는 6월 4일에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장애인이 선거권을 행사할 때 장애로 인한 평등권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2014. 5. 16(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에게 다음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1. 장애인 선거인이 혼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장애유형 및 특성에 맞는 기표방안을 마련할 것
2. 기표대 내에 투표 보조인이 함께 들어가 보조할 수 있도록 기표대의 규격을 개선하고, 이와 관련하여 투표 보조의 구체적 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3. 시각장애인이 본인의 기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사례 51



시내버스기사님이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동승을 거부했습니다

상담 요지

1급 시각장애인입니다. 버스에 타려고 하는데 운전기사가 “어디서 개를 데리고 타려고 해~ 당장 내려!”라며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내견이라고 설명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제가 정당한 사유없이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하자 기사가 벌금 낼 테니까 내리라고 하며 버스카드를 찍으려는 저의 손을 쳐냈습니다. 탑승을 도와주던 청년이 승차거부를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차분하게 설명했지만 기사는 끝까지 흥분하며 벌금을 내겠다며 완강히 승차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제가 다른 승객들에게 “제가 시각장애인인데요. 제 보조견과 함께 탑승해도 될까요?”라고 묻고 승객들이 단체로 허락하고 나서야 자리를 잡고 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리에 앉는 과정에서도 기사는 끝까지 “개 데리고 타려면 묶어서 박스에 담아서 타. 박스에 담아서 타란 말이야.”라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답변 요지

교통시설을 이용함에 장애인 보조견의 탑승을 거부당했다면 인권위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침해 및 장애인 보조견을 이유로 교통시설 이용에서 차별을 당한 경우 인권위 조사대상에 해당하므로 진정하여 인권위 판단을 받아보십시오. 한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제2항에,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동승 또는 반입 및 사용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사 사례

시티투어버스가 저상버스가 아니어서 휠체어 장애인은 탈 수가 없습니다.

지역에 거주하는 전동휠체어 장애인입니다. 저와 다른 장애인 지인들 10명이 시티투어버스에 탑승하려고 탑승 2주 전에 인터넷으로 예약했습니다. 예약절차에 휠체어 장애인을 표기하는 절차는 없었지만 장애인은 50% 할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티투어버스가 저상버스가 아니라서 휠체어장애인인 저와 지인들은 버스를 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 질의했더니 시청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으며, 내부 구조변경 노력을 했으나 불가능 했다면 버스를 교체하는 시기가 되면 바꾸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장애인콜택시 이용 규정에 문제가 많습니다.

아들이 휠체어 장애인입니다. 집은 서울인데 아들이 다니는 학교는 경기도입니다. 집에서 학교까지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합니다. 서울의 장애인 콜택시가 학교까지 태워주는 하나 경기도에서 나올 때는 서울 장애인 콜택시를 부를 수 없습니다. 경기도 장애인 콜택시는 경기도 밖으로 나갈 수 없다고 하고 서울 장애인콜택시는 왕복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문의했더니 규정상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장애인이 서울 장애인 콜택시를 왕복으로 이용할 수 없게 만든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중증장애인은 병원 진료 시에만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랍니다.

사회복지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경추장애로 지체1급인 장애인이 장애인콜택시 콜센터에 전화하여 이용 예약접수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장애인콜택시 콜센터에서 전화가 왔으며 예약을 취소하라는 종용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예약 목적지까지 도로 방지막이 많아 당신같이 위험한 장애인은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활동보조인이 문제를 제기하니 상담원은 옆에 있던 장애인 콜택시 기사에게 전화를 바꿔 주었고 그 기사가 “앞으로도 5km 내외로 병원진료 이용 시에만 장애인 콜택시 이용해라”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센터 직원이 전화를 바꾸어 “장애인 콜택시는 중증장애인의 취미생활이나 사회생활 전반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안전장치를 더 하든지 운행을 천천히 하든지 고민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의 몫이다.”라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장애인 콜택시 기사가 “장애인 콜택시는 병원 진료를 지원하는 데 우선적 목적이 있다”라고 하며 우리 측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참고 결정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2012. 8. 22.

○○시티투어버스 장애인 탑승편의 미제공

진정요지

진정인은 휠체어 사용 장애인으로, ○○광역시(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가 2007년부터 ○○시관광협회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산 코스 시티투어버스는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된 버스가 아니어서 휠체어 사용 장애인들은 탑승할 수 없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시티투어버스를 비장애인들은 이용할 수 있으나, 휠체어 사용 장애인은 이용할 수 없으므로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다.

판단요지

피진정기관이 위탁 운영하는 시티투어버스에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을 위한 탑승편의 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휠체어 등 장애인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시티투어버스 이용에 있어서 비장애인에 비해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초등학교에서 특수교육보조인력교사를 폐지합니다

상담 요지

아들은 지적장애(3급)가 있으며 올해 초등학교 2학년이 됩니다. 1학년 때는 특수교육보조인력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학교생활을 했습니다. 일주일 전쯤 갑자기 교육청에서 더 이상의 지원이 어렵다며 기존에 있던 특수교육보조인력교사를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교육기회와 교육시설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미제공 및 장애인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3월 학기 시작하기 전에 가급적 빠른 조치를 원합니다.

답변 요지

특수교육보조인력교사지원의 폐지에 대해 인권위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기존 특수교육보조인력교사 지원 폐지가 인하여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한다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인지 인권위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제1항 2호에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사 사례

유치원 통합 반에서 장애 아이는 현장학습에 오지 말랍니다.

아이가 경계성 발달장애로, 심한 자폐는 아니나 대소변을 가리지 못합니다. 현재 유치원 통합반에 다닙니다. 현장학습이 예정되어 있는데 아이가 피곤해하고 사고의 위험이 있다면서 교사가 현장학습에 오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 했습니다. 아이가 현장학습에 가기를 원해 제가 따라가서 아이를 돌보겠다고 했더니 부모가 따라오면 안 된다면서 끝내 아이의 현장학습을 거부했습니다. 아이가 현재 유치원에 다니고 있어 인권위에 진정하는 것이 고민이 됩니다.

시각장애인의 자격증 시험에서 시간 연장을 약속대로 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장애인 야간학교에 다닙니다. 학교의 다른 뇌성마비 장애인이 포토샵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시간이 1시간이지만 장애인은 1.5배 연장해주기로 했었는데,

15분 후에 마감했습니다. 뇌성마비 장애인은 시험을 보기 어려워 1.2~1.5배 연장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약속한 시간도 채우지 않고 마감한 것은 부당합니다. 피해자는 재시험과 재발방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체육고에 입학하려는 장애학생에게 다른 학교 진학을 종용합니다.

장애인부모회원입니다. 최근에 개교한 체육고의 모집요강에 건강진단서(신체검사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장애학생 특별전형은 없습니다. 이는 장애학생을 뽑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장애인 전국체전이 있기 때문에 장애학생들도 체육고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수영 쪽으로 진학을 원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결국 두 학생이 입학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아이들을 만나 다른 학교로 가라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을 하는 한 명은 조건이 적절한 다른 학교에 가기로 했습니다.

참고 결정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2012. 1.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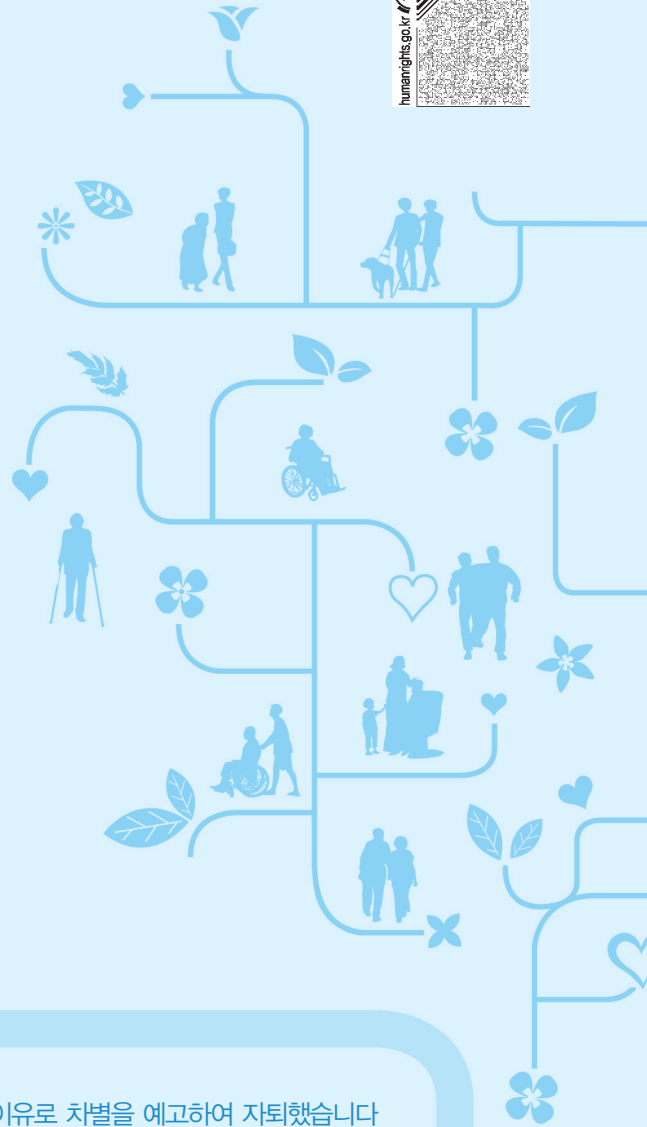
장애를 이유로 한 수업참여 제한 등 차별

진정요지

피해자는 ○○광역시 소재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진정인의 아들로써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다. 피해자는 2010. 10. 13.과 같은 해 11. 1. 같은 반 학생 정○○로부터 폭행을 당했으나 담임교사인 피진정인은 가해 학생의 말만 듣고 피해자에게만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한 것으로 인정해주겠다고 하면서 집에서 쉬라고 하였다. 또한 같은 해 11. 8. 진정인이 피해자를 학교에 등교시키기 위해 연락했으나 피진정인은 전화상으로 피해자의 등교를 사실상 거부하였다. 이는 수업 참여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피해자를 차별한 것이다.

판단요지

피진정인은 두 건의 학교폭력사건에 대해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학교장은 자치위원회에서 이를 처리하도록 했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또한 피진정인이 두 건의 폭력사건에 대해 자체조사하면서 사건 관련 상대 학생과 당시 상황을 목격했던 학교 동료 및 교사로부터는 서면진술서를 받은 반면 청각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피해자로부터는 어떠한 서면진술서도 받지 않은 사실은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진술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를 폭력사건의 가해자로 잠정결론지어 피해자에 대해서만 수업참여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것은 합리적 이유없이 장애를 이유로 피해자를 수업참여에서 배제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이러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3조를 위반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03 나이

사례 53 대학학사편입생인데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차별을 예고하여 자퇴했습니다

사례 54 연령을 이유로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사례 53



대학학사편입생인데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차별을 예고하여 자퇴했습니다

상담 요지

저는 50대 여성입니다. 올해 대학 학사 편입에 합격했습니다. 개강 당일 학과장이 제게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제 나이가 많아서 교수들이 부담스러워하며 재학생과 실습을 하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실습하고 실습확인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는데도 무조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성적을 안 줘서 학년을 올리지 않을 수도 있고 졸업을 안 시킬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학교를 그만두라는 뜻이 확실해서 교육부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이후 학과장과 담당 교수가 번갈아 가며 전화와 문자로 자기 생각이 짧았다고 민원을 취하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저 스스로 공부하는 게 부담스럽고 창피하여 등록금을 환불받고 자퇴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은 공부하면 안되나 싶어 아직도 가슴이 아프고 쓰립니다.

답변 요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교육기회가 제한되었다면 인권위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교육기회가 제한되어 상실감이 크시겠습니다. 단지 나이를 이유로 교육기회에 차별을 당했다면 인권위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나이를 이유로 다른 학생과의 실습기회를 제한하거나 성적이나 졸업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발언으로 위축감을 유발한 것에 대해서도 인권위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유사 사례

국가기관에서 지원하는 교육생 모집에서 나이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기관에서 주최하는 공모전을 준비하고 있던 중에 해당기관에서 교육생을 모집하는 공고를 봤습니다. 교육 조건이 매우 좋아 교육생 모집에 지원을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주최 측에서 35세 이하인 사람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공모전 참가는 나이제한이 없으나 교육 지원에는 나이제한을 두고 교육생을 선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독서실을 이용하려는데 고등학생 이상만 가능하답니다.

중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집 근처 독서실에 다니려고 하는데 고등학생 이상만 출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등록해서 다녔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안 되는 이유를 물으니 지난번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으며 이용을 제한합니다. 독서실 이용 시 소란을 피운 적도 없고 기물도 깨끗하게 사용했으며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았는데 단순히 중학생이라는 이유로 독서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참고 결정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2014. 6. 25.

수업참여 등에 있어 나이 차별

진정요지

○○대학교 ○○학과 학과장인 피진정인은 201×. 3. 4. 위 ○○학과 3학년에 편입한 진정인을 호출하여 “진정인이 나이가 많아 ○○학과 교수들이 부담스럽다며 학과장실로 항의전화가 온다.”, “실습은 재학생들과 같이 보낼 수 없다.”, “나이 때문에 안 된다.”, “아무도 나이 때문에 진정인의 지도교수로 나서지 않아 내가 지도교수를 하기로 했다.”는 등의 말을 하였고, 이에 진정인은 결국 20××. 3. 10. 자퇴를 하였다. 이는 나이에 의한 부당한 차별행위이므로 시정을 바란다.

판단요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나이 등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교육시설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피진정인이 나이를 이유로 진정인에게 다른 학생들과 같은 병원에 실습을 보내지 못할 것 같다는 내용의 상담을 하는 등 진정인을 다른 학생들과 구별하여 대우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비록 피진정인으로는 ○○학과 학생의 실습병원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나이가 많은 학생의 실습 및 학사관리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예상되어 이를 설명하고자 한 점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나, 진정인의 ○○학과 3학년 편입학 절차가 이미 완료된 상황에서 실습병원과 관련한 사항은 피진정인을 포함한 ○○학과 교수들 혹은

학교 당국이 해결하여야 할 문제인 점, 설사 실습병원에서 나이를 이유로 실습생을 구별하는 행태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진정인은 교육자의 입장에서 잘못된 인식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입초기에 오히려 진정인에게 분리실습 가능성 등을 얘기하며 심리적으로 위축되게 한 점, 피진정인이 명시적 혹은 의도적으로 진정인이 자퇴를 하도록 유도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위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진정인이 자퇴서를 제출하게 된 원인이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진정인의 행위는 교육시설의 교육·훈련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나이를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진정인을 불리하게 대우한것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를 위반한 차별행위로 판단된다.



연령을 이유로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상담 요지

저는 10년 간 문화관광해설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75세가 되었다고 자격을 박탈한다고 합니다. 육체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단지 나이가 많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나이 많은 것이 죄도 아니고 활동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러한 처사는 부당합니다.

답변 요지

문화관광해설사의 연령 제한과 관련하여 인권위에서 권고한 바 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업무수행에 아무런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자격을 박탈한다면 인권위에 진정하여 판단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2011년, 인권위는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연령 일률적 제한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유사 사례

공공기관인데, 직급에 따라 정년이 다릅니다.

공공기관에서 근무합니다. 올해 12월이면 만 55세가 됩니다. 그런데 이 기관은 직급별로 정년 차등이 있습니다. 즉 1급~6급의 정년은 만 58세, 7급의 정년은 만 55세입니다. 노조를 통해 회사 측에 정년 차별 이유에 대해 문의하였고 노조도 노력하는 듯이 보였으나 그에 대해 아무 답변도 듣지 못했습니다. 공무원의 정년과 정부에서 권고하는 정년이 만 60세임을 감안할 때 7급의 정년이 55세인 것은 과도하며 직급에 따라 정년을 달리하는 것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백화점에서 나이가 많다고 해고 했습니다.

2006년부터 백화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의류매장이 철수하게 되어 백화점 내의 다른 매장에서 일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백화점에서 제가 판매브랜드와 컨셉이 맞지 않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해고를 통지했습니다. 현재까지 문제없이 성실히 일해 왔고 판매능력도 탁월하다고 생각하는데 활용 가능한 인력을 단지 나이를 이유로 해고한다는 것은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불명예를 회복시켜주시시오.

참고 보도자료

보도자료 2011년 7월 6일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연령 일률적 제한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헌병철)는 광주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선발시 지원자격을 특정 나이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광주광역시장에게 나이만을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개인의 능력을 고려해 해설사를 선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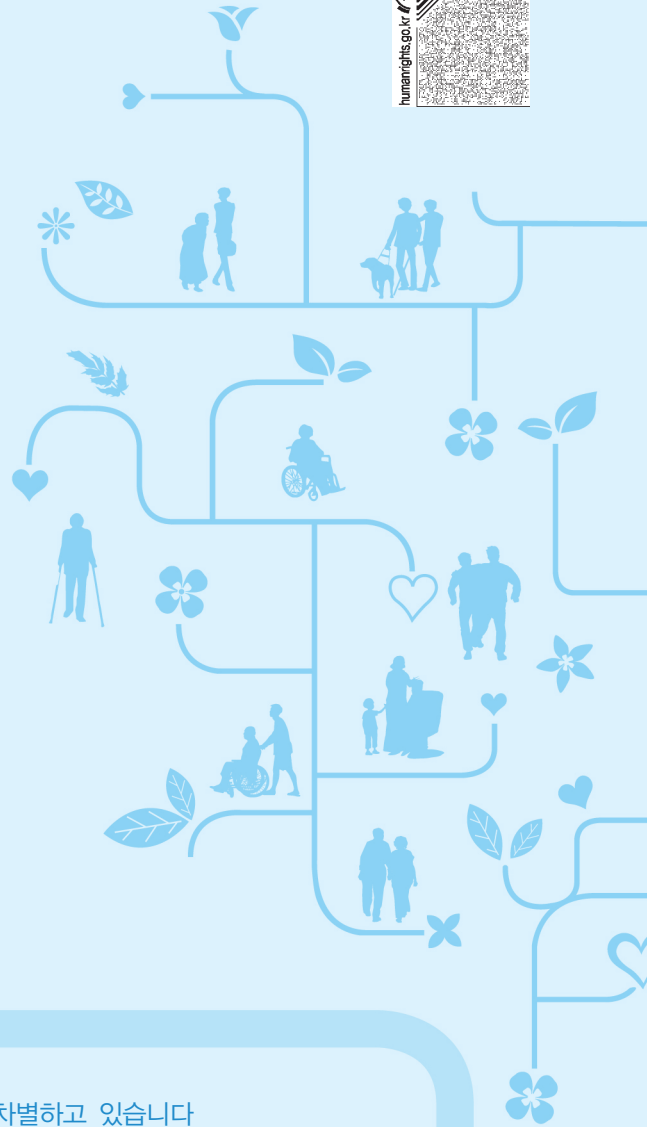
진정인 김모(남, 78)씨 등 3명은 “광주광역시가 운영하는 문화관광해설사로 8~9년 동안 활동해 왔으나, 만 76세 이상은 해설사로 활동할 수 없다는 광주광역시의 방침에 따라 해설사 선발에서 제외되었다”며, 2011. 2.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해설사 활동 연령은 70세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에 따라, 해설사의 건강보호와 대다수 관광객의 질 높은 해설서비스 제공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활동 연령을 75세 이하로 제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해설사의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라는 주장에 대해, 건강보호 필요성에 대한 판단은 나이와 같은 획일적 기준이 아니라 건강진단서 제출이나 체력검진 등의 자료를 통해 개인별로 확인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질 높은 해설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치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해설사의 연령과 질 높은 서비스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광주광역시는 2011년도 해설사 재위촉 심사 과정에서 49세와 54세의 해설사 2명을 탈락시키고, 71세 이상 해설사 3명을 재위촉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해설사의 질높은 해설 서비스 제공 여부의 평가는 현재 운용하는 재위촉 심사 제도를 통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광주광역시가 특정 나이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활동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해, 광주광역시장에게 문화관광해설사 선발 시 개인의 능력을 고려해 해설사를 선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04 성차별

사례 55 국립경찰대학 입시에서 여학생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사례 55



국립경찰대학 입시에서 여학생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상담 요지

경찰대학교는 졸업과 동시에 경찰 간부가 될 수 있어 경쟁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정원 120명 중 단 10%만 여학생을 선발합니다. 여학생이 열심히 해서 남학생보다 좋은 성적을 받아도 인원이 충족되면 입학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남성경찰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여성도 경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경찰대학교에서 여학생을 10%밖에 안 뽑는 것은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요지

신입생 여성비율 제한이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인지에 인권위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성별을 이유로 대학입시에서 제한을 받는다면 진정하여 인권위 판단을 받아보십시오. 경찰대학신입생 중에서 여성은 10%만 선발하는 것이 성별을 이유로 한 비합리적인 차별인지 인권위에서 조사하게 됩니다.

유사 사례

대학병원에서 여성간호사의 복장에 대해 과도한 규제를 합니다.

400여명이 넘는 간호사들이 있는 대학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간호사들은 간호사 복장규정지침으로 복장 및 두발 등에 대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복장규정지침에는 속옷팬티자국이 나면 안 되며 속옷색깔 및 머리를 기른다면 어느 정도까지 기를 수 있는지 등 간호사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복장규정은 여성 간호사에게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의 신원이 노출이 되었을 때 받게 될 불이익이 우려됩니다. 인권위가 다른 방법으로 조사를 할 수 있습니까?

대학병원 규정에 친가, 외가의 특별휴가 기간이 달라요.

딸이 대학부속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외조모 상을 당해 병원에 휴가를 신청했는데 직원의 친가 쪽은 3일, 외가 쪽은 1일의 휴가를 준다고 했습니다. 결국 외조모라는 이유로 1일의 휴가를 받았고, 나머지는 연가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사 건물 밖에서 담배를 피운 여성직원에게 사표를 강요했습니다.

악세사리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상품출고 업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 회사건물 옆에서 점주와 담배를 피우는 것을 회사 대표가 봤습니다. 이후 대표가 제게 담배를 피웠으니 사표를 쓰라고 강요했고, 소리를 지르면서 다른 관리자들에게 “애, 내보내!”라고 했습니다. 차장님이 저에게 두 가지 제안 중 하나를 고르라고 했습니다. 즉 6개월 동안 연봉을 삭감하고 직원들에게 제가 담배를 피운다는 사실을 공지하고 회사를 계속 다니는 안과 사직하는 안이었습니다. 제가 권고사직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물었더니 차장님은 취업규칙 내 풍기문란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욕감과 회사 측의 압박을 견디지 못해 그 날 바로 사표를 쓰고 나왔습니다.

참고 결정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2013. 1. 16.

항공사 여성승무원에 대한 복장 및 용모 제한

진정요지

진정인은 ○○노동조합 대표인데, 피진정인이 여성 승무원에 대해 유니폼으로 치마만 착용하게 하고 머리모양은 쪽진머리를 하도록 하며 안경을 착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용모·복장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선택의 기회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차별이므로 이의 시정을 바란다.

판단요지

「항공법」은 객실승무원을 항공기에 탑승하여 비상시 승객을 탈출시키는 등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승무원으로 정의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항공사 승무원은 기내안전 및 대고객 서비스 업무를 담당한다고 인정된다. 오히려 여성 승무원이 치마만을 착용할 경우 기내 비상상황 발생 시 고객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피진정 항공사를 제외한 국내 항공사들 여성 승무원에게 바지를 선택적으로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피진정인이 여성 승무원에게 치마만을 착용하도록 하는 것은 타 항공사에 비하여 더욱 강화된 복장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항공사 승무원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한의 정도가 과도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여성에 대해 직무수행과 무관한 용모 및 복장 조건을 모집·채용시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바, 동 법률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당해 직무의 성격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여성 근로자에게 모집·채용시는 물론 고용관계 속에서 용모나 신체적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여성 노동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성차별로 인정될 수 있다. 치마는 긴장감을 줘서 태도나 자세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되어 아름다운 태도를 취하게 된다는 인식은 유니폼 제작 시 승무원의 업무를 안전보다는 대고객 서비스 업무 중심으로 보고 여성 승무원의 고정된 외적 이미지를 대고객 서비스의 본질적 요소로

참고 보도자료

보도자료 2014년 9월 24일

“경찰대신입생 여성비율 12%는 과도한 제한으로 차별”

- 인권위, “경찰대 신입생 모집시 여성비율 확대할 것”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대학 신입생 모집 시 여성 선발비율을 12%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과도한 제한이므로 성차별로 판단하고, 경찰청장에게 경찰대학 신입생 모집 시 여성 선발비율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경찰청은 물리력·강제력이 수반되는 업무 위주인 경찰 직무 특성과 조직 내 여경 비율을 고려하여 경찰대 신입생 모집 시 성별을 구분하여 선발하고 있다고 밝히고, 남녀 신체 능력 차이로 인해 여성 경찰관 배치 부서가 제한적임을 고려할 때 급격한 채용비율 변화는 내부 운영의 문제 뿐 아니라, 치안역량 자체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청은 또 경찰대학 졸업 후 초급간부인 경위로 임용되므로 경찰대학 신입생 모집에서 여성 비율 제한을 없애면 순경으로 입직하는 여경의 고위직 승진 기회를 제한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적정 인력을 선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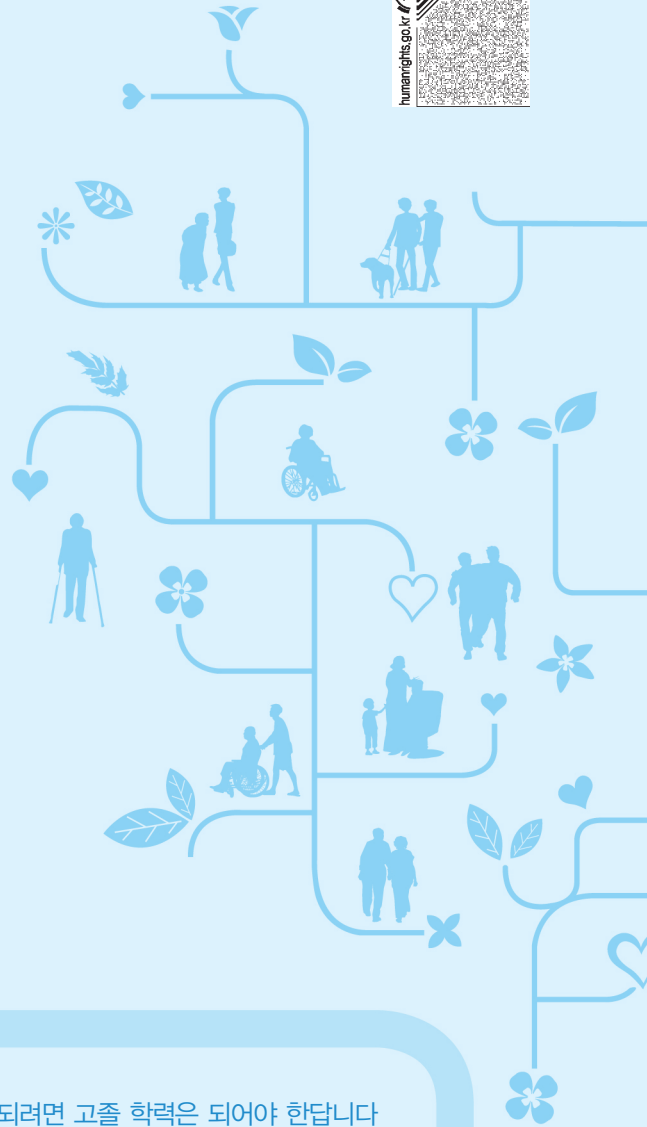
인권위는 경찰의 남녀구분 모집과 관련해 2005. 12. 5. 경찰공무원 공개채용 시험 시 성별 구분모집을 폐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고, 2013. 9. 10. 경찰간부후보생 모집 시 성별 구분모집과 관련하여 과도기적인 조치라는 전제 하에 남녀 구분모집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경찰간부후보생의 여성 채용비율을 10%로 제한한 것은 지나친 제한으로 성별에 의한 차별행위이므로 이를 확대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인권위는 앞서 두 차례 권고와 같은 맥락에서 경찰대학 신입생 모집의 여성비율을 12%로 정한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를 살펴본 결과,

- 2012년, 경찰공무원을 성별 구분 없이 선발한 사례에서 여성의 채용비율이 38%에 달한 점, 2013년도 경찰대학 신입생 선발 시 남녀 모집비율을 폐지했다고 가정할 때 1차 필기시험 합격자 중 여학생 28명 이상이 합격할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경찰대학 모집 시 성별 구분을 없앨 경우 여성 합격자가 12%를 훨씬 상회하게 될 것임은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 인권위는 그러나 2014년까지 여성 경찰관의 비율을 전체의 10%로 확대하는 경찰청의 ‘여경채용목표제’에 대해서는 그 목표의 상향을 검토해야 할 시점으로 보았으며 다만, 구분모집을 폐지할 경우 예상되는 남녀 채용비율을 고려하여 여성의

채용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경찰대학 신입생의 여성 선발비율은 현행 12% 보다는 확대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또한, 경찰대학 졸업생은 초급 간부인 경위로 임명되는데, 경찰대학 신입생의 여성 선발비율을 하위직 경찰공무원의 경우보다 훨씬 낮은 12%로 제한하는 것은 여성 경찰관을 하위직에 편중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인권위는 경찰대학 신입생 모집 시 여성 선발비율을 12%로 제한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가 규정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과도한 제한으로 성별에 의한 차별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05 학력

사례 56 대형 유통업체에서 정직원으로 전환되려면 고졸 학력은 되어야 합니다

사례 56



대형 유통업체에서 정직원으로 전환되려면 고졸 학력은 되어야 합니다

상담 요지

누나가 마트에서 일용직으로 일했습니다. 얼마 전에 일용직들을 정직원으로 전환해주기로 했는데 고졸 학력이어야 정직원이 된다고 합니다. 누나는 중학교 졸업으로 지금까지 아무 문제없이 일했고 정직원이 되어도 같은 일을 하는 것인데 고졸 학력이어야 정직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누나는 이 달까지만 일을 하고 그만둔다고 합니다. 진정하면 누나의 이름이 노출될 것이 우려되고 인권위 권고는 강제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트에서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진정해도 누나에게는 득이 없을 것 같아 주저됩니다.

답변 요지

학력을 이유로 고용차별을 당했다면 인권위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비정규직의 정직원 전환 시 비합리적인 학력차별을 하는 경우 인권위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가 아니라면 합리적 이유 없이 학력을 이유로 고용상 특정집단을 우대하는 것은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실명노출 우려로 진정이 꺼려진다면 진정서에 그러한 우려를 기록하여 진정접수 후 조사관과 상의하여 방법을 모색할 수도 있습니다.

유사 사례

전문자격증이 있는데도 학력 때문에 강사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다문화 가정의 아동이나 소외아동에게 정서발달을 위해 클래식 악기를 가르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강사 자격은 해당 악기 학사 이상입니다. 저는 전문대에서 음악실기교육 자격증을 받고 강사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점검을 나와서 제가 강사자격에 못미친다고 해고하였습니다. 학사 이상을 자격으로 하여 전문대에서 교육자격을 받아 전문적으로 악기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조차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차별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2013. 9. 10.

학력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 응시자격 제한

진정요지

피진정인 1, 2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5에서 임상심리사 2급의 응시자격을 ‘대학졸업자 및 그 졸업예정자’로 제한하여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자에 비해 전문대학 졸업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으므로 시정을 바란다.

판단요지

전문대학이나 원격대학에서 심리학 관련 과목을 이수한 사람이라도 이수 학점 합계가 대학졸업예정자에 상응하는 106학점에 이르지 못한 경우 임상심리사 2급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반면, 재학 중 심리학 관련 과목을 단 한 차례도 수강한 적이 없더라도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경우 이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얼마나 습득하였는가와 무관하게 대학졸업(예정)자를 임상심리사 2급 자격 취득 요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해당 자격이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그 합리성을 더욱 인정하기 어렵다. 임상심리사 2급의 응시자격을 전공이나 이수 과목과 무관하게 대학 졸업(예정)자로 정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5는 학력에 의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4년제 대학 이하의 학력을 취득한 사람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가 정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2014. 2. 19.

대기업 생산직 채용 시 대졸자 배제

진정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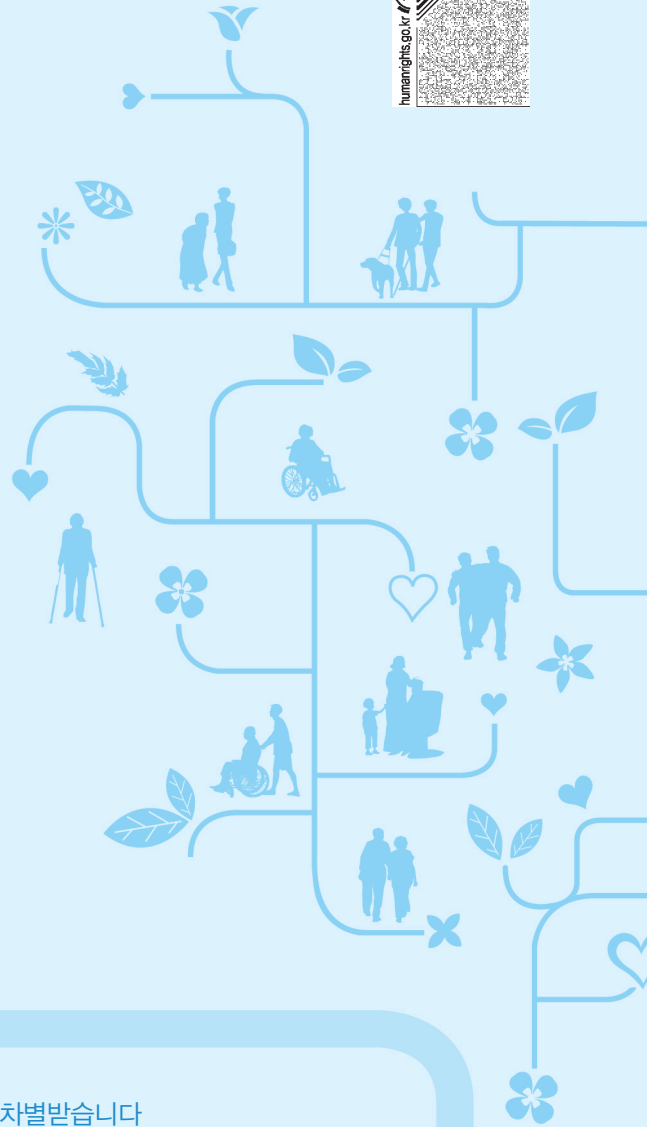
○○○○○ 주식회사 ○○공장 생산직 채용 시 대학 졸업자를 배제하는 것은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판단요지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생산직에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자를 채용하지 않는 것이 취업의 기회에 있어 상대적으로 선택의 폭이 좁은 고졸자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의 효과를 가져 온다고 하더라도, 고졸 지원자에 대하여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채용 정원의 일정 비율을 할당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연간 000여명에 달하는 신규채용자 모두를 고교·전문대 졸업자로만 채용하는 것은 고학력을 이유로 한 역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최근의 청년 실업난으로 학력과 직종과의 연계성이 희박해지고 있는 사회적 여건,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이 어려워 전문대학에 다시 입학할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최종학력’의 정의가 모호해지고 있는 사회변화 등을 고려할 때, 한 번 대학교를 졸업했다는 이유로 이후의 취업기회를 평생에 걸쳐 제한하는 것은 구직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생산직에 대졸자를 채용할 경우 향후 학력과 관련한 차등임금 인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살펴보면, 임금이란 해당 근로자가 과거에 특정한 학력이나 사회적 신분 등을 취득한 데 대한 보상이 아니라 사용자를 위해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어서 대학 졸업자가 입사 후 고교 졸업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보수를 달리 지급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06 사회적신분

사례 57 무기계약직이라고 임금, 수당에서 차별받습니다

사례 58 대학교의 검정고시 출신자 전형제한은 부당합니다

사례 59 일반하사와 전문하사에 대한 임금 차별은 부당합니다

사례 57



무기계약직이라고 임금, 수당에서 차별받습니다

상담 요지

버스 만드는 회사에 재직 중인 무기계약직 직원입니다. 여기는 생산직, 영업직, AS직 등의 직렬이 있고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기간제간에 여러 차별이 존재하고 있어 인권위에 진정을 하려고 합니다. 완전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은 급여와 경력인정에서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무기계약직은 법정 최저임금인 4,860원을 기준으로 월급을 받고 있으며, 올해로 입사 7년차(기간제 2년, 무기계약직 5년)인데 신입사원과 동일한 연봉을 받는 등 호봉 적용도 인정되지 않으며 경력 또한 입사 전후 경력이 모두 미인정 되고 있고 각종 수당에서도 정규직원에게 제공되는 가족수당, 근속수당, 벽지수당 등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회사 측 노무사로부터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직원들에게 가족수당, 복지후생수당, 정비오단계수당 등은 원래 주었어야 했다는 의견을 받은 회사 측은 법으로 임금 소급 적용은 3년까지 밖에 안 되니 그 세 가지 수당은 3년치를 소급해서 주고 또 앞으로는 계속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다른 많은 차별적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았고 회사 측은 차별을 시정하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답변 요지

인권위는 비정규직 경력 미인정 등에 대해 차별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을 이유로 임금, 경력, 승진, 복무 등에서 차별이 있다면 진정하여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인권위는 비정규직 경력 미인정 등에 대하여 차별이라고 판단한 바 있고 무기계약직의 열악한 저임금 체계에 대해서도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유사 사례

회사 측에서 비정규직원에게는 장례비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여객선의 식당에서 승객을 위해 배식 등을 하는 아르바이트생이었습니다. 비정규직이던 그의 사망으로 병원 장례식장에 빈소가 차려졌는데 회사측에서는 피해자를 포함한 아르바이트생에게는 장례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관할시에 통보했다고 합니다. 이에

관할 시청에서 장례비를 우선 지원하거나 지급 보증을 서고, 차후에 선박회사에 지급요청하거나 국비 지원을 받겠다고 합니다. 비정규직원이라고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규직과 똑같이 일하는 무기계약직 택시기사인데 산재처리 때에는 차별했어요.

무기계약직 택시기사입니다. 처음에는 6개월씩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2년 전에 무기계약직이 되었습니다. 현재 정규직과 똑같이 12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으며,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사원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한 6시간 40분으로 되어있습니다. 올 2월에 사고를 당해서 산재 처리했는데 회사에서 예전 6개월 계약직 당시의 계약서대로 근로시간을 하루 4시간으로 계산하는 바람에 휴업급여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정규직과 똑같이 근무하고 있는데 무기계약직이라고 차별한 것입니다.

학교 비정규직원은 정규직원보다 한 시간 늦게 퇴근하합니다.

초등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교사입니다. 지금까지 학교 특성상 점심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8시40분 출근에 4시40분 퇴근이었습니다. 이것은 학교의 행정실 직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올해 교육부 인건비 관련으로 계약서를 다시 쓰게 되었는데 학교장이 자신은 4시40분에 퇴근시키고 싶으나 휴게시간이 없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 휴게시간을 줘야하며 따라서 5시40분에 퇴근하라고 했습니다. 학교 직원 70명중에 20명이 비정규직입니다. 그동안 무기계약직이 해고투쟁을 하는 등 강경한 모습을 보여왔고, 학교에서 그에 대하여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로 생각됩니다.

참고 보도자료

보도자료 2012년 7월 4일

행정안전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수용

국가인권위원회는 행정안전부가 공무원의 호봉에 반영되는 민간 경력 인정기준을 개선하여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모든 경력에 대하여 호봉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공무원 보수규정」 등 관련 법규를 개정할 것에 대해 환영 의견을 밝힙니다.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전환되었으나 이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는데, 초임호봉 확정시 정규직 경력만 인정하고 비정규직 경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다”는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 9. 27.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공무원의 초임호봉 확정 시 인사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법인에서 유급으로 상근한 비정규직의 경력을 인정하도록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은 공공법인 근무 경력에 대하여 정규직원으로 상근한 경력에 한하여 호봉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국가인권위원회는 과거 경력에 대한 내용 분석 없이 단지 정규직 등 같은 고용형태라는 형식적 요소에 의해 호봉 인정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비정규직 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전문·특수경력’ 중 일부 경력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비정규직 경력을 인정하던 유사경력 인정기준을 개선하여 모든 유사경력에 대하여 상근으로 근무한 비정규직 경력을 인정하도록 대통령령인 「공무원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개정하였다고 2012. 2. 8. 국가인권위원회에 회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실무에서 업무처리의 기준이 되는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과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등 세부지침이 지난 5. 11. 및 5. 17. 정비되었고, 오는 7. 1.부터 비정규직 경력도 공무원의 호봉에 반영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와 같이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경력에 대한 인정범위를 확대하여 모든 경력에 대하여 비정규직의 경력을 인정하도록 한 것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 차원에서 의미 있는 조치로 여겨 환영합니다. 아울러, 향후 이러한 조치가 우리사회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차별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학교의 검정고시 출신자 전형제한은 부당합니다

상담 요지

현재 검정고시 출신으로 2015년 대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학교는 2015년 대입수시논술전형에서 검정고시 출신은 뽑지 않아 지원할 수 없고 ◇◇대학교는 2015년 대입수시논술전형에서 2013년 2월 이후 학력인증 취득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처럼 그 이전에 검정고시를 본 경우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대학교는 수시전형에서 나이 많은 사람을 뽑지 않겠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5년 전형이 2014년 7월부터 절차가 시작되므로 인권위에서 그 전에 해결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답변 요지

대학입시전형에서 검정고시 출신자가 제한된다면 진정하여 인권위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검정고시 출신자의 전형을 제한하거나, 학력을 취득한 시기를 제한하여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 있는 경우에도 인권위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유사 사례

노조설립을 이유로 해고 후 복직되었으나 지속적인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노동조합을 만들었다가 해고되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서 조사 중에 회사와 합의가 되어 복직했습니다. 처음에는 잘해보자고 하던 회사가 왕따를 시키고 지속적으로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해고 전 저의 직급은 차장이었으나 복직 이후에 과장으로 강등되었고 다른 사람의 임금이 4% 인상될 때 본인만 1% 인상되기도 했고 인사팀에 배치하여 노조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업무는 인사팀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저의 책상도 차장이나 과장이 앉을 자리라고 보기 어려운 가장 구석자리에 배치했습니다. 너무 힘들어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참고 결정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2013. 9. 23.

대학 수시모집 지원에 있어 검정고시 출신자 제한

진정요지

피해자는 진정인의 자녀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거쳐 ○○대학교(이하 ‘피진정 대학’이라 한다.) 2014학년도 수시모집 일반전형(논술우수자)에 지원하고자 했으나, 검정고시 출신자는 특별전형인 어학재능 전형, 연기재능 전형 등에만 지원이 가능하고, 일반전형에서는 지원이 전면 제한되었다. 이 같은 검정고시 출신자의 수시모집 일반전형 지원 제한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로 시정을 바란다.

판단요지

피진정 대학은 검정고시 출신자의 학생부 성적을 평가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학생부 성적을 반영하는 전형에서 검정고시 출신자의 지원을 제한하고 있다. 우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대학의 자율성은 존중받아야 마땅하나, 이미 많은 대학들이 자체 비교 내신 기준을 통해 학생부 성적을 반영하는 전형에서 검정고시 출신자의 지원을 허용하고 있으며, 자체 비교 내신 기준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자율성을 보장받고 있는 바 피진정 대학이 학생부 성적을 반영하는 전형에서 검정고시 출신자의 지원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014학년도 전체 대학 입시에서 수시모집의 비중은 날로 확대되어 66%에 달했고, 피진정 대학도 이러한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아 수시모집의 비중이 59%에 달했으며, 지금까지의 추세로 보아 앞으로도 수시모집의 비중은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진정 대학이 수시모집 일반전형에서 검정고시 출신자의 지원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특별전형에 지원할 재능이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검정고시출신자에 대하여 수시모집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할 것이고, 이는 검정고시 제도의 취지 및 대학입학전형의 기본 원칙에도 반하는 과도한 기회제한으로서, 결국 검정고시출신자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일반하사와 전문하사에 대한 임금 차별은 부당합니다

상담 요지

육군에서 전문하사(유급지원병)로 근무하다 최근 전역하였습니다. 전문하사는 하사 계급을 달고 일반하사와 동등하게 근무를 합니다. 전문하사는 이등병부터 병장까지 병사생활을 모두 마치고 근무하는 것이어서 어쩌면 초임 일반하사들보다 더 전문성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은 우수한 인재들을 열심히 부려먹고 월급지급에 있어서 일반하사와 큰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전문하사들은 초과근무수당, 성과 상여금, 명절 휴가비, 정근수당, 교통비 직급보조비 등 월급본봉 외에 모든 수당 등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답변 요지

입대경로를 이유로 임금 등에서 차별당한다면 인권위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전문하사와 일반하사의 입대경로가 다르기는 하지만 군대 내에서 계급이 동일하고 수행업무또한 거의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전문하사에게만 초과근무수당이나 여타의 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진정하여 인권위 판단을 받아 보십시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평등권침해로서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사 사례

노사협의회 참여에서 청원경찰은 배제하고 있습니다.

OO공사는 상시근로자 152명(일반직원 94명, 청원경찰 58명)을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공공기관입니다. 그런데 OO공사는 청원경찰을 정원 외 인원으로 구분하여 노사협의회 구성원으로 참가를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및 교통비를 일반사원에게는 지급하나 청원경찰에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참고 보도자료

보도자료 2014년 6월 2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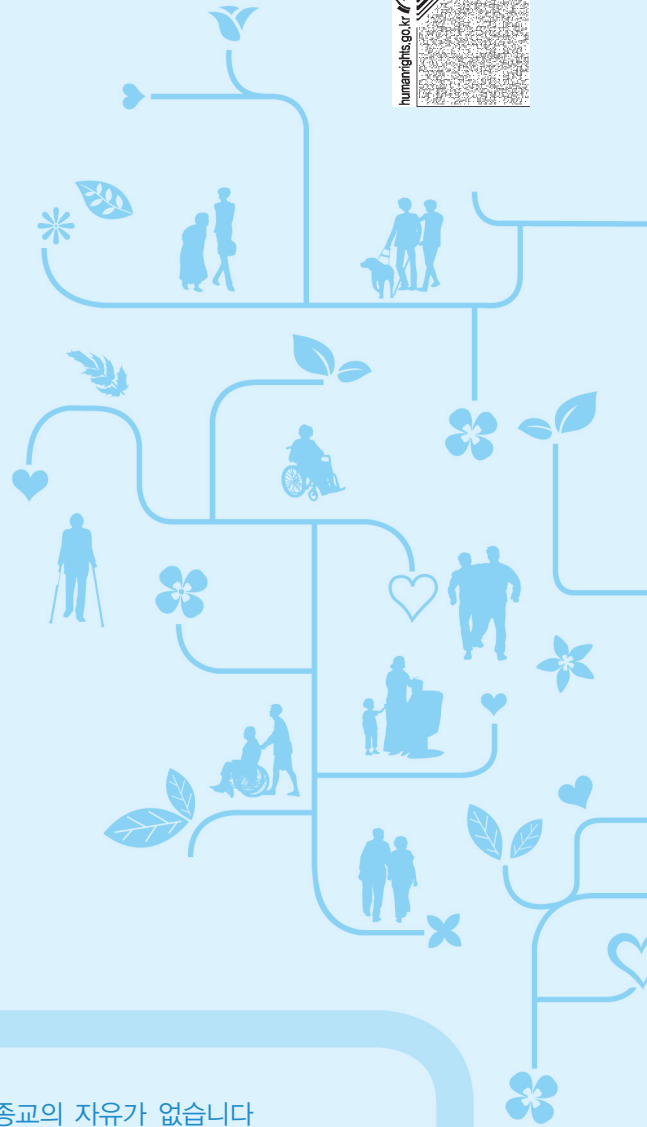
“전문하사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지급 배제는 차별”

— 인권위, 국방부장관에게 해당 보수지급훈령 개정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는 유급지원병으로 육·해·공군 등에서 근무하는 전문하사들에게 초과 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국방부장관에게 해당 보수지급훈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전문하사나 단기복무하사는 같은 하사계급이고 신분이나 권리의무에 관해 동일한 법령을 적용받고 있는 점, 일선 군부대에서의 복무나 근무형태 등이 동일한 점, 현역병사로서 2년 의무복무를 한 후 임용되므로 의무복무기간(2년) 동안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체득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서로 다른 보수체계 안에서 불합리하게 배제되고 있는 수당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았습니다.

인권위는 단기복무하사가 지급받고 있는 각종 수당이 전문하사에게도 지급되고 있는지 여부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각종 수당 중에서 시간외 근무에 대한 보상인 초과근무수당과 연가 미사용에 따른 연가보상비는 직접 근로에 종사한 대가이거나 법정연가 미사용으로 인해 지급받는 성격의 수당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방부가 단기복무하사에게 지급하는 초과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를 전문하사에게는 지급을 배제하는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판단했습니다.



07 종교

사례 60 교회에서 운영하는 보육시설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사례 60



교회에서 운영하는 보육시설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상담 요지

교회에서 운영하는 아동보호시설 교사입니다.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거나 행사가 있으면 교사들은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설에 입사할 때 교회의 구역예배에 참여한다는 각서를 써야 합니다. 아이들도 억지로 예배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고 심지어 아이들에게 새벽 예배를 강제했는데 인권위에 진정 접수하여 그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저도 기독교인이지만 자기가 원하는 교회에 다닐 자유, 새벽 예배는 가고 싶은 사람만 갈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요지

종교를 이유로 교육, 고용 등의 영역에서 차별을 당한 경우 인권위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아동양육시설에서 종교행위를 강요하거나 행사 불참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고 있다면 인권위에 진정 접수하여 종교의 자유 침해 및 평등권 침해 여부를 판단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유사 사례

대학교에서 종교를 이유로 고용차별을 하고 있어요.

대학교에서 계약직을 모집하고 있는데 제출서류항목에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이외에 기독교 교인 증명서 1부를 제출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는 채용에 있어 종교를 이유로 차별을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족까지 종교를 믿어야 직장을 오래 다닐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다니는 직장은 사회복지법인으로 모법인인 종교법인입니다. 그런데 직장 내에서 종교 행위를 하라고 하고 가족까지 종교를 믿어야 직장에 오래 다닐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직장 다니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단의 포교활동 한다면 대학에서 퇴학시키겠습니다.

대학생입니다. 해외봉사활동단체에서 주관하는 해외봉사 활동을 다녀왔고 보람을 느껴 주변 친구들에게 권유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봉사활동 주관 단체가 이단이며, 제가 친구들에게 해외봉사활동을 얘기하는 것은 이단의 포교행위라며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계속하면 퇴학까지 시키겠다고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2013. 6. 13.

비영리단체의 종교행사 불참을 이유로 한 퇴사강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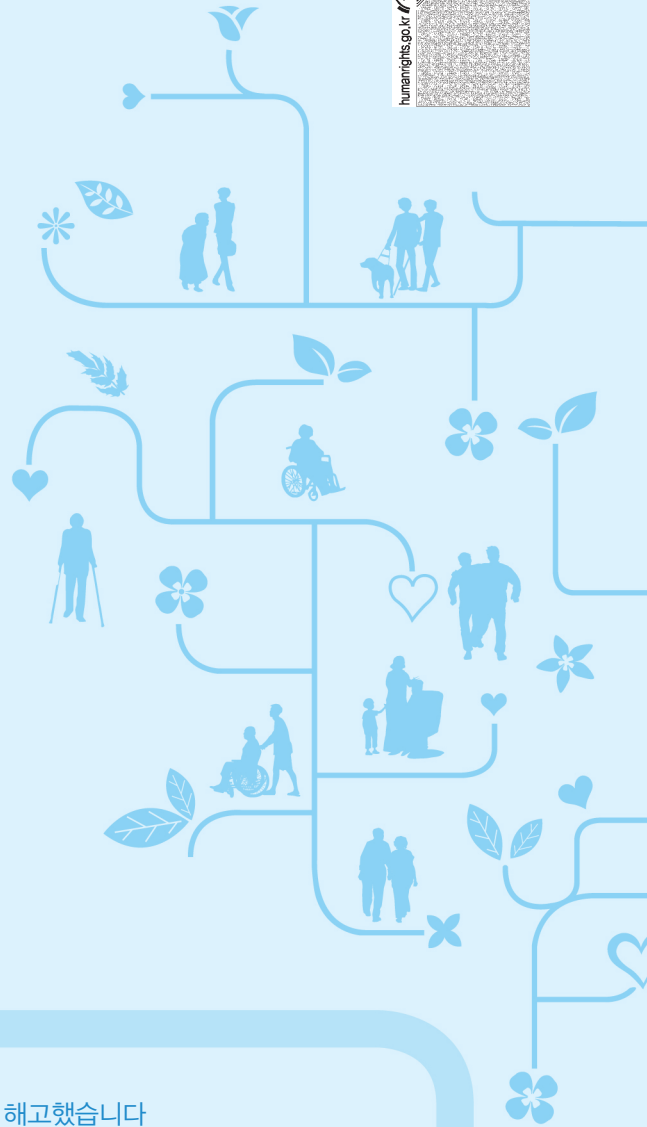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2. 1. 3. 개발도상국가 아동구호 NGO단체인 '○○○○'에 입사하였는데 이후 교회 신자확인서 제출과 QT(Quiet Time, 일종의 묵상), 월요예배, 부흥회 등 종교행사 참여를 강요받았다. 결국 2012. 9.부터 업무예배에 참석하지 않자 피진정인 1, 2로부터 참석강요와 시달서 작성의 요구를 받았고 업무에서 배제되는 등 권고사직 압박을 받아 2013. 2. 8. 퇴사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행이 시정되기를 바란다.

판단요지

「헌법」 제20조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관련하여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그 직위를 이용하여 비기독교 신자 또는 다른 종교의 신자에게 예배와 찬양 등 자기의 종교행위를 강요함으로써 종교적 신앙을 강제할 수 없으며, 사용자는 예배에 참여하지 않을 직원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게 교회 출석 강요, 예배 및 QT, 부흥회 참석 등을 교육의 명목으로 강요하고 불리하게 대우하여 퇴사에 이르게 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합리적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에 대한 조치의견으로는, 피진정인 1, 2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의사결정의 주체라고 보기 어려워 이들에 대한 권고는 하지 아니하며, 실질적인 운영 권한을 갖고 있는 피진정인 3에게 향후 소속 직원들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를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08 전과

사례 61 형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부당하게 해고했습니다

사례 61



형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부당하게 해고했습니다

전과

상담 요지

올해부터 공립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오후 교장선생님께서 저에게 2년 전에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300만원을 받은 바가 있고 현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관할 교육청 홈페이지에 제 자리를 대신할 기간제 교사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답변 요지

전과를 이유로 고용상의 차별을 받았다면 인권위에 진정하여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 계약해지 사유로 제시하는 사안이 과거의 벌금형이나 판결이 확정되지도 않은 형사사건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제69조(당연퇴직) 등에 의해 당연퇴직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해고되었다면 인권위에 진정하여 판단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유사 사례

전자발찌 착용자가 복지관을 이용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장애인복지관입니다. 복지관 이용자의 자녀가 약 7년 전의 범죄사실로 현재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보호관찰 중입니다. 이용자의 자녀가 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자녀가 보호관찰 중이라 복지관 이용이 어렵겠다고 안내를 했습니다. 오늘 이용자의 자녀가 인권위에 문의한 결과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분이 원하는 것은 재활목욕서비스와 헬스장 이용입니다. 그분의 장애유형에는 제한이 없으나 보호관찰 중이므로 복지관을 이용하게 하는 것이 부담이 됩니다.

전과 때문에 취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19년 전 성폭력 전과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올해 큰 아이는 대학생이

되었고, 둘째 아이는 고등학생이 되다보니 살아갈 길이 막막합니다. 돈은 많이 들어가고 가진 돈은 없고 이제는 돈 빌릴 곳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 했던 택시운전을 해보려고 택시회사에 서류를 접수했으나 연락이 없었습니다. 입사할 수 없는 이유를 문의하니 개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범죄경력 때문인 것 같습니다. 택시회사들끼리 정보를 주고받는다든 걸 지인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취업이 절실해서 치부를 다 드러냈지만 상처만 입었습니다.

참고 보도자료

보도자료 2012년 11월 27일

“16년 전 불기소처분 이유로 군무원 임용 거부는 차별”

- 인권위, 공군참모총장에 임용거부 처분 시정권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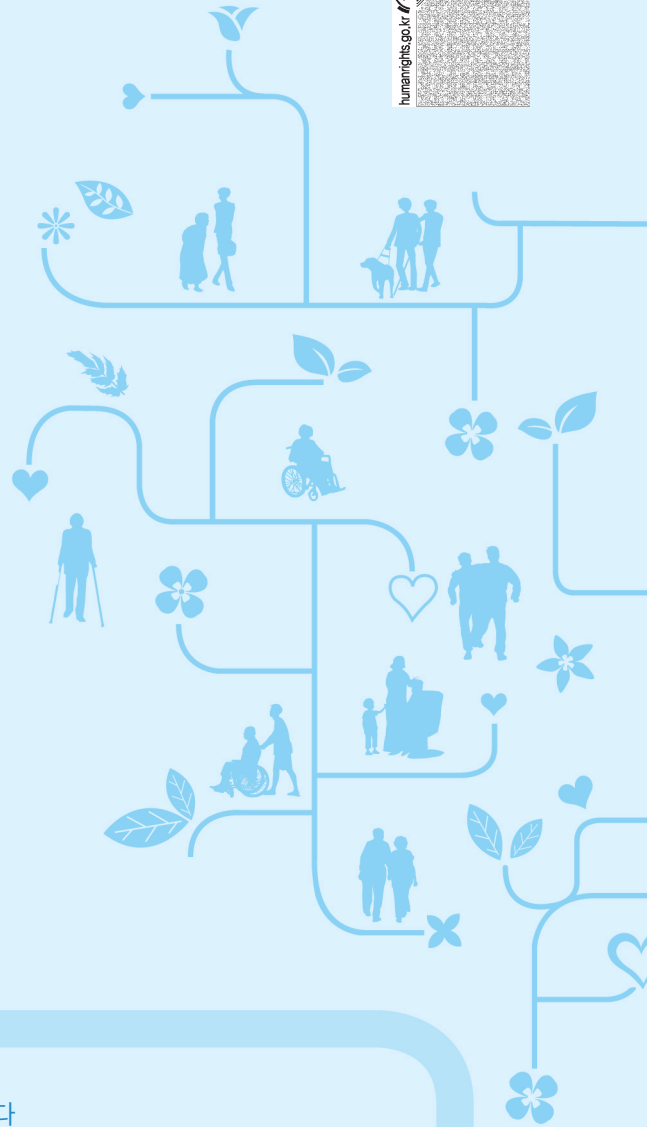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군 군무원 채용 신원조사 과정에서 16년 전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력을 이유로 임용을 거부한 행위는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공군참모총장에게 시정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A(남, 35세)씨는 2012년 공군 군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여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에 모두 합격하고 2012년 9월 공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발표된 최종합격자 명단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최종합격자 명단이 발표된 지 20여분 후, 공군은 착오가 있었다며 A씨의 이름을 제외하고 최종합격자 명단을 다시 발표하였고 이후 A씨에게는 신원조사 결과에 문제가 있다며 임용불가를 통지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2012. 9. 21. 부당한 임용거부처분에 대해 조사해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는 경찰청이 전산으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 중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은 해당 죄목에 따라 최장 10년이 지나면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는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등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16년이 지난 과거 수사경력만을 이유로 여타의 다른 근거 없이 A씨의 임용을 거부한 것은 그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전과기록 및 수사경력자료의 관리와 형의 실효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하려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도 위배되는 것으로서 이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 3. 21. 경찰청이 경찰공무원(순경) 채용 면접 시 응시자들의 신원조사 결과를 심사위원들에게 미리 제공하는 행위는 단지 수사 받은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기소 유예된 자, 무혐의 처분된 자까지도 채용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하는 것으로서 차별의 소지가 높다고 판단하고 수사 받은 전력 등을 이유로 공무원 임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공무원 채용 면접심사 제도를 개선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한 바 있습니다.

09 임신출산

사례 62 임신을 이유로 퇴사를 강요했습니다



사례 62



임신을 이유로 퇴사를 강요했습니다

상담 요지

저는 31주차 임산부이고 공항 면세점 매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면세점은 새벽근무조가 있는데, 어느 날 새벽근무조로 일을 하다가 설사로 탈진하여 위 사람에게 보고한 후 병원에 가서 수액을 맞고 왔습니다. 상사가 공항에 들러 자기를 만나고 가라고 해서 12시에 공항에서 상사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때 매장에서 같이 일하는 직원 3명과 함께 오더니 ‘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피해를 보는지 아느냐.’며 저에게 퇴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또 저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쓰기로 했었는데 ‘왜 1년 반이나 쓰려고 하느냐?’고 하면서 역시 퇴사를 강요하고 ‘네가 그만두지 않으면 우리가 그만 두겠다.’라고 했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예정이지만 휴직 후 그 매장으로 복귀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 걱정입니다. 그 상사를 처벌하고 싶습니다.

답변 요지

임신, 출산을 이유로 고용상 차별을 당했다면 인권위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하여 회사에서 해고 또는 불리한 업무 시간 배치 등 불이익한 처분을 내릴 경우 인권위에 진정하여 차별 여부를 판단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를 하라는 압박만으로는 명확하게 차별당한 영역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근무시간을 조정해주지 않는 등 보다 구체적인 차별 사실이 있다면 인권위 조사가 더 유리합니다. 만약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을 업무에 복귀시키지 않는다면 이 또한 인권위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유사 사례

운동부 코치로 일하는데 임신을 하자 재계약을 거부하고 출산휴가비를 요구했습니다.

초등학교 운동부 코치입니다. 교육청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킬 수 없다고 하여,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1년 계약직으로 매년 계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임신을 하자 학교에서 재계약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의하니 2개월치 출산휴가비를 내면 계약을 해주겠다고 하여 270만원을 내고 재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낸 돈은 그 기간에 근무한 기간제에게 지급되었습니다. 앞으로 둘째도 가져야 하는데 부담이 큼니다.

임신부라고 휴가를 제한합니다.

현재 임신 중인데 직장에서 휴가를 못 가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 중간 하루정도 휴가는 가능해도 주말을 끼워 길게 휴가를 가는 것은 안 된다고 합니다. 곧 출산휴가를 가게 되긴 휴가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직원들은 이런 제한이 없는데 출산휴가를 이유로 저에게만 휴가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지만 합니다.

참고 보도자료

보도자료 2013년 3월 1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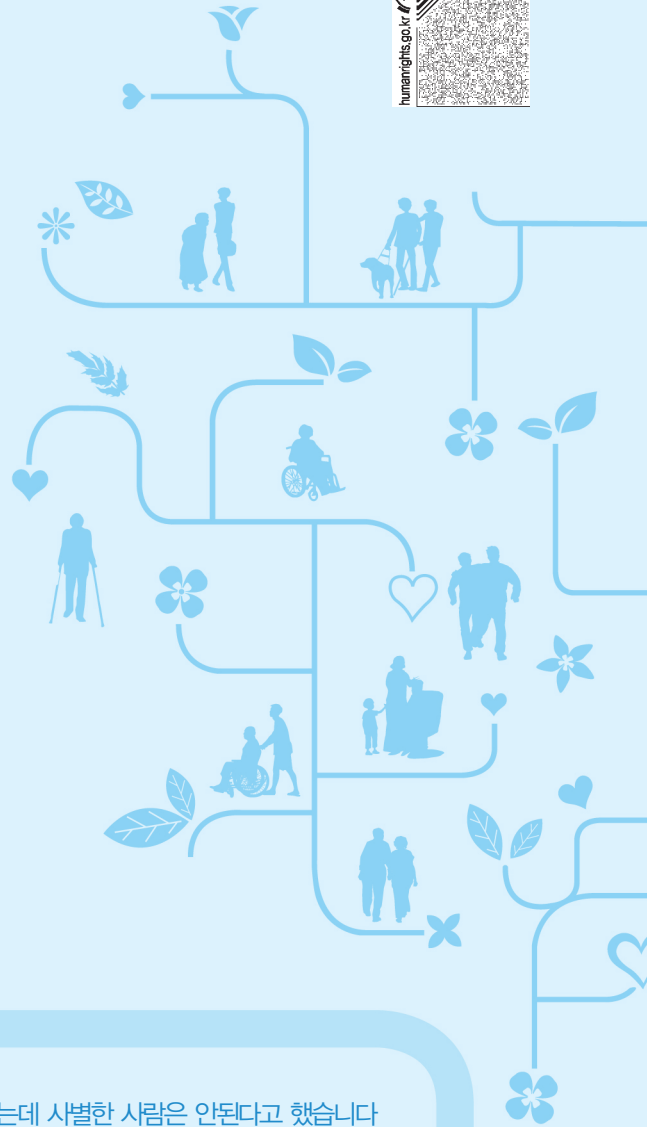
“임신·출산 가능성 있다고 교사초빙 배제는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초빙교사 임용추천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임신 또는 출산 가능성이 있는 초빙교사 지원자를 불리하게 대우한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소속기관의 장인 A교육감에게 초빙교사제를 운영하면서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인들(교장, 교감)에 대하여 경고조치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진정인(여, 32세)은 “B고등학교 초빙교사 공모에 지원했고, 면접을 보면서 진정인과 같은 교과목의 초빙교사에 응모한 지원자는 진정인 혼자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초빙이 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초빙불가 통보를 받았다. 이유를 문의하자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임신 가능성이 있어 초빙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2012. 12.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B고등학교는 ‘2013학년도 교사 초빙 대상자 심의’를 위해 개최한 학교운영 위원회에서 초빙교사 지원자들의 휴직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뿐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임신, 출산을 이유로 진정인을 탈락시킨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B고등학교는 2012. 12. 초빙교사 지원 서류를 받으면서 지원자들의 결혼연차, 자녀유무 등 정보를 파악했다는 사실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시, 진정인에 한해서만 초빙요건과 상관이 없는 진정인의 연령과 결혼 연차, 아이가 없는 점 등 개인신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학교운영 위원회에서 진정인의 임신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졌고, 초빙여부에 대해 무기명 투표 과정을 거쳤다고는 하나 결과적으로 진정인의 개인 신상 정보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일부 위원들에게 선발여부 판단에 직접적 영향을 준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B고등학교가 초빙교사 임용추천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임신·출산 가능성을 이유로 진정인을 불리하게 대우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합리적 이유 없이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고용에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차별행위로 정하고 있으며,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임신이나 출산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에서는 임신 및 출산이 예정된 여성을 채용했을 때 산전후 휴가의 부담이나 일정 기간 인력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임신부 개인에게 불리한 대우를 하는 관행이 은밀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국회인권위원회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향후 학교 현장은 물론 각 직장에서도 여성이 임신·출산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모집·채용에서 차별받는 일이 사라지길 기대합니다.



10 가족형태

사례 63 언니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하려는데 사별한 사람은 안된다고 했습니다

사례 63



언니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하려는데 사별한 사람은 안된다고 했습니다

상담 요지

형부가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언니는 직업이 없습니다. 제가 회사에 다니고 있어 피부양자로 언니를 등재신청을 하려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토한 결과, 언니를 저의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언니가 배우자랑 사별했기 때문에 배우자가 있는 걸로 본다고 합니다. 단, 이혼한 사람은 배우자가 없기 때문에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이게 본인 얘기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물었더니 그 직원은 한숨을 쉬면서 현재 법이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배우자가 사망해서 언니 혼자 남아있는데 배우자가 있는 걸로 보는 건지, 도대체 배우자가 누구인가요?

답변 요지

가족상황을 이유로 한 차별인지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혼한 사람들은 배우자가 없는 것으로, 사별한 사람은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하여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없다고 한다면 진정 접수하여 가족상황을 이유로 한 차별인지 인권위 판단을 받아보십시오.

유사 사례

4촌 이내의 친인척 중에 교사가 있으면 방과 후 학교 강사로 취업할 수 없습니다.

00시 교육청 관할 학교에서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방과 후 교실 비리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00시 교육청 관할의 학교에 4촌 이내의 친인척 교사가 있는 사람은 방과 후 강사로 활동할 수 없다고 합니다. 교육청 홈페이지의 방과 후 강사를 모집하는 공고문에는 00시 교육청 관할 학교에 친인척 교사가 있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게시한 곳도 있고 공고문에 게시되지 않은 학교라도 방과 후 강사 계약서에 계약해지조항으로 넣는다고 합니다. 저는 출신지역이나 출신학교가 다 00시이며 00시 교육청 관할 학교에서 방과 후 교실 강사로 일해 왔습니다. 그리고 00시 교육청 관할 학교에 친인척이 있습니다. 저나 친인척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한답니다.

학교 내 교사 부부 중 한 명의 퇴직을 종용합니다.

저는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이고 학교 내에서 다른 교사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재단 측에서 사내 결혼은 금지라면서 사직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사직 종용을 받은 저는 한 달 이상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아내가 행정실로 불려갔습니다. 행정실장이 '오늘 내로 사표를 내라'고 사직을 종용하고 감정적으로 격해져서 찻잔을 엮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저에게는 학교에서 컴퓨터도 끄고 담당 업무에 대한 행정적 지원도 안 할 것이며 결재를 올려도 결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참고 보도자료

보도자료 2014년 9월 30일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 시 이혼자와 사별자를 구별하는 것은 차별”

－ 인권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 부양요건 개정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부양자 등재 시 이혼한 자매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면서, 사별한 자매는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혼인여부를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이와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사별한 형제, 자매에 대해서도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부양요건을 인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자매가 피부양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및 별표 1의 규정상 미혼이어야 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격관리 업무편람(2012)’은 자매가 이혼한 경우는 미혼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사별한 경우는 미혼으로 보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어 이혼한 여성은 호적정리 시 친가로 복적할 수 있도록 하여 배우자의 혈족과 인척관계가 종료되지만, 사별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호적에 그대로 남아 배우자의 혈족과 인척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미혼으로 간주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인권위는 건강보험공단의 이러한 주장은 여성이 결혼과 함께 통상적으로 배우자의 인척관계에 편입된다는 가부장적 가족제도에 기초한 판단이며, 사망한 배우자의 혈족과 인척관계가 유지된다 하더라도 배우자의 혈족에게 사별한 자를 당연히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인권위는 또 이혼·사별 등 혼인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신의 근로소득이나 재산소득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자로 확인될 경우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것이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함을 고려할 때, 이혼한 자매는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부양요건을 인정하면서 사별한 자매에 대해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가 정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록

1.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 2014.3.18. 법률 제12500호

제1장 총칙 <개정 2011.5.19.>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1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구금·보호시설”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감호소,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 나. 경찰서 유치장 및 사법경찰관리가 직무 수행을 위하여 사람을 조사하고 유치(留置)하거나 수용하는 데에 사용하는 시설
 - 다. 군 교도소(지소·미결수용실 및 헌병대 영창을 포함한다)
 - 라. 외국인 보호소
 - 마. 다수인 보호시설(많은 사람을 보호하고 수용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나.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다.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라. 성희롱[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행위
4. “장애”란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요인으로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5.19.]

제3조(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독립성) ① 이 법에서 정하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전문개정 2011.5.19.]

제4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의 영역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1.5.19.]

제2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1명의 인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1. 국회가 선출하는 4명(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다)

2.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

3.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2.3.21.>

④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⑤ 위원 중 4명 이상은 여성으로 임명한다.

⑥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11.5.19.]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에서 요구하면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견(이 법의 시행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포함한다)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국가재정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5.19.]

제7조(위원장 및 위원 임기) 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결원이 생기면 대통령은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③ 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전문개정 2011.5.19.]

제8조(위원의 신분 보장) 위원은 금과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이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19.]

제9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 [전문개정 2011.5.19.]

제10조(위원의 겸직금지) ①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의 직
2.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직
3. 그 밖에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 ②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5.19.]

제11조 삭제 〈2005.7.29.〉

제12조(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와 참혜구제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등의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상임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에는 심의 사항을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성·장애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④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업무 및 운영과 전문위원의 자격·임기 및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19.]

제13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1.5.19.]

제14조(의사의 공개)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 상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19.]

제15조(자문기구) ① 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 ② 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19.]

제16조(사무처)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사무처를 둔다.

- ② 사무처에 사무총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③ 소속 직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6급 이하 공무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 ④ 사무총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전문개정 2011.5.19.]

제17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회에 위원회 직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할 징계위원회를 둔다.

-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 권한, 심의 절차, 징계의 종류 및 효력, 그 밖에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19.]

제18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19.]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제19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3.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
5.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인권침해의 유형, 판단 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7.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8.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9.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 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
10. 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1.5.19.]

제20조(관계기관등과의 협의) ① 관계 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미리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사(公私) 단체(이하 "관계기관등"이라 한다)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19.]

제21조(정부보고서 작성 시 위원회 의견 청취) 국제인권규약에 따라 관계 국가행정기관이 정부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5.19.]

제22조(자료제출 및 사실 조회)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거나 전문적 지식 또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그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기관은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19.]

제23조(청문회)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등의 대표자, 이해관계인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등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사실 또는 의견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19.]

제24조(시설의 방문조사) ① 위원회(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써 구금·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방문조사를 하는 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직원 및 전문가를 동반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을 지정하여 소속 직원 및 전문가에게 조사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를 위임받은 전문가가 그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할 때에는 소속 직원을 동반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방문조사를 하는 위원, 소속 직원 또는 전문가(이하 이 조에서 “위원등”이라 한다)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방문 및 조사를 받는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즉시 방문과 조사에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방문조사를 하는 위원등은 구금·보호시설의 직원 및 구금·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이하 “시설수용자”라 한다)과 면담할 수 있고 구술 또는 서면으로 사실이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⑤ 구금·보호시설의 직원은 위원등이 시설수용자를 면담하는 장소에 참석할 수 있다. 다만,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녹취하지 못한다.
- ⑥ 구금·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19.]

제25조(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 권고) ① 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 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 ④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그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2.3.21.>
- 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와 의견 표명 및 제4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이 통지한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전문개정 2011.5.19.]

제26조(인권교육과 홍보) ① 위원회는 모든 사람의 인권 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에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③ 위원회는 인권교육과 인권에 관한 연구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공무원의 채용시험, 승진시험, 연수 및 교육훈련 과정에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8조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의의 장과 협의하여 인권에 관한 연구를 요청하거나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다.
- ⑥ 위원회는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교육내용에 인권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19.]

제27조(인권도서관) ① 위원회는 인권도서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3.21.>

- ② 인권도서관은 인권에 관한 국내외의 정보와 자료 등을 수집·정리·보존하여 일반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 ③ 삭제 <2012.3.21.>

④ 인권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3.21.>

[전문개정 2011.5.19.]

[제목개정 2012.3.21.]

제28조(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 제출) ① 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 계속(係屬) 중인 경우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의 담당 재판부 또는 헌법재판소에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4장에 따라 위원회가 조사하거나 처리한 내용에 관하여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위원회는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의 담당 재판부 또는 헌법재판소에 사실상 및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19.]

제29조(보고서 작성 등) ① 위원회는 해마다 전년도에의 활동 내용과 인권 상황 및 개선 대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과 국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③ 관계기관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에 관한 의견, 조치 결과 또는 조치 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개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19.]

제4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조사와 구제 <개정 2005.7.29.>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2012.3.21.>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2.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② 삭제 <2005.7.29.>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④ 제1항에 따른 진정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5.19.>

제31조(시설수용자의 진정권 보장) ① 시설수용자가 위원회에 진정하려고 하면 그 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이하 “소속공무원등”이라 한다)은 그 사람에게 즉시 진정서 작성에 필요한 시간과 장소 및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설수용자가 위원 또는 위원회 소속 직원 앞에서 진정하기를 원하는 경우 소속공무원등은 즉시 그 뜻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소속공무원등은 제1항에 따라 시설수용자가 작성한 진정서를 즉시 위원회에 보내고 위원회로부터 접수증명원을 받아 이를 진정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2항의 통지에 대한 위원회의 확인서 및 면담일정서는 발급받는 즉시

진정을 원하는 시설수용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 또는 시설수용자가 진정을 원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구금·보호시설을 방문하게 하여 진정을 원하는 시설수용자로부터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진정을 접수하게 하여야 한다. 이때 진정을 접수한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은 즉시 접수증명원을 작성하여 진정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의 구금·보호시설의 방문 및 진정의 접수에 관하여는 제2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진정인(진정을 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과 위원 또는 위원회 소속 직원의 면담에는 구금·보호시설의 직원이 참여하거나 그 내용을 듣거나 녹취하지 못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시설수용자를 감시할 수 있다.

⑦ 소속공무원등은 시설수용자가 위원회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한 진정서 또는 서면을 열람할 수 없다.

⑧ 시설수용자의 자유로운 진정서 작성과 제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금·보호시설에서 이행하여야 할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19.]

제32조(진정의 각하 등) ① 위원회는 접수한 진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却下)한다.

1. 진정의 내용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진정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진정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4.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 다만,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다만,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 중인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진정이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7. 진정이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9. 위원회가 기각한 진정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진정한 경우

10. 진정의 취지가 그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진정을 각하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진정을 관계 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진정을 이송받은 기관은 위원회의 요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진정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도 그 진정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진정을 각하하거나 이송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진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진정인에게 통지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해자 또는 진정인에게 권리를 구제받는 데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조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19.]

제33조(다른 구제 절차와 이송) ① 진정의 내용이 다른 법률에서 정한 권리구제 절차에 따라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에 제출하려는 것이 명백한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진정을 그 국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가 제30조제1항에 따라 진정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과 같은 사안에 관한 수사가 피해자의 진정 또는 고소에 의하여 시작된 경우에는 그 진정을 관할 수사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진정을 이송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진정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송받은 기관은 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진정에 대한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19.]

제34조(수사기관과 위원회의 협조) ①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회는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조치 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19.]

제35조(조사 목적의 한계) ① 위원회는 조사를 할 때에는 국가기관의 기능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訴追)에 부당하게 관여할 목적으로 조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5.19.]

제36조(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진정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진정인·피해자·피진정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鑑定)
 4.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 ② 위원회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 또는 소속 직원에게 일정한 장소 또는 시설을 방문하여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 또는 감정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장소 또는 시설에 당사자나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14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피진정인에 대한 출석 요구는 인권침해행위나 차별행위를 한 행위당사자의 진술서만으로는 사안을 판단하기 어렵고, 제30조제1항에 따른 인권침해행위나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⑤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은 그 장소 또는 시설을 관리하는 장 또는 직원에게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⑥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그 장소 또는 시설을 관리하는 장 또는 직원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⑦ 위원회가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자료, 물건 또는 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을 하려고 하는 경우 관계 국가기관의 장은 그 자료, 물건 또는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위원회에 소명하고 그 자료나 물건의 제출 또는 그 자료, 물건, 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관계 국가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관계 국가기관의 장은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1.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외교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 사항인 경우
2. 범죄 수사나 계속 중인 재판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1.5.19.]

제37조(질문·검사권) ① 위원회는 제36조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 등이 있는 곳 또는 관계인에 관하여 파악하려는 그 내용을 알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게 질문하거나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6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5.19.]

제38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제41조에 따른 조정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정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진정의 당사자이거나 그 진정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진정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진정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진정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진정에 관하여 수사, 재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규제 절차에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당사자의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결정하기에 타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진정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19.]

제39조(진정의 기각) ①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기각한다.

1.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2. 조사 결과 제30조제1항에 따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규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위원회는 진정을 기각하는 경우 진정의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19.]

제40조(합의의 권고) 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진정에 대하여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규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19.]

제41조(조정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① 조정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성·장애 등의 분야별로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조정위원”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장애 등의 분야별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또는 민간단체에서 인권과 관련된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0년 이상 재직인 사람

③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위원회의 위원인 조정위원 중 회의마다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

2. 제2항에 따른 분야별 조정위원 중 회의마다 위원장이 지명하는 2명

④ 조정위원의 위촉 및 임기, 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조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⑤ 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에 관하여 이 법 및 위원회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5.19.]

제42조(조정위원회의 조정) ① 조정위원회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신청이나 위원회의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에 대하여 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② 조정은 조정 절차가 시작된 이후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적은 후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조정위원회의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조정 절차 중에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④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2.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3.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⑤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⑥ 당사자가 제5항에 따라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5.19.]

제43조(조정위원회의 조정의 효력) 제42조제2항에 따른 조정과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전문개정 2011.5.19.]

제44조(구제조치 등의 권고) ① 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 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제42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이행

2.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2.3.21.>

[전문개정 2011.5.19.]

제45조(고발 및 징계권고) ①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다만, 피고발인이 군인이나 군무원인 경우에는 소속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고발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피진정인 또는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징계할 것을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고발을 받은 검찰총장,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은 고발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은 권고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19.]

제46조(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① 위원회는 제44조 또는 제45조에 따른 권고 또는 조치를 하기 전에 피진정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19.]

제47조(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 요청) ① 위원회는 진정에 관한 위원회의 조사, 증거의 확보 또는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해자를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법률구조 요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법률구조 요청의 절차·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19.]

제48조(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① 위원회는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진정에 대한 결정 이전에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의료, 급식, 의복 등의 제공
2. 장소, 시설,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및 감정 또는 다른 기관이 하는 검증 및 감정에 대한 참여
3. 시설수용자의 구금 또는 수용 장소의 변경
4.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5.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공무원 등을 그 직무에서 배제하는 조치
6. 그 밖에 피해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 또는 관계인 등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명예의 보호, 증거의 확보 또는 증거 인멸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인 및 그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그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19.]

제49조(조사와 조정 등의 비공개) 위원회의 진정에 대한 조사·조정 및 심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19.]

제50조(처리 결과 등의 공개) 위원회는 이 장에 따른 진정의 조사 및 조정의 내용과 처리 결과, 관계기관등에 대한 권고와 관계기관등이 한 조치 등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공표가 제한되거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5.19.]

제5장 보칙 <개정 2011.5.19.>

제51조(자격 사칭의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5.19.]

제52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 조정위원, 자문위원 또는 직원이거나 그 직에 재직하였던 사람 및 위원회에 파견되거나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5.19.]

제53조(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위원회가 아닌 자는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5.19.]

제54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등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위원회에 파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소속 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한 관계기관등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인사 및 처우 등에서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5.19.]

제55조(불이익 금지와 지원)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위원회에 진정,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진상을 밝히거나 증거 또는 자료 등을 발견하거나 제출한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 또는 보상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또는 보상의 내용,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19.]

제6장 벌칙 <개정 2011.5.19.>

제56조(인권옹호 업무방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 또는 직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
2. 위원 또는 직원에게 그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
3. 위계(僞計)로써 위원 또는 직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한 사람
4. 이 법 제4장에 따라 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되는 다른 사람의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사람

② 친족이 본인을 위하여 제1항제4호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5.19.]

제57조(진정서 작성 등의 방해) 제31조를 위반하여 진정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전문개정 2011.5.19.]

제58조(자격 사칭) 제51조를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5.19.]

제59조(비밀누설) 제52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전문개정 2011.5.19.]

제60조(긴급구제 조치 방해)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하는 조치를 방해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5.19.]

제61조(비밀침해) 제31조제6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침해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전문개정 2011.5.19.]

제6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5.19.]

제63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조사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제3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진술서 제출요구 또는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이유없이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 등의 제출요구 및 사실조회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 등을 제출한 자
- ② 제5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한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5.7.29.>
-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법률 제6481호, 2001.5.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인권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위원회규칙의 제정·공포, 위원회의 설립준비는 이 법 시행일 이전에 할 수 있다.

②**(인권위원의 임기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의하여 최초로 임명된 인권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③**(대통령령의 제정)** 위원장은 국무총리에게 이 법의 시행에 관한 대통령령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부칙 <법률 제7427호, 2005.3.31.> (민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 ⑦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2항중 “친족,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을 “친족”으로 한다.
- ⑧ 내지 <29>생략

부칙 <법률 제7651호, 2005.7.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7655호, 2005.8.4.> (치료감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 ⑦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감호소,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 ⑧ 및 ⑨ 생략

부칙 <법률 제7796호, 2005.12.29.> (국가공무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⑫ 생략

- ⑬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중 “5급이상 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 ⑭ 내지 <68>생략

부칙 <법률 제8050호, 2006.10.4.> (국가재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⑪ 생략

- ⑫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예산회계법 제14조”를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⑬ 내지 <59>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법률 제8435호, 2007.5.1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본문 중 “원적지, 본적지”를 “등록기준지”로 한다.

<30>부터 <39>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법률 제9402호, 2009.2.3.> (공직자윤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라목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호”를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로 한다.

④ 생략

부칙 <법률 제10679호, 2011.5.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1413호, 2012.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5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권고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07>까지 생략

〈708〉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709〉 및 〈710〉 생략

제7조 생략

인권상담센터를 소개합니다.

방문상담

이용시간 :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원과 변호사, 노무사, 사회복지사, 치료상담사 등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상담위원회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영어상담도 동시에 진행됩니다.

전화상담

이용시간 :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31을 누르면 전문상담원과 인권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매 주 월요일 수화통역사가 화상전화상담을 진행합니다. 070-7947-7331

순회상담

인권 취약지역의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직접 찾아가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순회상담을 통해 인권현안을 파악해 권리구제, 정책권고 및 실태조사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 순회상담은 지역의 인권시민단체 및 공공기관과 함께 진행합니다.

인권상담네트워크

다양한 인권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기관 및 인권시민단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내담자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민원회신

인권문제와 관련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홈페이지나 우편 등으로 민원을 접수하시면

인권상담센터 직원들이 관계부처 문의, 법령 검토, 내부 회의 등을 거쳐 최선의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위원회 소관업무가 아닐 경우엔 해당 기관을 안내해 드립니다.